

남북경제교류협력  
실무안내

통 일 원

1

## 머 리 말

남북관계는 제 6 공화국 출범이후 「7.7선언」을 통해 적극적인 대북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경제분야에서도 정부는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90.8)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까지 신설하여 법적으로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남북간 경제교류는 단순한 상품교역이라기 보다는 남북간에 상호 신뢰를 쌓고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해가는 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남북교역규모는 '88. 10월부터 '92. 6월말까지 승인기준으로 3억 5천만불을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교역실적은 최근의 화해협력추세와 국민의 여망에 비추어 볼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저조하다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이와같이 교역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남북교역이 북한주민에게 미칠 부작용 등을 우려, 매우 소극적으로 응해오는 북한의 자세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의 북한의 무역제도, 법률 및 남북교역절차에 대한 정보부족도 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제는 남북기본합의서도 발효되고 부속합의서가 한창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또 크게 활성화 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 통일원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제반절차와 북한의 무역제도 등을 수록한 「남북경제교류실무편람」을 다시 보완하여 본 책자를 펴내게 되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이용이 있으시길 기대한다.

1992. 7.

교 류 협 력 국

# 목 차

<b>I. 남북경제교류협력 승인절차</b> .....	<b>15</b>
1. 접촉·방문 .....	15
가. 접촉·방문의 개념 .....	15
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접촉 승인 .....	15
다.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북한방문 승인 .....	17
2. 남북물자교역 .....	19
가. 물자교역의 개념 .....	19
나. 교역당사자 .....	20
다. 교역대상물품 .....	21
라. 반출입 승인 .....	23
3. 남북경제협력사업 .....	27
가. 협력사업의 개념 및 유망분야 .....	27
나. 협력사업자 승인 .....	28
다. 협력사업 승인 .....	30
4. 접촉·방문·교역관련 북한의 서식전본 .....	32
<b>II. 남북물자교역 추진요령</b> .....	<b>43</b>
1. 거래관계 개설 .....	43

가. 거래를 위한 접촉 .....	43
나. 제 3 국 증개인 .....	44
다. 상 담 .....	44
라. 신용조회 .....	45
마. 거래제외와 수락 .....	46
바. 계 약 .....	46
2. 반출입 승인신청 .....	48
3. 반출입 계약의 이행 .....	49
가. 대금결제 .....	49
나. 반출입 화물의 수송 .....	53
다. 검 사 .....	58
4. 원산지 확인 및 통관업무 .....	59
가. 원산지 확인 .....	59
나. 반입신고 및 통관 .....	61
5. 세제혜택 및 지원 .....	61
6. 교역보고 .....	62
<b>Ⅲ. 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 .....</b>	<b>63</b>
1. 손실보조 .....	63
가. 손실보조 대상 .....	63
나. 손실의 인정범위 .....	64
다. 신청 및 약정절차 .....	65

라.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및 해지 .....	66
마. 약정내용 변경절차 .....	66
바. 손실보조금 신청 .....	67
사. 보조금의 지급 범위 .....	67
아. 피약정자의 의무 .....	68
2. 자금 대출 .....	70
가. 자금대출 대상 .....	70
나. 대출한도 및 조건 .....	70
다. 대출절차 .....	71
라. 대출받은 자의 의무 .....	72
3. 채무보증 .....	73
가. 의뢰인과 수혜자 .....	73
나. 보증 대상 .....	73
다. 보증 조건 .....	73
라. 보증 절차 .....	74
4. 금융기관 지원 .....	75
5.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	75
가. 지원 대상 .....	75
나. 지원절차 및 조건 .....	75
다. 지원 형태 .....	76
6. 지원유형간의 관계 .....	77

<b>IV. 남북경제교류협력 실태</b> .....	<b>82</b>
1.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접촉·방문실적 .....	82
가. 접촉 실적 .....	82
나. 방문 실적 .....	84
2. 물자교역 .....	84
가. 교역 규모 .....	84
나. 교역 수지 .....	86
다. 교역 승인기관 .....	86
라. 교역 품목 .....	88
마. 교역업체 .....	97
바. 교역형태 .....	99
사. 교역증개지 .....	101
아. 평가 및 전망 .....	103
<b>V. 북한의 무역상사 및 취급품목</b> .....	<b>105</b>
1. 무역상사 및 취급품목 .....	105
1. 조선 건재 무역회사 .....	105
2. 조선 공작기계 무역회사 .....	106
3. 조선 기계설비 수출입회사 .....	109
4. 조선 연합 무역회사 .....	112
5. 조선 흑색금속 수출입상사 .....	114
6. 조선 금속 무역회사 .....	114



7. 조선 선박 무역회사	115
8. 조선 용악산 기계설비 수출회사	116
9. 조선 경공업제품 수출입회사	118
10. 조선 시멘트 수출입회사	120
11. 조선 창광 무역회사	121
12. 조선 만년 보건총회사	121
13. 조선 대성 무역상사	122
13-1. 조선 대성 제 1 무역상사	123
13-2. 조선 대성 제 2 무역상사	123
13-3. 조선 대성 제 3 무역상사	124
13-4. 조선 대성 제 4 무역상사	125
13-5. 조선 대성 제 5 무역상사	126
13-6. 조선 대성 제 6 무역상사	127
13-7. 조선 대성 제 7 무역상사	127
13-8. 조선 대성 제 8 무역상사	128
13-9. 조선 대성 제 9 무역상사	128
14. 조선 경제협력 총회사	129
15. 조선 평천 무역상사	129
16. 조선 유색금속 수출입상사	130
17. 조선 백송 무역상사	131
18. 조선 민예사	131
19. 조선 봉화 무역총회사	132

20. 조선 통라도 무역총회사	134
21. 조선 만수 무역회사	136
22. 조선 마그네샤 크링카 수출입상사	137
23. 조선 원양 어업회사	137
24. 조선 광명 무역상사	138
24-1. 조선 대동강 무역회사	140
24-2. 조선 압록강 무역회사	140
24-3. 조선 송도원 무역회사	141
24-4. 조선 두만강 무역회사	141
24-5. 조선 백무 무역회사	142
24-6. 조선 성천강 무역회사	142
24-7. 조선 인풍 무역회사	143
24-8. 조선 경암 무역회사	143
24-9. 조선 수양산 무역회사	144
24-10. 조선 송악산 무역회사	144
24-11. 조선 남산 무역회사	145
25. 조선 양각 상사	145
26. 조선 공업기술 회사	146
27. 조선 남흥 무역회사	147
28. 조선 신발 무역총회사	149
29. 조선 유광 무역회사	149
30. 조선 우표사	150

31. 조선 비단 수출입총회사	150
32. 조선 협동 무역회사	151
33. 조선 수산물 수출입회사	153
34. 조선 온하 무역상사	153
35. 조선 동흥 무역상사	154
36. 평양 담배 수출입상사	155
37. 조선 국제 여행사	156
38. 조선 고려 무역상사	157
39. 조선 평양 청류민예사	158
40. 조선 은덕 무역회사	159
40-1. 은덕 금속 수출입상사	159
40-2. 은덕 유색금속 및 광물 수출입상사	160
40-3. 은덕 일용품 및 기계류 수출입상사	160
40-4. 은덕 재수출상사	160
40-5. 은덕 합영회사	160
40-6. 은덕 합영수출상사	161
40-7. 은덕 어업회사	161
41. 조선 통라 888무역회사	161
42. 조선 농산물 무역총회사	162
43. 조선 제일설비 수출입상사	162
44. 조선 제이설비 수출입상사	163
45. 조선 기계 수입회사	163

46. 조선 화학제품 수출입회사	164
47. 조선 일반제품 수출입회사	164
48. 조선 곡물 수출입회사	165
49. 조선 과일·남새 수출입회사	165
50. 조선 용악산 수입상사	166
51. 조선 남새 수출상사	166
52. 조선 대동 무역회사	167
53. 조선 기술상사	167
54. 조선 종합설비 수입회사	168
55. 조선 매봉 무역회사	168
56. 조선 만경 무역회사	169
57. 조선 옥류 무역회사	169
58. 조선 신흥 무역회사	170
59. 조선 인흥 무역회사	170
60. 조선 만년 무역회사	171
61. 조선 청류 무역회사	171
62. 조선 묘향 무역회사	172
63. 조선 해금강 무역회사	172
64. 조선 검덕 무역회사	172
65. 조선 연광 무역회사	173
66. 조선 남산 기계 수입회사	173
67. 조선 출판물 수출입회사	174

68. 조선 영화 수출입회사	174
69. 조선 미술 상사	174
70. 조선 백금산 무역회사	175
71. 조선 검은금 무역회사	176
72. 조선 석탄 수출입회사	176
73. 조선 목재·목제품 무역회사	177
74. 조선 보물 무역상사	178
75. 조선 채굴광산장비 무역회사	179
76. 조선 평양 무역회사	180
77. 조선 해양 무역회사	180
78. 조선 장수 무역회사	181
79. 조선 오륜 무역회사	181
80. 조선 유성 무역회사	182
81. 조선 삼지연 무역회사	182
82. 조선 금룡 수출입상사	183
83. 조선 서광 무역회사	183
84. 조선 모란 무역회사	184
85. 조선 남양 무역회사	184
86. 조선 락원 무역회사	185
87. 평양 출판 무역연합회	185
88. 조선 변강 무역회사	186
89. 조선 고말산 무역회사	187

90. 조선 남포 무역회사	187
2. 관련단체	188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188
2. 조선 대외 과학기술 교류협회	188
3. 조선 대외 상품검사 위원회	189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출입 검사국	189
5. 조선 대외 운수회사	189
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선박 사업회사	190
7. 조선 국제 보험회사	191
8. 조선 동해 해운회사	192
9. 조선 대흥 선박회사	192
10. 조선 룡라도 선박회사	193
11. 조선 대성 운수회사	193
12. 조선 용선회사	194
13. 조선 민항	194
14. 조선 국제 전람사	195
1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역은행	195
16. 금강은행	196
17. 조선 대성은행	196
3. 합영회사	198
1. 조선 국제 합영총회사	198
2. 조선 월명산 합영회사	198

3. 조선 삼방연합 합영회사	199
4. 조선 만풍 합영회사	199
5. 조선 금별 합영회사	200
6. 조선 무지개 합영회사	200
7. 청천강 합영회사	200
8. 만장 합영회사	201
9. 평양 포장 합영회사	201
10. 광포 합영회사	202
11. 명전 합영회사	202
12. 모란봉 합영회사	202
13. 선봉 합영회사	203
14. 전진 합영회사	203
15. 2월 6일 합영회사	204
16. 운산광산개발 합영회사	204
17. 강서 제사 합영공장	204
18. 낙원 의류 합영회사	204
19. 서산 합영회사	205
20. 원산 애국 편직물 유한회사	205
21. 흥덕 합영회사	205
22. 남산 합영회사	205
23. 통라 합영회사	206
24. 노아나 미용연구회	206

25. 평양 비단 합영회사	206
26. 성계알 생산 합영회사	206
27. 칠보산 수산물 합영회사	206
28. 송봉 합영회사	207
29. 청유 합영회사	207
30. 고려 합영회사	207
31. 평양 양어 합영회사	207
32. 신흥 합영회사	207
33. 덕산 건설기계 합영회사	208
34. 동성 수산물 생산 판매회사	208
35. 이영삼 단밤 연구소	208
36. 진달래 합영회사	208
37. 조선 은동 합영회사	209
38. 평양 피아노 합영회사	209
39. 밀림 단일 합영회사	209
40. 함흥 화학 합영회사	209
41. 회천-고리끼 합영회사	210
42. 이바노브-회천 합영공장	210
43. 연진 합영 해산물 주식회사	210
44. 인쇄회로기계 설비공사	210
45. 금강산 국제무역 개발회사	210
46. 금강산 국제관광회사	211



47. 조선 낙원 금융 합영회사	211
48. 조선 합영은행	211
49. 고려 상업은행	212
50. 조선·폴란드 해운 유한회사	212

## 【부 록】

I.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후속법령	215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17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227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48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283
5.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285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293
7. 남북교역물품통관요령	295
8. 남북교류협력추진관련 사전조정 기능 강화에 관한 지침	300
II. 남북협력기금법 및 후속법령	305
1. 남북협력기금법	307
2.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312
3.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319
4.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322

<b>Ⅲ. 북한의 경제관련 법령</b> .....	<b>367</b>
1. 사회주의헌법(1972년 제정)중 경제분야 .....	369
2. 합영법 .....	373
3. 합영법시행세칙 .....	378
4. 합영회사소득세법 .....	388
5.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	389
6. 외국인소득세법 .....	393
7. 외국인소득세법세칙 .....	395
8. 민법 .....	399
<b>Ⅳ. 남북한 주요합의서</b> .....	<b>445</b>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	447
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460
3.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464
4.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	467
5. 남북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469
<b>Ⅴ. 남북경제회담 관련 일지</b> .....	<b>473</b>
1. 남북경제회담 제의일지 .....	475
2. 남북경제회담 추진일지 .....	476
3. 남북고위급회담 일지 .....	477

## I. 남북경제교류협력 승인절차

### 1. 접촉·방문

#### 가. 접촉·방문의 개념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제3국 중개인,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접촉 또는 북한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북한주민접촉과 방북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남북한 주민간 “접촉”이란 회합·통신(전화, FAX, Telex, 편지 등), 중개인 등 기타의 방법으로 남북한 주민이 의사교환 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한주민”이란 남한·북한국적을 소유한 자연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하며 북한국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예 : 조총련계 인사)은 동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북한주민으로 의제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장기체류허가 이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접촉 승인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추진을 위해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재외국민은 제외함)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9 조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 항에 의하여 접촉예정일 20일전까지 북한주민접촉신청

서, 신원진술서, 사업계획서, 기타 참고서류 등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9조 4 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승인없이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당해건에 대해서 승인받은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하여 동 목적을 계속 추진할 때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시행령 제19조 4 항

-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 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법인 및 단체의 접촉은 접촉성격에 따라 대표자나 직원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3국 국적자를 중개인·대리인으로 하여 접촉(간접접촉)하는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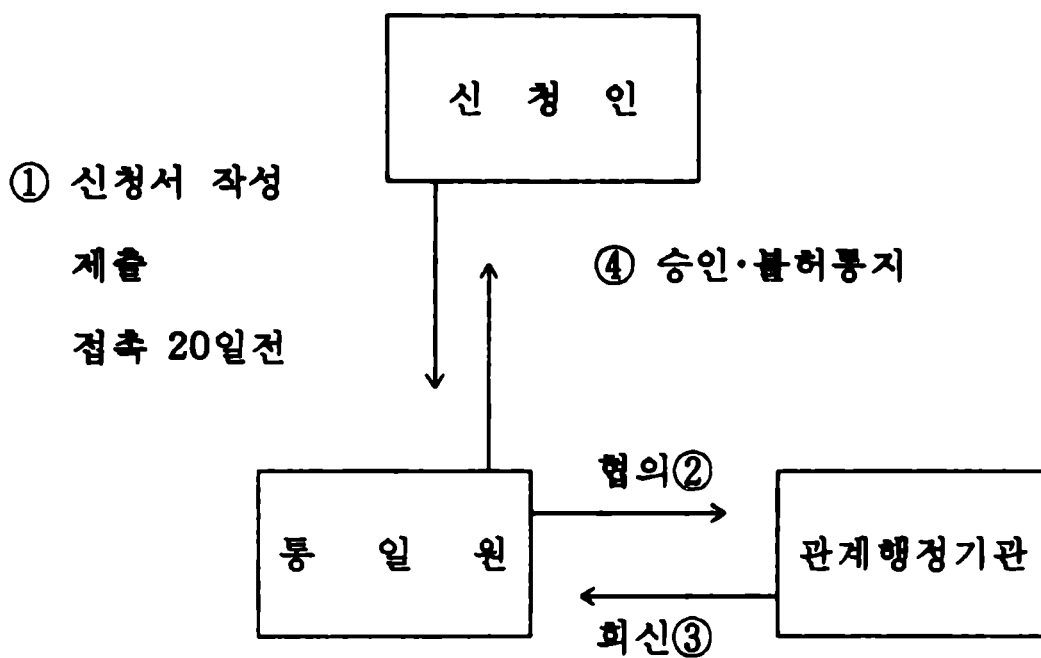
대표자 명의 신청에 있어서 대리인이나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접접촉자는 접촉목적이나 위임받은 사항외에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해서는 안된다.

북한주민접촉 대리신청은 동법시행령 제11조를 유추해석하여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은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고 접촉이 가능하다.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기재할 때 북한정보사항이 부족하면 피접촉인, 접촉일시를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접촉장소는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곳이 가능하며, 중국, 일본, 홍콩, 소련 등이 대표적인 접촉장소로 활용된다.

북한주민접촉신청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 신원진술서
-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북한방문 승인

남북교역 및 협력사업추진을 위한 북한방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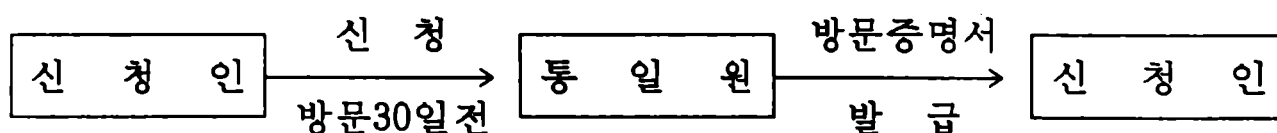
매), 신원진술서, 병역법 제62조에 의한 신고서 내지 허가서(해당자에 한함), 방문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증서류 혹은 자료를 제출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북한방문을 승인받는다는 의미이다.

발급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신청(동법 시행령 제11조)이 가능하며, 동법시행령 제10조 1 항 5 호의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란 북한측 상대기관의 초청장 등을 의미하는데 양식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한있는 기관이 작성한 초청장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효성의 인정여부는 정부가 판단한다.

그러나 이 초청장에는 적어도 초청하고자 하는 남한측 상대방의 이름이 명기되어야 하고, 초청하는 북측인사의 소속기관, 직위, 성명이 명시된 가운데 서명되어야 하며, 성명이 자필일 경우에는 서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외국민의 북한방문은 출발하기 5일전까지 재외공관에 사전신고를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귀환 후 10일이내에 사후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북한방문 신청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 신원진술서
- 사진4매(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 병역대상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 혹은 신고서
-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대리신청시 제출서류

-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사본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2. 남북물자교역

### 가. 물자교역의 개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물자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 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물자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입외에도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연계교역”이라 함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교역을 말하며, 물물교환, 구상교역, 대용구매 등을 포함한다.

“임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과 가공임을 가득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가공할 원자재를 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중 위탁가공교역은 향후 기대하여 볼 만한 교역방식이다.

#### 나. 교역당사자

남북한간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 포함)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2조)

이처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를 받은 자이면 원칙적으로 남북교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질서확립, 보건, 안전상의 사유로 인하여 국내법체계에서 특수한 취급자격을 요구하는 품목을 교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품목의 취급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 주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식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류는 주류 중개업 면허가 있어야 반입할 수 있다.
- 북한도서 및 정기간행물은 문화부에 의한 허가과 등록을 득한



업체로서 무역업허가가 있어야 반입할 수 있으며 카달로그 및 작품사진 1부, 반입후 활용계획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곤충류 반입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역 등을 받아야 한다.
-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는 환경처에 독극물 수출입업을 등록한 자라야 한다.
- 한약재는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의약품 수출입면허가 있어야 한다.
- 산동물이나 가금류를 반입할 경우는 여러가지 병해방지를 고려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수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 다. 교역대상물품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통합공고에 제기된 품목이다.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수출·수입의 제한이 없는 품목은 반출·반입 자동승인품목으로, 기타의 품목은 반출·반입 제한승인품목으로 각각 본다. 다만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수출·수입제한이 없는 품목중 북한의 미술품 및 도예·공예작품과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은 반입제한승인품목이다.(통일원고시 91-2호)

북한책자도 반입제한승인품목이며 이때 “북한책자”라 함은 북한에서 직접 혹은 제3국을 단순 경유한 후 남한으로 반입된 책자를 말하며 제3국 관세선을 통과한 책자는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서적의 수출입절차에 관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어떤 특정물품이 북한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제3국 관세 선을 통과하면 그 물건은 이미 제3국 물품이 되었으므로 남북교역대 상물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88. 10 대북경제개방조치이래 '92. 5 까지 이루어진 주요교역 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반 입 품 목	반 출 품 목
<농산물> 호도, 감자, 전고추, 땅콩, 냉동송이, 팔, 한약재, 원목 <수산물> 냉동명태, 냉동조기, 냉동홍어, 냉동오징어, 전오징어, 복어 등 <철강·금속> 아연괴, 빌레트, 열연코일, 전기동, 금괴, 은괴, 선철, 연괴, 철근, 봉강 <광산물> 무연탄, 시멘트 <섬유류> 생사, 면직물 <화학제품> VAM, PVC, 요소 <기 타> 우표, 화폐, 미술품	<화학제품>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플라스틱 가소제, 비닐박막, 폴리에틸렌 필름, 세탁비누,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섬유류> 나일론직물, 테트론섬, 직물류 <전기·전자제품> 칼라TV, 냉장고 <기계류> 양말편직기 <농산물> 쌀 <기 타> 백설탕, 운동기구 등

## 라. 반출입 승인

### (1) 반출 승인

반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 등에서 반출이 제한되는 품목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수출입공고상 수출자동승인품목인 경우에는 갑류외국환은행장의 반출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수출제한승인품목인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출입공고등에서 “...기관이나 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등으로 계기되어 있는 수출제한승인품목인 경우에는 동 기관이나 조합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통일원에 직접 반출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수출입공고상에는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통합공고에서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남북교역에 있어서도 수출제한승인품목으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반출품목은 대부분 자동승인품목이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에서 반출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출자는 동 물품이 북한으로 반출(제3국 단순경유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 (2) 반입 승인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신청자격, 반입품목, 거래형태, 결제방식 등 반입요건을 충족시키는 품목에 대해 반입승인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반입승인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반입의 경우에도 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입제한승인품목과 반입자동승인품목으로 구분하여 반입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장관, 반입자동승인품목은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대금결제방식이 정상결제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정상외결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거래형태에 있어서도 일반거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무역법상 거래형태별 승인요건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반입승인을 받은 후 반입자는 반입승인 유효기간내에 당해물품을 반입하고 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승인신청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과의 계약 변경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내용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기관에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반출입 승인

반출, 반입이 연계되어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출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출입혼합 거래형태로는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물물교환, 구상교역, 대응구매)과 증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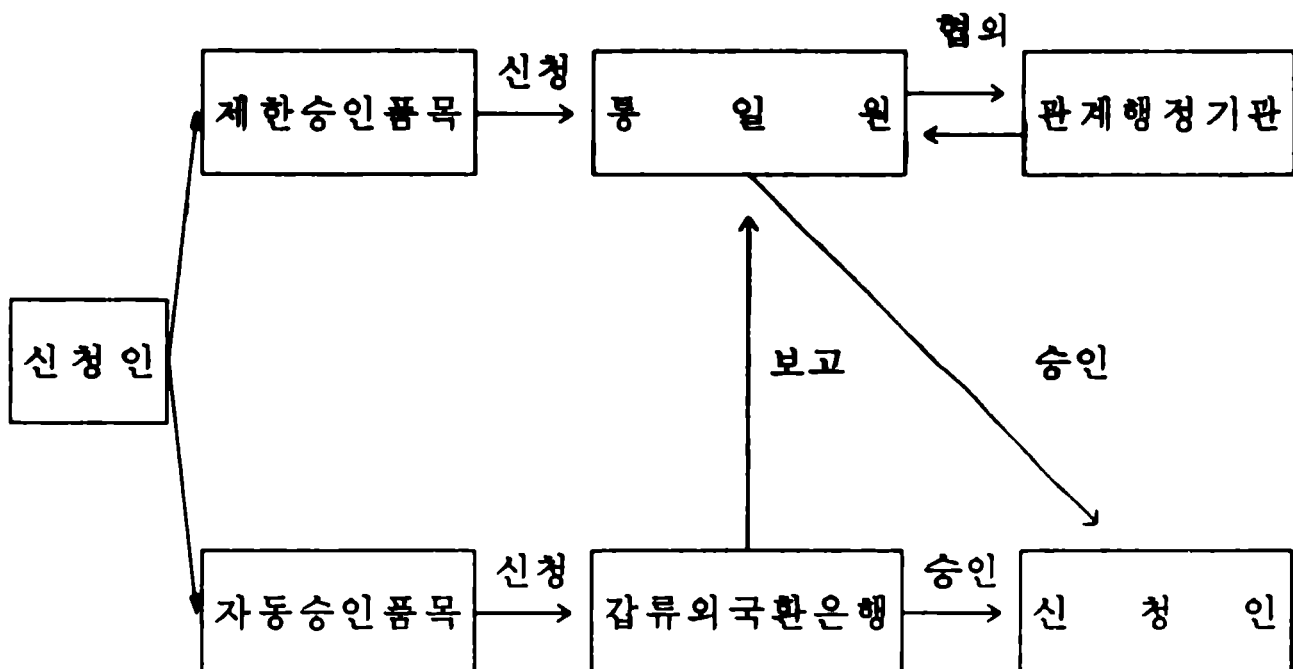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출과 반입이 하나의 계약서로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가 있어야 한다. 이때 대금결제는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거나(물물교환), 상계되어야 한다.(외국환관리규정 제 9-8 조 1항 12호 준용)

반출입이 연계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기법이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를 보면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우리물품을 반출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의 물품을 반입하는 형태가 있으며, 다른 사례로는 북한이 원하는 제3국의 상품을 우리의 교역업자가 구매하여 주고 그에 상응한 북한물품을 반대급부로 반입해 오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사실상의 반입에 해당한다.

연계교역은 북한의 외환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북한에 익숙한 무역방법이므로 권장할 만한 교역방식이다.

남북물자교역 신청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반입의 경우〉

- 북한물품 반입승인 신청서 6부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1부

- 반입대행 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 북한의 물품공급 의향서 또는 중개인과 북한상사간 계약서 1부
-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해당자)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 무역법 허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또는 취지 설명서등

〈반출의 경우〉

- 대북한 반출승인 신청서 6부
- 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반입과 동일)

〈반출입이 연계된 교역인 경우〉

- 반출입 승인신청서 6부
- 반출·반입계약서 1부(하나의 계약서)
- 특수신용장(L/C),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각 1부
-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반입과 동일)

※ 반출입 승인 기준

- 북한의 군사적 목적이용 가능성
-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남북교역질서 및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 3. 남북경제협력사업

#### 가. 협력사업의 개념 및 유망분야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의 주민인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은 누구나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과학, 음악 등과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예시되지 않은 분야도 이 법에 의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남한과 북한 기업간의 협력사업은 물론 남·북한과 제3국 기업간의 다자간 합작투자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으며 투자자금전액을 우리측 기업에서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도 국내모기업을 주체(협력사업자)로 한 대북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협력사업 가능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유망분야를 살펴 보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및 북한내 투자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합작투자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경제구조상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우리측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측의 노동력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소규모 경공업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합작투자를 위해서는 북한의 투자환경, 투자보장에 관한 제도적 장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대북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과거 5차례 개최되었던 남북 경제회담 결과, 대일 민간경제협

력 유치희망분야, UNIDO측에 투자유치를 희망한 분야 및 조총련 등 해외기업과의 합영사업 현황 등을 분석해 보는 것도 투자대상 선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한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합작 투자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신발, 섬유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분야를 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석탄, 철광석, 아연 등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금강산·설악산지역의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수산업 분야에서의 합작사업 추진이 매우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에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승인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향후의 대북투자사업을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협력사업자 신청서는 본인(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이 직접 제출함이 원칙이나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의 대리신청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이 승인하며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중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 경제협력조정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조정 절차를 거침으로써 협력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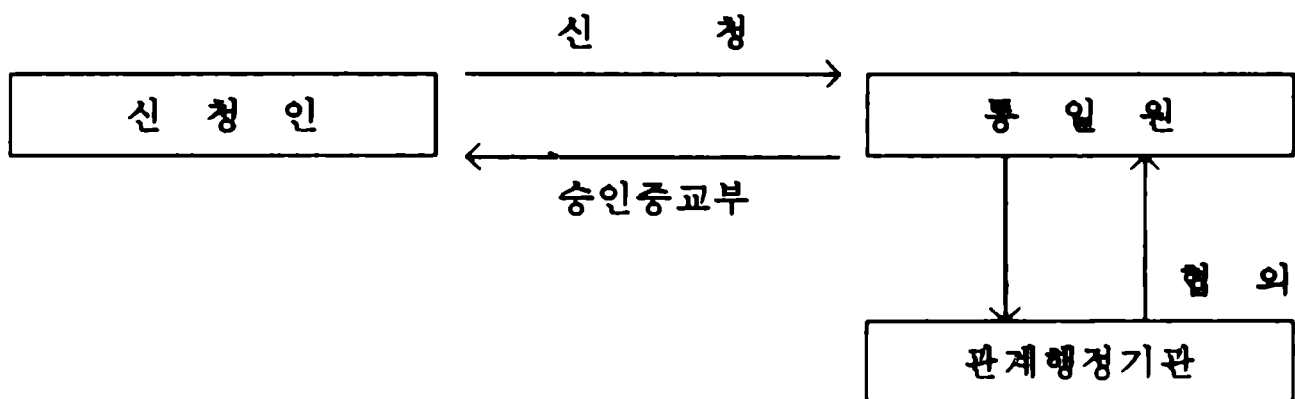


하고 있다.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협력사업자 승인요건으로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고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승인을 할 경우에는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한다.

협력사업자 신청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1부
- 신원증명서(법인·단체인 경우 대표 및 임원전원) 1부
-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증 각 1부
-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사업실적증명서류 1부
- 경제분야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의 경우는 자본금상태 증명서류 및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각 1부
-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및 사업추진경위 관련 서류

- 서약서 1부

#### 다. 협력사업 승인

협력사업자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협력사업마다 승인요건을 갖추어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자는 협력사업 승인신청시에 사전접촉 또는 방북을 통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함께 사업계획서,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북한당국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승인이후 바로 해당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협력사업은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협력사업자의 능력으로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승인하게 되며,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협력사업 승인요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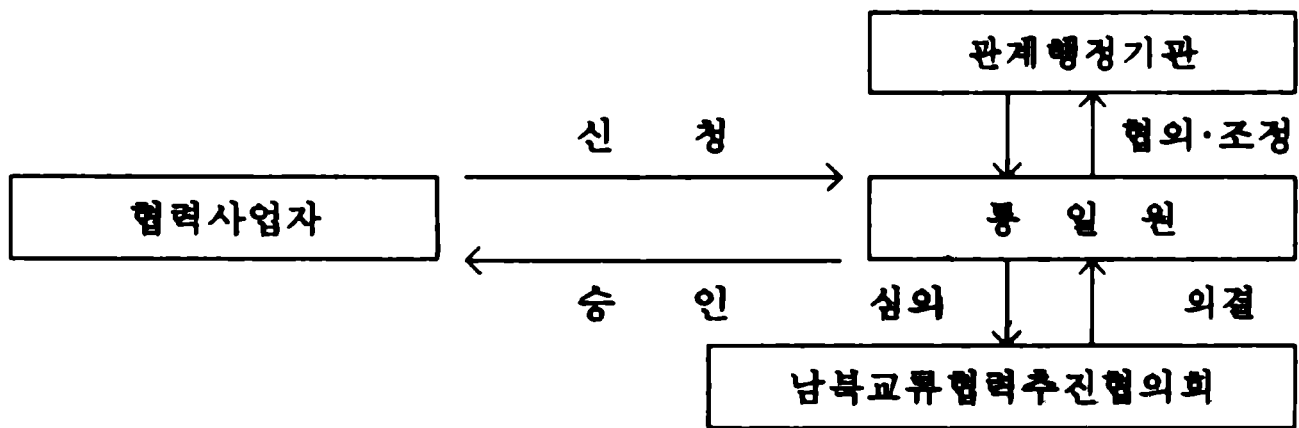
-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할 것.
  -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가 부합될 것
  -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협력사업자로부터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일원에서 심사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협력사업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이며 협력사업을 승인한 경우에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승인 사실을 협력사업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해당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협력사업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 협력사업승인신청서 1부
- 협력사업자 승인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1부
-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4. 접촉·방문·교역 관련 북한의 서식건본

〈건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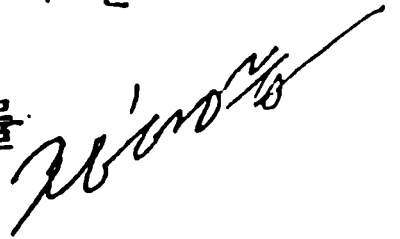
초 청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역사학  
연구소는 학술교류를 위하여 〇〇〇 선생이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  
하는바입니다.

1991년 3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역사학연구소 소장 정형률



〈전본-2〉

## 여행안전담보각서

사회과학원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 선생  
의 신변안전과 자기거주지로 돌아가도록 할것임을 담보  
하느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부

부 장 백 화 립



1991년 4월 12일

〈전본-3〉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앞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는 민족문화예술의 통일적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성원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전체 문화예술인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오늘 국토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적극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이러한 열망과 의지를 반영하여 평양에서는 10월 18일부터 윤이상선생의 발기에 따라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성대히 막을 올리게 됩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 예술인들과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

와 관심속에서 진행되는 범민족통일음악회는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좋은 계기가 될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동포예술인들이 이번에 한자리에 모여앉아 통일의 노래도 함께 부르고 동포애의 정도 함께 나누다면 분열의 비극을 겪고있는 겨레들을 통일운동으로 고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추진위원회는 윤이상선생의 제의에 따라 남조선문화예술계의 인사들을 평양에서 열리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다음과 같이 초청하는바입니다.

- 1 리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황병기
- 2 국립창극단 지도위원 오정숙
- 3 국립창극단 단원 정화영
- 4 주계예술학교 국악과 조교수 김정수
- 5 리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부교수 홍종진
- 6 전국시우단체 총연합회 회장 김덕순
- 7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오복녀
- 8 국립국악원 연주단원 김광숙
- 9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윤인숙
- 10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회장 김덕수
- 11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운영위원 리광수
- 12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운영위원 강민석
- 13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회원 김은태
- 14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로동은



15 동아일보사 편집국 문화부 사감 임인권

16 한겨레신문사 기자 안성숙

17 기자 김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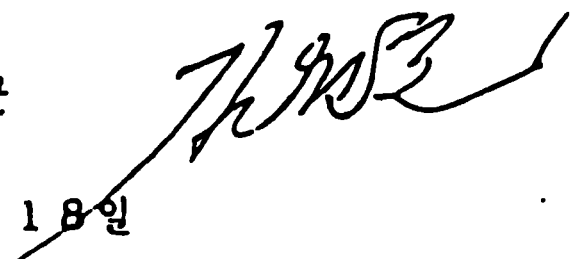
우리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할 남측 문예인들과 기자들이  
판문점을 통하여 평양으로 오는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체류  
기간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아울러 공화국 해당 기관이  
그들의 신변안전을 전적으로 담보하고 무사히 돌아가도록 할것임을  
알리는바입니다.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 원 군

1990년 9월 18일



<전본-4>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

104, Bd Binoau - 92200 NEUILLY-SUR-SEINE, France  
Tel. 47451612 - Telex corcom 620728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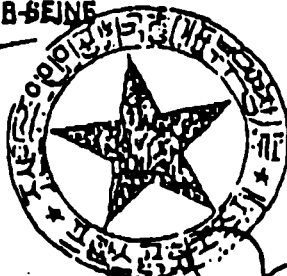
회사 앞.

프랑스 공화국 주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총대외부 무역총사부는 조선봉화총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신발생산합작 및 기타거래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귀사 ○○○○○○선생과 ○○○○○○  
○○선생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초청합니다.

동시에 선생들의 우리나라 체류기간 모든 편의와  
신변상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REPRESENTATION COMMERCIALE DE LA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  
104, Boulevard Binoau - 92200 NEUILLY-SUR-SEINE

프랑스 공화국 주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총대외부 무역총사부



무역총사 윤양진

1991. 10. 17. 배리.

<전본-5>

○ ○ ○ 목 사 닐 귀 하

목사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북부조국에 계시는동안 신변을 보호하며 무사히 귀국하시도록

모든 편의를 보장할것입니다.

1991년 9월 19일



CX420 영:20 도착

7-5

CXA

<견본-6>

#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КОМИТЕТ ИНСПЕКЦИИ  
ВНЕШНИХ ТОВАРОВ КОРЕИ  
ПХЕНЬЯН КОРЕЯ 조선



KOREA FOREIGN COMMODITY  
INSPECTION COMMITTEE  
평양 PYONGYANG KOREA

Тел. адрес: KFCIC ПХЕНЬЯН

Cable address; KFCIC PYONGYANG

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No. 14-65-81-10141

일자  
Date 14th Oct., 1991.

발송인  
(Consignor;) Pyongyang Silk Joint Venture Company.

수화인  
(Consignee;)

수출대상국  
(Country of Destination;) Japan

기호  
(Mark;)

수송수단  
(Means of Transportation;) by ship

품명  
(Commodity;) 100 PCT Raw Silk Yarn

산지  
(Place of Origin;) D.P.R of Korea.

수량  
(Quantity;) 100 cartons

중량  
(Weight;) 3,075.166 kgs-net

상기 상품은 조선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modities were produced or  
manufactured in Korea.)

장소  
Nampo (Foreign Commodity Inspection Office)

소장  
(Director)

<견본-7>

#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КОМИТЕТ ИНСПЕКЦИИ  
ВНЕШНИХ ТОВАРОВ КОРЕИ  
ПХЕНЬЯН КОРЕЯ **조선**



KOREA FOREIGN COMMODITY  
INSPECTION COMMITTEE  
**평양** PYONGYANG KOREA

Тел. адрес: KFCIC ПХЕНЬЯН (QUANTITY)

Cable address: KFCIC PYONGYANG

검 사 증  
(СЕРТИФИКАТ О ИНСПЕКЦИИ)  
(INSPECTION CERTIFICATE)

No. 2-7

날자  
Date 26th, June 1951

발 송 인  
(Отправитель товара)  
(Consignor)

PYONGYANG SILK JOINT VENTURE COMPANY

수 화 인  
(Получатель товара)  
(Consignee)

TO ORDER

종 목  
(Наименование товара)  
(Commodity)

100%CT RAW SILK YARN 20/22 DENIER (3A-GRADE)

차호 또는 선박명  
(№ вагона или наименование судна)  
(Wagon No. or Name of vessel)

LV. "SILK DENIER-3"

검사결과  
(Результат инспекции товара)  
(Results of inspection)

RAW SILK 20/22 DENIER 3A-GRADE

PACKAGES . . . . . 340 CTNS

NET WEIGHT . . . . . 10,240.032 LB

GROSS WEIGHT . . . . . 11,000.032 LB

대외상품검사소  
(Контора инспекции внешних товаров)  
Foreign Commodity Inspection Office

검사관  
(Инспектор)  
(Inspector)

<견본-8>

양식 제 5 호

N \_\_\_\_\_

위 생 검 역 증  
SANITARY-QUARANTINE CERTIFICATE

이 물품과 그의 생산지, 모역출근곳 및 그 주변의 위생적상태가 이상이  
없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no abnormality of sanitary epidemiologic conditions has  
been found in the undermentioned freight as well as at the producing and gathering  
districts, also in their circumst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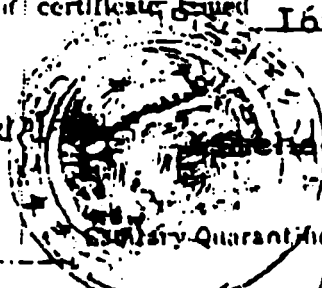
물 명  
Name of goods F. Pollack Fish.

중 량(수 량)  
gross weight (quantity) \_\_\_\_\_

정 미 중 량(수량)  
net weight (quantity) 750 M/tons.

발 증 년 월 일  
Date of certificate issued 16th Dec., 19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생검역소



Sanitary Quarantine Service of DPRK.

검역의사 수표  
Signature of health officer

## Ⅱ. 남북물자교역 추진요령

### 1. 거래관계 개설

#### 가. 거래를 위한 접촉

우리측 교역당사자는 북한주민과 직접 접촉하거나, 제 3 국의 교역업자를 통하여 남북교역을 시작할 수 있다.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상사와 직접 상담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으며, 흔히 제 3 국에서 접촉하는 예가 많다.

제 3 국에서 북한 상사원을 접촉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북한과 거래관계에 있는 제 3 국 무역상(중개인)의 중개에 의해 북한측 거래상대방을 소개받거나 북한과 교역실적이 있는 남한상사의 제 3 국(홍콩, 일본 등)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제 3 국 교역업자를 통하는 방법으로는 중개인이 북한측과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주선하는 경우도 있고, 중개인이 남한측의 요청에 따라 남북교역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동포를 통해 간접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 나. 제 3 국 중개인

남북교역은 아직도 대부분 제 3 국 중개인(업체)의 중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중개인이란 남북교역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먼저 북한과의 상담을 진행한 뒤 혹은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그 조건을 남한의 교역당사자에게 제시하여 거래를 성립시키거나, 남한 교역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북한과 상담을 추진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자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주요 중개지역으로는 반출입 모두 홍콩이 핵심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홍콩이 무관세지역이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직접 무역이 행해지기전 활약하던 홍콩의 중개상들이 이제는 남북교역의 중개를 많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 무역이 활발한 중국의 상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홍콩외에도 교역 초기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주요 중개지 역할을 하였으며 '91년 들어 중국이 주요 중개지로 부상하고 있다.

#### 다. 상 담

남북교역을 위한 상담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중 하나는 일반 수출입과 비교해 볼때 교역상담의 목적이 되는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89년 남북교역 시행초기에는 홍콩, 연변거주 중개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상담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91년 이후 남북 물자 교역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청의 증가와 함께 직교역을 추진하기



위한 상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라. 신용조회

남북교역에 있어서 신용조회는, 남북교역이 제 3 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북한측 교역상대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 보다는 중개업체에 대한 신용조사가 일반 수출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제 3 국 중개업체를 통한 간접교역은 일단 교역 위험(Risk)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으나 부대비용의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남북교역의 특수성을 이유로 중개업체들이 제시하는 조건은 일반적인 중개무역에 비해 고율의 중개료 부담 등 우리 대북 교역업체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교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남북교역에 있어서 신용조사는 중개인에 대한 것 보다는 북한의 교역상대 회사에 대한 조사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외신용도에 비추어 볼때 북한상사의 신용문제는 남북교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남한상사가 북한상사와 직접 교역을 추진할 경우 북한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 마. 거래제외와 수락

수출입 요령과 큰 차이가 없고, 반입에 있어서는 견본이나 카탈로그를 보내주도록 요구한다.

특히, 물품검사가 있어야만 승인될 수 있는 품목(의약품등 안전, 보건, 표준에 관련되는 것)은 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 바. 계약

남북교역의 계약은 일반 수출입에 있어서의 계약요령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간접교역으로 북한물자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북한상사와 중개인간의 계약이 선행된 후 남한의 반입상사와 중개인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품명·규격 : 품명은 당해 품목에 대해 가장 협의로 표현된 품목명을 기재하되, 관세청장이 상품명을 표준화하여 공고한 품명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 품명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교역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규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② 유효기간 : 계약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 ③ 선적조건 : 물품의 인도시기와 인도장소, 인도방법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④ 포장방법 : 포장은 물품의 하역, 수송, 보관 및 매매에 있어서 그 질적, 양적 보호를 통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

하여 산물(Bulk Cargo)이 아닌 한 거의 필수적으로 행해지며, 또한 물품이 당해계약의 목적물임을 외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수출입물자의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도 좋다.

⑤ 수량 및 단위 : 수량·단위에는 중량(Weight), 용적(Measurment), 갯수(Number)나 대수, 포장(Package), 길이(Length)가 주로 활용되며 대북교역에서는 대부분 중량단위인 M/T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1M/T은 일반적으로 2.204ibs 즉 1,000kg을 나타낸다.

⑥ 단가·금액, 대금결제통화 : 물품의 가격조건에 있어서는 단가 및 반출·입 요소비용의 귀속부담을 나타내는 정형무역약관(Trade Terms)에 의한 조건이 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물품을 반입할 경우 F.O.B조건이 가장 많고(북한과 중개상사간의 계약조건), 반출할 경우는 CNF(남한과 중개상사간의 계약조건)가 대부분이다. 반출에 있어서 CNF조건이 많은 것은 북한의 선박사정과 북한이 자국내 국영보험회사들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대금결제통화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허용된 결제통화이어야 하며 대부분 미달러화를 대금결제통화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남북회담에서 남북간 대금결제는 청산계정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⑦ 대금결제조건 : 물품의 선적(인도)과 대금결제 시기와의 시차에 의해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연지급) 등의 대금결제 시기 표시와 현금결제, 어음결제, 송금결제(T/T), 물품결제 등 대금결제수단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 ⑧ 중재조건 : 교역에 있어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단순한 불평차원을 넘어서 손해배상과 같은 구체적 청구를 수반할 경우 클레임의 해결 및 조정 중재기관 등에 대한 조항이 표시되면 좋다.

## 2. 반출입 승인신청

북한의 교역상대방과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남한의 교역당사자는 물품을 반출·반입하기 위해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수출입공고 및 별도공고, 통합공고에서 수출·입의 제한이 없는 품목인 경우(자동승인품목)에는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한이 있는 품목인 경우(제한승인품목)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반출·반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자세한 것은 제 1 장의 반출입승인 절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 3. 반출입 계약의 이행

#### 가. 대금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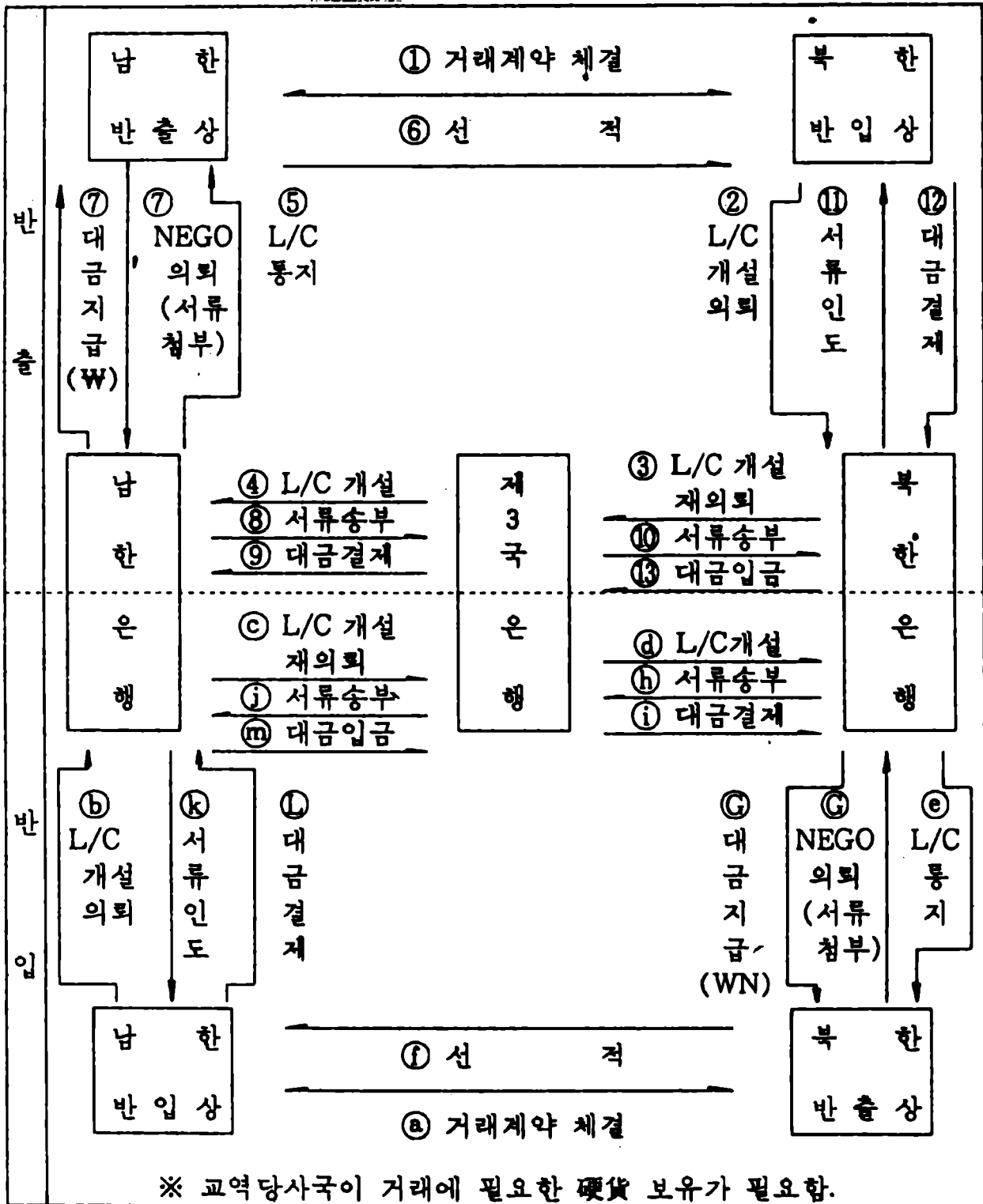
교역물품의 반출입 대금결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 3 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 1 항) 그러므로 남북교역에 있어서 반출입 대금의 결제방법은 일반 수출입에 있어서와 차이점이 거의 없으며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허용된 결제방법과 결제통화이면 가능하다. 다만 정상의 결제방법중 갑류외국환은행의 장, 한국은행 총재 인증사항 이외의 대금결제방법은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지금까지 간접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교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금결제방법은 제 3 국 중개인 앞으로 신용장(L/C)을 개설하는 일반 신용장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물물교환도 유력한 결제방법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마련되어 남북교역의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청산결제방식이 사용될 것이다.

##### (1) 일반 신용장 방식

일반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방법은 양측의 특정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장으로 거래함으로써 양측의 특정은행은 신용장의 통지, 확인, 매입은행이 되며, 대금결제는 양측의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신용장방식에 의한 거래흐름도〉



※ 여기에서 경화란 영국 파운드화 독일 마르크화, 미국의 달러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등을 주로 의미함.

## (2) 특수신용장 방식

### ○ 기탁신용장(Escrow L/C)에 의한 거래

쌍방 상호협정에 의거 일방의 수입자가 수입신용장개설시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3국이나 쌍방의 특수은행에 기탁구좌(Escrow A/C)를 개설하여 동 계좌에 예치한 후 상대방의 수출자가 당초 수입국으로부터 구상무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국의 쌍방 환거래은행에 쌍방 기탁구좌를 개설하거나 양측 지정은행에 기탁구좌를 개설하여 교역대전을 결제한다.

### ○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에 의한 거래

일정액의 수입 L/C를 개설할 경우 동 L/C는 상대 수출국이 동액의 수입 L/C를 개설하여 오는 경우만 유효하다는 조건부신용장으로 쌍방의 제3국 공동환거래은행(예치환은행)을 교역대금 결제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쌍방 은행이 상호 구좌를 개설하여 상호 직접 대금결제하는 방식으로 쌍방 교역 균형 유지가 가능하며 대금회수가 용이하나, 반드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므로 신속성 있는 교역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

## (3) D/P, D/A 등 무신용장(계약서) 방식

###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지급도조건 화환거래)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화물을 자기 책임하

에 선적하고 구비된 선적서류에 일람출급화환어음을 첨부하여 자기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은행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의뢰를 받은 수입국측 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도조건 화환거래)

D/P거래와 대금추심경로는 같으나 D/P와 다른 점은 수출상은 일람후 정기 또는 확정일 출급화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상은 그 제시된 어음을 일람지급함이 없이 인수만 함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지급에 있어서 연지급방식이며 일종의 외상거래이다.

무신용장 거래방식은 쌍방간 신용이 확실한 경우 신용장 방식에 비하여 부대비용도 덜들고 제반업무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 반출의 경우 상대방의 대금지불 능력과 관련하여 대금회수가 문제시될 수 있으므로 북한과 반출계약시 계약서 방식으로 하는 경우 북한 당국이나 중앙은행의 대금지급 보증을 받는 것이 좋다.

(4) 연계교역 등 특수교역방식에 의한 결제

○ 물물교환(Barter Trade)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상품이 직접 교환되는 것으로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된다. 신용장 개설은 필요없다.



○ 대용구매(Counter Purchase)

상업적 보상이라고도 불리우며 남한의 반출업자가 남한물품 반출에 대응하여 북한의 반입업자로 부터 북한물품을 반입함으로써 반출과 반입을 연계시키는 거래형태로서 반출과 반입을 위한 계약서는 각각 별도로 체결한다. 이 두 계약서는 FRAME WORK 또는 PROTOCOL이라는 의정서를 통하여 상호 연결되거나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어 거래가 성립된다. 환거래가 발생하여 쌍방 합의된 통화로 대금이 결제되며, 일반적으로 두개의 일반 신용장이 사용되며 환급보증(또는 기타행보증)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위탁가공교역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고 이의 가공품을 반입하는 반출임을 말하며, 이는 가공임만 지급되고 원자재 반출, 가공품 반입대금은 별도로 결제되지 않는 무환위탁가공교역과 원자재 반출대금과 가공품 반입대금이 별도로 회수·지급되는 유환위탁가공교역으로 나뉘어진다.

나. 반출입 화물의 수송

북한의 화물운송은 철도위주의 단거리 운송이 기초를 이루고 도로 운송과 해운운송이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해운운송의 의존율이 가장 높고 육상운송의 경우에도 도로운송이 주종을 이루고 철

도운송이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남북한의 무역운송 형태가 해운위주와 主鐵補道로 각각 다른 형태로 발달되었고 내륙수송에 있어서도 남한이 화물차운송, 북한이 철도운송으로 주된 운송수단이 달라 향후 남북 직교역 물자의 운송문제 해결에는 상호간의 도로 및 철도의 연결과 정비가 중점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상운송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므로 해상운송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소개한다.

#### (1) 북한의 항만시설 현황

동·서해안으로 양분되어 있는 북한의 항만은 그 기능에 따라 남포, 송림, 해주, 나진, 원산, 흥남, 청진, 선봉 등 8개소의 무역항, 김책, 청진, 신포, 양호, 원산 등 5개소의 원양수산기지항 및 신의주등 30여개소의 어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해상운송의 역할이 크지 않은 북한은 그동안 항만확장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선박접안능력은 2만톤급에 불과하며 컨테이너선 등의 특수선 전용부두는 없다.

또한 북한의 항만시설은 전반적으로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으며 하역도 잡화물 처리용 하역기기의 절대 부족으로 인력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항만시설의 낙후와 하역시설의 전근대화로 입항하는 선박도 비전용화 선박이거나 전근대적인 중형이하의 선박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향후 남북교역에 있어서도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마련 등 개선할 점이 많다.

북한의 항만현황(무역항)

항구명	하역능력	접안능력	수심	부두시설 현황	비 고
남 포	442만톤	5만톤급	12~ 13.5m	○ 부두연장 1,319m (부두 9개)	○ 북한 서해안 최대항구 ○ 무연탄, 시 멘트, 식량 하역시설 설 비 ○ 평양과 고속 도로와 전기 철도로 연결
홍 남	250만톤	1.5만톤급	7.6m	○ 부두연장 1,230m	○ 3만톤급 부 두 및 시멘 트 하역시설 건설중
해 주	135만톤	7천톤급	7~ 12m	○ 부두연장 410m	○ 시멘트 전용 항
송 립	124만톤	2만톤급	12m	○ 부두연장 445m	○ 철광석, 유 연탄, 철강 류 취급
원 산	57만톤	1.5만톤급	6.1~ 7.9m	○ 부두연장 343m	○ 군항 겸 무 역항 ○ 삼 지 연 호, 만경봉호 정 기운항
청 진 (동항)	87만톤	1만톤급	1.5~ 9m	○ 부두연장 750m (부두 3개)	○ 조강, 활석 등 취급 ○ 창 고 (3 천 ㎡)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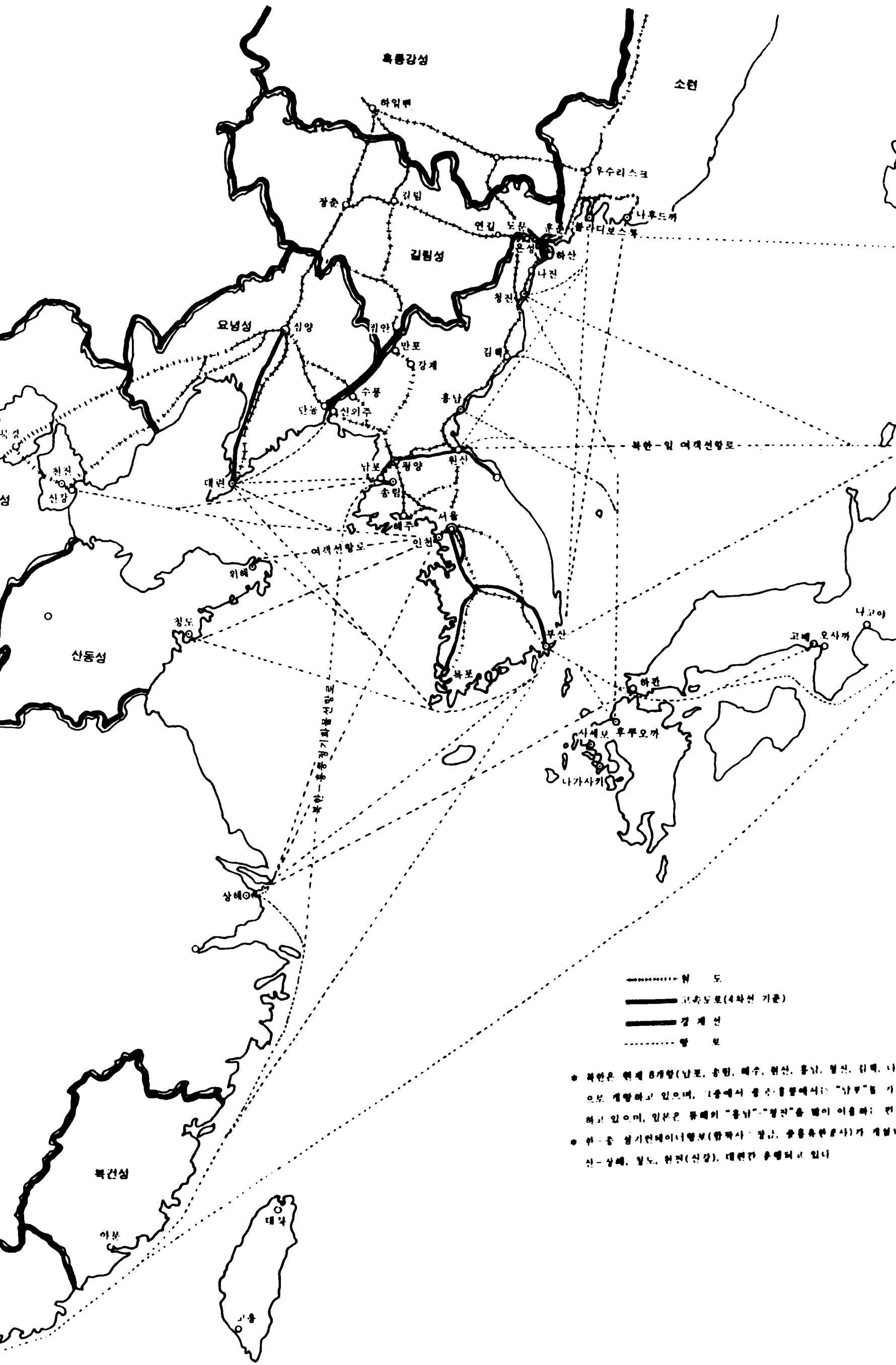
항구명	하역능력	접안능력	수심	부두시설 현황	비 고
청진 (서항)	713만톤	1만톤급	8~ 10m	○ 부두연장 1,388m (부두 4개)	○ 창고 (8천 ㎡) 2개 ○ 항구내 선박 대리점, 선 원 구락부 설치
나진	300만톤	1만톤급	8.5~ 9m	○ 부두연장 2,115m (부두 3개) ○ 부두면적 37만5천㎡	○ 구소련 극동 지방 화물중 계
선봉	200만톤	20만톤급	9m	○ 파이프라인 3.3km ○ 부두면적 20만㎡	○ 원유 전용항

## (2) 북한의 대외항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철도가 부설되어 1970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교역화물을 철도로 운송하여 해운항로 운용은 빈약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운용중인 해운항로는 대러시아, 대중, 대일 항로 외에 기타 원양항로가 있다.

대러시아항로는 청진, 나진의 동해안 항구와 구소련 극동지방의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를 연결하는 항로이고, 대중국항로는 남포와 상해간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1964년 중국측의 COSCO 및 대외운수공사와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 철도  
 ————— 고속도로(4차선 기준)  
 ————— 강계선  
 ..... 일반도

\* 북한은 현재 8개항(남포, 송림, 해주, 원산, 홍남, 청진, 김책, 나포)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동구-홍남에서는 "남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류택의 "홍남"·"청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 한-중 정기국제여객선(합작사) 장춘, 충칭(중화인민공화국)과 개항한 선-상해, 칭도, 원전(신강), 대련간 운행되고 있다.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대일항로는 청진, 홍남, 남포와 일본의 오사카, 고베, 도쿄, 요코하마, 나가사키를 연결하는 항로로서 최근 대일교역의 증가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으며 원양항로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부정기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과는 정기항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남포와 홍콩, 홍남과 일본 사이에는 1달에 2~3번 정도 조선 대흥선박회사 등 북한선사에서 화물을 직접 운송하고 있으며 남포·홍콩간 운임은 톤당 미화 28불 정도인 반면, 홍남·일본간 운임은 톤당 미화 31불 정도로 알려져 있다.

### (3) 선박의 입항 수속

북한 항만에서의 선박의 입항 수속, 하역조건 등 운영상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일 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 제14조에 일본 선박회사의 북한무역항으로의 배선과 선박취급에 대한 약정이 있다.

선박이 북한항만에 입항하기 위해서 선박회사는 조선대외운수회사와 조선외국선박사업회사에 배선계획을 통지하여 입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항에서의 선박의 입항허용기간(Layday's allowance)은 입항예정일 전후 2일간(합계 5일)이며 그 이후의 시간은 체박으로 계산된다. 선박의 출항은 선박회사가 조선대외운수회사에 통지하여 수속을 밟으면 된다. 남포항에서는 17시 이후의 출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입항세의 지불은 입항허가의 신청과 동시에 선박대리업무를 보고 있



는 조선외국선박회사에 연락해 동사의 청구에 따라 선박입항 이전에 조선외국선박회사지사에게 도착되도록 해운사에서 송금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선박의 남포항 입항시 소요되는 주요 항비 구성은 부두 사용료(1.3원(북한원)×NRT), Tonnage Due(0.3원×NRT), 검역료(0.05원×NRT), 갑문통과비(0.3원×NRT×2회(입출항)), 도선사용료(0.24원×NRT×2회(입항·출항)), 통신비, 갑문견인선 사용료, 항만견인선 사용료, LINESMEN 사용료 등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부는 대북교역물자 수송은 북한원산지 확인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선적지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항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교역(직수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남북교역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고 원산지 확인에도 확실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역물자수송에 이용되는 선박은 제3국적선이 대부분이다.

#### 다. 검 사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의 일조무역회가 협정한 “조일 양국 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약”에 의하면, 북한·일본의 공인된 상품검사기관이 행한 선적시 품질·수량 검사증을 최종의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단, 계약자 쌍방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각자의 제조자의 검사증명서를 최종의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한 상품검사 수준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현재 반입시 북한의 조선대의상품검사위원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C/O)과 검사증, 위생검역증 등을 받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등 1차 자연산품의 반입시에는 클레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전 품질검사가 필요한 바, 간접교역인 경우는 중개인에게 품질검사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교역을 추진함이 좋다.

반출에 있어서도 제3국 중개업체를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북한 스스로 품질보증서를 받지 않음은 물론, 상표 등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오로지 제3국 중개인의 신뢰를 유일한 담보수단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대북한 수출에서처럼 제조자의 검사증을 최종으로 하지 못하는 대신 반출업자는 반출검사나 포장시에 제조자의 협력을 얻어 입회하는 등 반출품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완수토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 4. 원산지 확인 및 통관업무

##### 가. 원산지 확인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사항은 관세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교역당사자의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가 북한인 물자를 반입한 경우는 통관시 관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통관시 동 반입물품이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북한이 원산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오감으로 확인하고 그의 원산지 확인이 오감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자가 동 물자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 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운송방법별 확인서류〉

○ 직접 운송물품

-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사실 입증서류(B/L)
- B/L 발행 외항선박의 북한 입출항 사실 입증서류(선장확인 항해 일지)

○ 제 3 국 경유물품

- 북한에서 3국까지 운송한 사실 입증서류(B/L), 적하목록 등 북한 적출사실 입증서류
- 경유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B/L)
- 경유국에서 환적, 일시장치를 입증하는 권한있는 기관의 서류
- 경유국 발행 재수출 원산지증명서(홍콩 : 상공회의소, 일본 : 세관)

〈거래형태별 확인서류〉

- 반입승인서상의 공급자와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하인이 상이할 때
  - 북한의 수출자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될 때까지의 모든 거래관계 서류

○ 반입승인서상의 공급자(송화인, 중개인)와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하인이 일치할 때

－ 제 3 국 공급자와 북한상사와의 계약서 또는 Offer Sheet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는 완전 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로 북한에서 최종 생산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제 3 국에서 수입한 원자재와 부품을 북한에서 단순조립, 포장 등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판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북한물품을 제 3 국에서 수입한 경우는 일반수입과 동일하게 대외 무역 관계법규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자동승인품목 반입시 비과세 혜택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전제로 한 북한원산지 확인은 필요없고 대외무역관계법규에 의한 절차를 따르면 된다. 그러나 제한승인 품목 반입시 북한원산지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외무역 관계법규에 따라 관련기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 나. 반입신고 및 통관

「수입통관 사무처리 규정」 제3-1-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세관장에게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 5. 세제혜택 및 지원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여 반입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비

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반출물품인 경우에도 대외무역법, 수출입보험법 등에 규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손실보조 및 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6. 교역보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5조 제 2 항에 의거 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는데, 반출입 승인을 받은 업체는 그 진행상황을 일정한 보고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역보고에 포함되는 사항은 보고사유·추진경위(일정) 및 교역실적을 입증하는 서류(반출입 면장사본 및 통관부속 서류사본), 애로 및 건의사항, 교역 손익계산서, 기타 교역승인시 부과했던 조건이행에 관련된 서류 등이다.

### Ⅲ. 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제9조에 의하여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용자·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용자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손실보조

##### 가. 손실보조 대상

기금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조 대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교역을 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이거나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협력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 한다.

〈교역인 경우〉

-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인한 손실
-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으로 인한 손실
-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인 경우〉

-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투자원본,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 배당금인 경우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나. 손실의 인정범위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로 하고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로 한다. 배당금 손실의 경우에는 주식 및 지분의 취득가액범위내에서 인정하되 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손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조 제외대상〉

-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
- 손실보조약정 효력발생(업무취급수수료 납부) 이전에 발생한 손실
-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다른 형태의 손실보전을 받은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신청 및 약정절차

(1)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시행전에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승인을 받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손실보조약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 〈첨부서류〉

-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 손실보조약정 신청액 산출명세표
- 신청인, 제작자,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동 신청을 받은 통일원장관은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한국 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원장관의 지원방침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신청자(이하 '피약정자')와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3) 피약정자는 업무취급수수료(손실보조 약정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한내에 납부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1부를 교부 받는다.



## 라.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및 해지

(1) 피약정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취급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했을 때 약정의 효력이 발생되며, 그 약정의 범위내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2) 피약정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이 취소·해지될 수 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 약정체결 당시에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리지 아니한 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및 손실보조약정을 위반한 때

(3) 교역이나 용역의 제공·송금 등 사업의 개시 자체가 피약정자의 귀책사유없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마. 약정내용 변경절차

(1) 피약정자는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3부와 당해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통일원장관은 약정변경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3) 피약정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약정변경을 승인하는 뜻이 기재·날인된 손실보조약정 변경승인서 1부를 교부받는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서 교부전에 업무취급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 바. 손실보조금 신청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동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조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손실보조금 신청경위
- 손실발생 증빙서류 사본
- 손실보조약정증서 사본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사. 보조금의 지급 범위

손실보조금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범위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이내로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 아. 피약정자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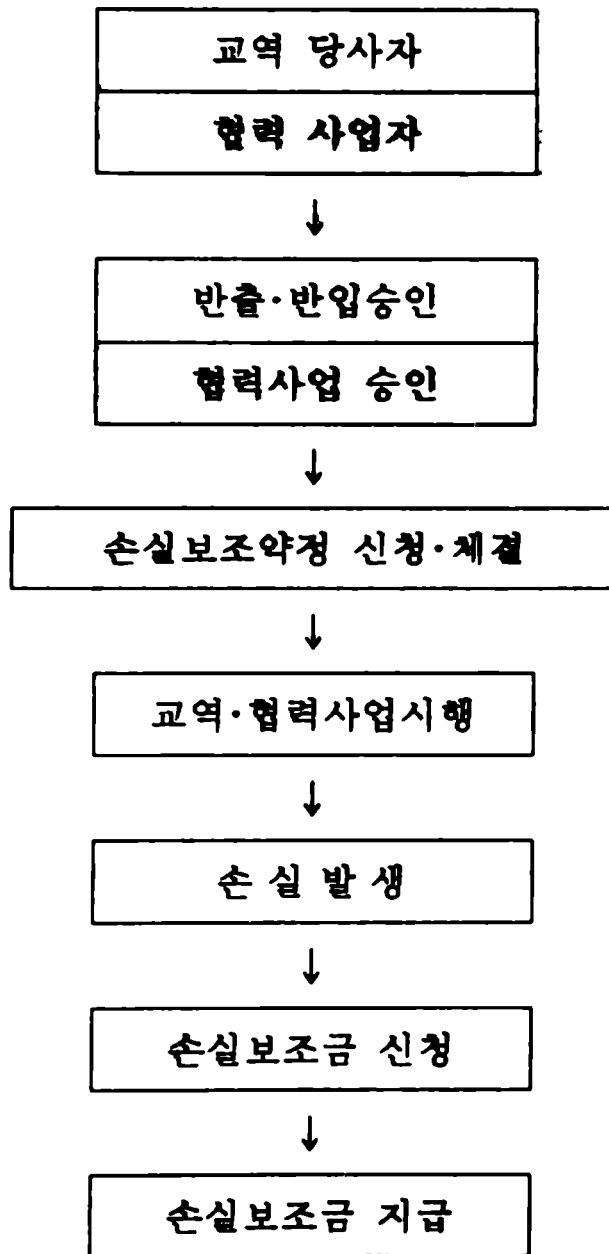
피약정자가 손실보조약정 체결후 준수하여야 할 약정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반출 및 송금 등 이행통지 : 물품의 반출·용역제공·자금의 송금 등이 이행되었을 때는 동 사실증명서류 사본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험발생 통지 : 손실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알았을 때 또는 손실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회수노력 : 손실보조금 지급을 청구한 피약정자는 이와 관련한 미회수금의 회수 및 권리행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회수금 납부 : 손실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회수금계산서 제출 및 회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대위권행사 협조 : 기금수탁관리자가 손실보조금 지급에 따라 취득한 대위권을 행사할 시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6) 채권행사 보고 : 손실보조약정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손실보조금 반환 : 손실보조금 반환대상이 되어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

특 통지받았을 때는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8) 보고 및 조사협조 : 기금수탁관리자가 약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응하여야 한다.

### 손실보조 처리절차도



## 2. 자금대출

### 가. 자금대출 대상

(1) 기금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한과 북한간에 교역을 하거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 나. 대출한도 및 조건

(1) 반출·반입인 경우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90이내이며, 대출조건은 반출·반입 유형별로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경제협력사업인 경우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90이내이며, 대출형식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하는데, 자금이 분할 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이자율은 연 5%이며, 대출기간은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하고 원금은 연 1회이상 정기분할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담보는 남한내 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제공해야 하

며 담보이외에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할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조의 약정도 가능하다.

#### 다. 대출절차

##### (1) 사전협의

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대출 신청에 앞서 통일원장관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한 자금대출사전협의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첨부서류〉

- 사업내용
- 사업추진경위
- 대출신청 예상내용
- 추정수지명세서
- 차주, 제작자, 사업상대자의 개요
- 협의서 사본
-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2) 신청서 제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대출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첨부서류〉

- 사업승인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 대출신청 내용
- 이사회 기재결의서
- 차주, 제작자,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3) 통일원장관은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등을 심사한 후 지원 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4) 신청인은 기금수탁관리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을 대출받는다.

#### 라. 대출받은 자의 의무

(1)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기한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류〉

- 주식취득보고서 :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
-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
-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4월이내
- 배당금 및 원리금 회수보고서(증빙서 첨부) : 회수일로부터 2월이내
- 청산예정보고서 : 청산결정후 1월이내
- 청산보고서 및 부속 명세서 : 청산일로부터 2월이내
-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 해당사실 발생후 2

월이내

(2) 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계약에 의해 약정된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회수하는 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이 현금일 때는 2영업일 이내, 물품인 때에는 15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3) 대출받은 자는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개월이내에 대출자금 사용결과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채무보증

#### 가. 의뢰인과 수혜자

의뢰인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이 되며 수혜자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된다.

#### 나. 보증 대상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다. 보증 조건

- 보증형식은 증서에 의한다.



- 보증금액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 보증기간은 당해 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할 경우도 있다.

#### 라. 보증 절차

의뢰인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채무보증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고, 통일원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을 심사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면 수혜자는 지급보증을 받게 된다.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이사회 기채결의서 1부
- 담보제공 계획서
-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4. 금융기관 지원

(1) 금융기관은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용자시 발생하는 이자손실에 대해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통일원장관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당해손실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은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통일원장관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5.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 가. 지원대상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의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 나. 지원절차 및 조건

(1) 민족공동체회복지원으로는 손실보조, 자금대출, 채무보증, 금융기관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절차는 전술한 각 지원 내용에 부합되는 절

차를 준용하되 필요할 경우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지원형태

남한정부가 특정품목을 북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북한에 제안했을때, 북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에는 반출에 필요한 물품비용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경비 일체가 지원대상이다.

북한측의 교역당사자가 남한으로부터 물품구입을 희망하는 거래조건이 남한의 교역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남한정부가 민족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역이 실행된 경우, 이것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것은 남북간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될 경우 스왈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승인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좌우되며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차원의 교역은 동 물품이 꼭 필요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어, 남북교역 활성화 뿐만 아니라 여타부문의 남북교류협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교역은 비교적 물량이 방대하거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개별기업이 책임지는 차원의 교역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서, 북한주민의 복지에 관련되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필품의 공급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 6. 지원유형간의 관계

(1) 손실보조는 북한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후적 손실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적 성격이 짙다.

(2) 교역관련 손실보조약정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은 지원의 기본적 요건으로 남북한 거래당사자간의 직접계약과 직접수송에 의한 직교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접교역의 경우에는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금대출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은 자금대출한도액은 소요자금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사업유형별로 결정되므로 대출신청전에 자금대출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대출대상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4) 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손실보조약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기금 지원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여부 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분야 남북협력기금 지원대비표

지원 유형 구분	손실보조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반출·반입 자금대출	채무보증
지원 대상	보험적 성격(예견되지 못한 사후적 손실) 손실판정은 물품 인도·용역제공, 자금입금 후 발생기준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협의회 의결 또는 금융기관용자로서 불가능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대출 가능	통일원장관의 반출·반입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좌 동	협조용자 ○ 반출·입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경제협력사업 소요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지원 한도	지원대상손실액의 90/100이내에서 약정비율에 따라(단 협의회 의결로 지정한 경우는 100/100) 약정액 결정. 피약정자는 의무 이행태만으로 인한 것은 상계가능	소요자금의 90/100이내(남북 당국간 직접 혹은 위임에 의한 것으로 협의회 의결시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계약금액의 90/100이내	대출받은 남한주민(의뢰인)과 대출취급금융기관(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용자한도 범위내

지원 유형 구분	손실보조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반출·반입 자금대출	채무보증
지원 기간	약정기간내(업무 취급수수료가 납 입된 날부터 기 산)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	통일원장 관은 건 별로 재 무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보증기간은 당해 거래의 용자기간 에 30일을 가산 한 기간이내
금리	약정수수료 : 0.1%	연 5%, 연 1회이 상 정기적 후취, 분할집행시 선취	통일원장 관이 건 별 협의 후 결정	대지급요율은 통 일원 장관이 따 로 정함
담보	—	○ 국내담보 ○ 거래 관련 주 식·채권 · 신용장·지급 보증서 · 어음담보 ○ 연대보증인	통일원장 관이 건 별 협의 후 결정	좌 동

지원유형 구분	손실보조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반출·반입 자금대출	채무보증
상환 (반환)	보조금 수령이후 기금수탁관리자 (수은)의 결정에 의한 반환통지시 7영업일 이내 수 은에 반환	3년 이내 거치기 간, 년1회이상 정 기분할상환(조기 회수시에는 대출 기간 불구하고 현 금 회수시에는 2 영업일 이내, 물 품 회수시에는 15 일 이내 상환)	통일원장 관은 건 별로 재 무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장 과 협의하여 결정 (좌 동)	-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	통일원 ○ 손실보조약정 신청(첨부서 류 생략) ○ 손실보조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신청 경위 - 손실발생 증 빙서류 - 손실보조 약	통일원 ○ 자금대출 사 전 협의 - 협의서 2부 - 사업내용, 추 진경위, 대출 신청 예상내 용, 추정수지 명세서, 차 주, 제작자, 상대자의 개	좌 동	통일원 ○ 채무보증 신청 - 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 이사회 기채결의서, 담보제공계 획서,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남북한 관계

지원 유형 구분	손실보조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반출·반입 자금대출	채무보증
	정중서 - 기타 필요 서류	요, 협의서 사본 기타 ○ 자금대출신청 - 신청서 2부 - 사업승인서, 사업계획서, 사업과 관 련된 계약 서, 대출신 청내용, 이 사회 기채 결의서, 차 주, 제작자, 상대자 신 용 상태 에 관한 자료, 기타		기관의 추천 서 또는 인허 가서 기타



## IV. 남북경제교류협력 실태

### 1.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접촉·방문실적

#### 가. 접촉 실적

##### (1) 총괄

'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이래 '91년말까지 경제목적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은 총 155건이며, 이중 130건이 승인되었고 12건이 불허되었다. 경제목적의 접촉은 '91년들어 대폭 늘어나 신청 140건 중 118건이 승인되었으며 이중 50건이 실제로 성사되어 42%의 접촉성사율을 보였다.

〈표 IV-1〉 경제인 접촉 승인현황 건/(명)

연도	신청	승인	불허	성사
1989	1(1)	1(1)		
1990	14(14)	11(11)	3(3)	1(1)
1991	140(216)	118(178)	9(9)	50(70)

##### (2) '91년 접촉 신청현황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93건(66%), 대기업이 30건(21%), 정부투자기관 등이 17건(13%)의 순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남북교역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 '91 업체규모별 접촉 신청현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투자기관	계
건수	93	30	17	140
비율	66%	21%	13%	100%

한편 '91년 상반기에는 주로 단순교역목적의 접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합작사업을 위한 접촉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표 IV-3〉 '91 접촉 목적별 신청 현황

구 분		단순교역	합작투자
건 수	상 반 기	38(84%)	7(16%)
	하 반 기	60(63%)	35(36%)

업종별로 보면 농수산물 등 1차산업분야가 8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공업분야가 32건, 중화학분야가 15건이었다.

〈표 IV-4〉 '91 업종별 접촉 신청 현황

구 분	농 수 산	경 공 업	중 화 학	기 타	계
건 수	82	32	15	11	140
비 율	59%	23%	10%	8%	100%

접촉상담이 이루어진 50건을 장소별로 보면, 북경, 심양, 연변등 중국 지역이 26건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본이 13건 홍콩이 2건 기타 지역이 9건이었다.

〈표 IV-5〉 '91 접촉 장소 현황

구 분	중 국	일 본	홍 콩	기 타	계
건 수	26	13	3	9	50
비 율	52%	26%	4%	18%	100%

## 나. 방문 실적

경제목적의 북한방문은 '91년 하반기 이후 '92년 5월 현재까지 3건이 이루어졌다.

최초의 방문은 남한의 주식회사 천지무역과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 개발회사간에 직교역이 성사됨에 따라 남한의 쌀 반출 수송선의 고영용 선장의 승무원 3명이 '91. 7월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북한의 나진항에 쌀 5,000톤을 수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91. 10월에는 영국계 신발회사인 X. L. Sports의 홍두희 이사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교역 및 신발공장합작 협의를 위해 방북하였다.

'92. 1월에는 북한 정무원 부총리겸 무역부장 김달현의 공식초청을 받은 대우그룹의 김우중회장 등 일행 9명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북한을 방문하였다.

경제인들의 남북경제교류협력 목적의 북한방문은 향후 남북 당국간에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과실송금등 제도적 보장자치가 이루어질 경우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2. 물자교역

### 가. 교역규모

'88년 10월부터 '91년 12월말 현재까지의 교역규모는 승인기준으로 총 509건 240,598천\$이며 이중 반입은 464건 209,622천\$, 반출은 45건 30,976천\$로서 반입이 87%를 차지하였다.

통관기준으로 보면 총 474건 143,458천\$이 통관되어 59.6%의 통관

실적을 보였으며 그중 반입은 444건 136,655천\$, 반출은 30건 6,803천 \$로서 반입이 95%를 차지하여 통관도 반입중심임을 보여주었다.

〈표 IV-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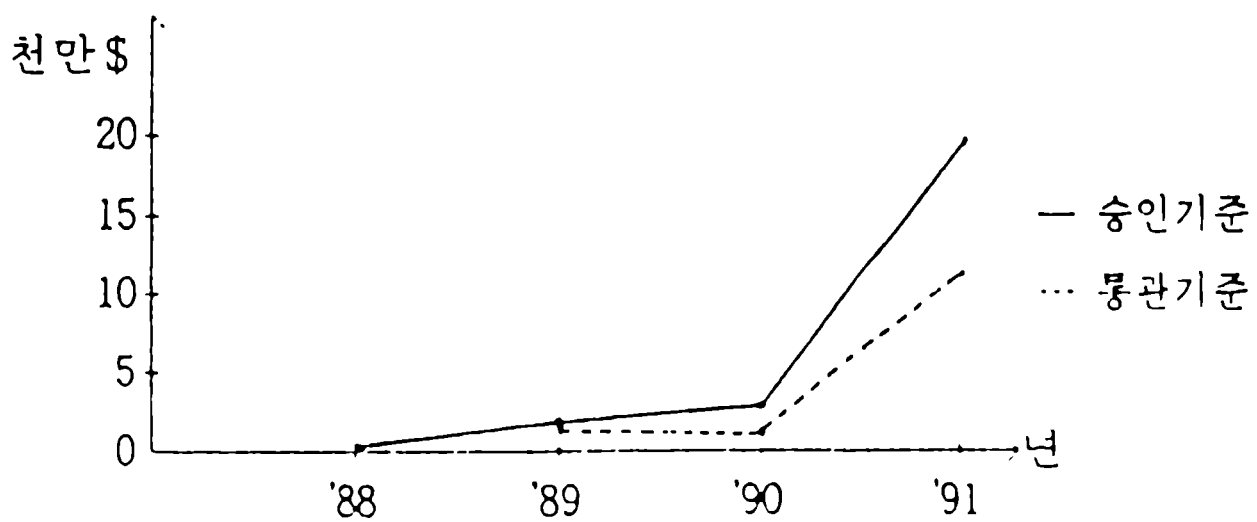
연도별 무역규모

[(건/천\$), ( )안은 승인대비 통관비율]

구분	반 입		반 출		계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승 인	통 관
'88	4/1,037				4/1,037	
'89	57/22,235	66/18,655 (83.9)	1 / 69	1 / 69 (100)	58/22,304	67/18,724 (83.9)
'90	75/20,354	78/12,278 (60.3)	4/4,731	6/1,187 (25.1)	79/25,085	84/13,465 (53.7)
'91	328/ 165,996	300/ 105,722 (63.7)	40/26,176	23/5,547 (21.2)	368/ 192,172	323/ 111,269 (57.9)
계	464/ 209,622	444/ 136,655 (65.2)	45/30,976	30/6,803 (22.0)	509/ 240,598	474/ 143,458 (59.6)

〈그림 IV-1〉

연도별 교역 추이



### 나. 교역수지

통관기준으로 볼때 교역수지는 현재까지의 남북교역의 특성상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바, '89년 18,586천\$, '90년 11,091천\$, '91년 100,175천\$로 총 129,852천\$의 적자를 기록했다.

〈표 IV-7〉

연도별 교역수지

(단위 : 천\$)

구 분	반입통관액	반출통관액	수 지
'89	18,655	69	△ 18,586
'90	12,278	1,187	△ 11,091
'91	105,722	5,547	△ 100,175
계	136,655	6,803	△ 129,852

### 다. 교역 승인기관

'88년 이후 '91년까지의 반입승인기관별 승인액은 제한승인이 62,510천\$ (29.8%), 자동승인이 147,112천\$ (70.2%)로 자동승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반출승인기관별 승인액은 제한승인이 15,771천\$ (50.9%), 자동승인이 15,205천\$ (49.1%)로 제한승인의 비율이 다소 높은편이었다.

〈표 IV-8〉

반입승인기관별 승인현황

[단위 : 천 \$, ( )안은 총액대비]

구분	제한승인(통일원)		자동승인(은 행)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8	1	233 (22.5)	3	804 (77.5)	4	1,037 (100)
'89	6	3,235 (14.5)	51	19,000 (85.5)	57	22,235 (100)
'90	20	7,694 (37.8)	55	12,660 (62.2)	75	20,254 (100)
'91	112	51,348 (30.9)	216	114,648 (69.1)	328	165,996 (100)
계	139	62,510 (29.8)	325	147,112 (70.2)	464	209,622 (100)

〈표 IV-9〉

반출승인기관별 승인현황

[단위 : 천 \$, ( )안은 총액대비]

구분	제한승인(통일원)		자동승인(은 행)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9			1	69	1	69
'90			4	4,731	4	4,731
'91	7	15,771 (60.2)	33	10,405 (39.8)	40	26,176 (100)
계	7	15,771 (50.9)	38	15,205 (49.1)	45	30,976 (100)

라. 교역품목

(1) 승인기준

교역규모의 급신장에 따라 교역품목도 '88년 4개 품목, '89년 20개 품목, '90년 30개 품목, '91년 14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표 IV-10〉

반출입 승인품목수

(단위 : 개)

구 분	반 입	반 출	계
'88	4		4
'89	19	1	20
'90	26	4	30
'91	92	48	140

'88년 10월 이후 '91년까지의 반출입 승인 품목의 구성을 보면 반입은 철강·금속이 54.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광산물 14.3%, 수산물 13.7%, 농산물 11.9%로 1차산품 및 중간원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출은 화학제품이 4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섬유류 31.4%, 기계류 7.1%등으로 화학 및 섬유제품이 주로 반출승인되었다.

〈표 IV-11〉

연도별 반입승인 품목구조

[단위 : 천\$, ( )안은 총액대비]

구 분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 금속	석유류	화 제	학 품	기 타	계
'88		233 (22.5)		660 (63.6)				144 (13.9)	1,037 (100)
'89	510 (2.3)	357 (1.6)	3,596 (16.2)	15,945 (71.7)	1,479 (6.7)			348 (1.6)	22,235 (100)
'90	6,843 (33.6)	2,080 (10.2)	3,257 (16.0)	6,625 (32.6)	249 (1.2)	89 (0.4)		1,211 (6.0)	20,354 (100)
'91	17,505 (10.5)	25,821 (15.6)	23,152 (13.9)	91,720 (55.3)	2,342 (1.4)	3,141 (1.9)		2,315 (1.4)	165,996 (100)
계	24,858 (11.9)	28,491 (13.7)	30,005 (14.3)	114,950 (54.8)	4,070 (1.9)	3,230 (1.5)		4,018 (1.9)	209,622 (100)

〈표 IV-12〉

연도별 반출승인 품목구조

[단위 : 천\$, ( )안은 총액대비]

구 분	농산물	석유류	전기·전자 제 품	기계류	화 제	학 품	기 타	계
'89		69						69
'90		2,450 (51.8)		2,188 (46.2)	83 (1.8)		10 (0.2)	4,731 (100)
'91	1,750 (6.6)	7,196 (27.5)	1,560 (6.0)		13,530 (51.7)		2,140 (8.2)	26,176 (100)
계	1,750 (5.6)	9,715 (31.4)	1,560 (5.0)	2,188 (7.1)	13,613 (44.0)		2,150 (6.9)	30,976 (100)



〈표 IV-13〉

연도별 주요 반입승인 품목

(단위 : 천 \$)

'89			'90			'91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아 연 괴	3,783t	6,562	감 자	12,500t	4,021	아 연 괴	46,154t	49,824
열연코일	18,900t	5,433	시 멘 트	64,986t	3,257	금 괴	1,525kg	17,649
무 연 탄	60,000t	2,940	아 연 괴	1,824t	2,793	빌 레 트	51,836t	13,518
전 기 동	619t	1,890	냉동명태	6,500t	1,790	시 멘 트	234,200t	12,223
생 사	35t	1,479	열연코일	5,000t	1,585	무 연 탄	269,482t	10,779
빌 레 트	4,000t	1,131	봉 강	4,000t	1,275	냉동명태	18,017t	7,570
기 타		2,800	복 령	290t	1,252	냉동조기	1,200t	6,380
			기 타		4,381	한 약 재	1,482t	5,915
						열연코일	18,300t	5,603
						냉동홍어	2,315t	4,720
						호 도	1,430t	2,507
						냉동오징어	1,870t	2,435
						건오징어	303t	2,435
						땅 콩	2,300t	2,205
						V A M	2,200t	2,011
						생 사	54t	1,988
						건 고 추	1,000t	1,930
						냉동송이	254t	1,722
						감 자	7,000t	1,658
						연 괴	2,765t	1,489
						은 괴	8,899kg	1,236
						기 타		10,199
계		22,235	계		20,354	계		165,996

※ 작성기준 : 연도별 1백만 \$ 이상 품목

<표 IV-14>

연도별 주요 반출승인 품목

(단위: 천\$)

'89			'90			'91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잠바	5천벌	69	담배필터	3천만개	83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5,200 t	6,396
			설 탕	17 t	10	나일론직물	7,040천㎡	5,963
			양말편직기	150대	2,188	백 설 탕	5,433 t	2,068
			데 트 른 솜	2,000 t	2,450	쌀	5,000 t	1,750
						플 라 스 틱	1,105 t	1,426
						가 소 재		
						칼 라 TV	6,000대	1,340
						비 널 박 막	1,350만㎡	1,283
						직 물 류	56만m	1,180
						폴 리 에 틸 렌	759 t	1,033
						필		
						LDPE(농업	850 t	926
						용비닐)		
						고유황디젤유	30,000B/L	845
						세 탁 비 누	2,000 t	760
						담 배 필 터	1억개	316
						냉 장 고	500대	220
						PS 수 지	166 t	138
						담 배 종 이	40,176 t	80
						종 이	83 t	62
						고 무 가 황	20 t	56
						촉 진 제		
						기 타		334
계		69	계		4,731	계		26,176

(2) 통관기준

승인기준 교역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기준 교역품목도 '89년 25개 품목, '90년 24개 품목, '91년 6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표 IV-15〉 반출입 통관품목수

(단위 : 개)

구 분	반 입	반 출	계
89	24	1	25
'90	21	3	24
'91	49	18	67

통관실적이 없는 '88년을 제외한 '89년 이후 '91년 12월말 현재까지의 반출입 통관품목의 구성을 보면 반입은 철강·금속이 77.3%로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7.6%, 광산물 6.5%, 수산물 2.6%로 1차산품과 중간원자재가 대부분이다.

반출은 '91년들어 급격히 늘어난 화학제품이 52.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쌀 23.6%, 전기·전자제품 6.6% 등으로 반출품목은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차산품이었다.

〈표 IV-16〉

연도별 반입통관 품목구조

[단위 : 천\$, ( )안은 총액 대비]

구 분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 강· 금 속	섬유류	화 제 학 품	기 타	계
'89	414 (2.2)	174 (0.9)	1,094 (5.9)	15,073 (80.8)	1,311 (7.0)		589 (3.2)	18,655 (100)
'90	4,931 (40.1)	392 (3.2)	1,599 (13.0)	4,529 (36.9)	204 (1.7)		623 (5.1)	12,278 (100)
'91	5,054 (4.8)	3,052 (2.9)	6,173 (5.8)	86,044 (81.4)	1,588 (1.5)	1,672 (1.6)	2,139 (2.0)	105,722 (100)
계	10,399 (7.6)	3,618 (2.6)	8,866 (6.5)	105,646 (77.3)	3,103 (2.3)	1,672 (1.2)	3,351 (2.5)	136,655 (100)

※ CIF가격 기준임.

〈표 IV-17〉

연도별 반출통관 품목 구조

[단위 : 천\$, ( )안은 총액대비]

구 분	농산물	섬유류	전기·전자 제 품	기계류	화 제 학 품	기 타	계
'89		69					69
'90				1,094 (92.2)	83 (7.0)	10 (0.8)	1,187 (100)
'91	1,607 (29.0)	18 (0.3)	447 (8.1)		3,475 (62.6)		5,547 (100)
계	1,607 (23.6)	87 (1.3)	447 (6.6)	1,094 (16.1)	3,558 (52.3)	10 (0.1)	6,803 (100)

※ FOB가격 기준임.

〈표 IV-18〉

연도별 주요 반입통관 품목

(단위 : 천\$)

'89		'90		'91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아 연 피	5,701	감 자	4,195	아 연 피	47,047
열 연 코 일	5,700	아 연 피	3,026	금 피	17,537
전 기 동	2,447	시 멘 트	1,541	열 연 코 일	9,136
생 사	1,311	기 타	3,516	빌 레 트	7,608
무 연 탄	1,050			시 멘 트	3,394
기 타	2,446			무 연 탄	2,779
				한 약 재	2,593
				냉 동 명 태	1,718
				생 사	1,588
				연 피	1,466
				은 피	1,204
				기 타	9,652
계	18,655	계	12,278	계	105,722

※ 작성기준 : 연도별 1백만\$ 이상 품목

〈표 IV - 19〉

연도별 주요 반출통관 품목

(단위 : 천 \$)

'89		'90		'91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잠 바	89	양 말 편 직 기	1,094	쌀	1,607
		담 배 필 터	83	고 유 황 디 젤 유	1,392
		설 탕	10	플라 스틱 가 소 제	1,137
				칼 라 T V	427
				폴 리 에 틸 렌 필 립	250
				L D P E	216
				P S 수 지	161
				H D P E	146
				고 무 가 황 축 진 제	56
				아 크 릴 수 지	44
				담 배 종 이	40
				냉 장 고	20
				폴 리 에 스티 직 물	18
		폴 리 프 로 필 렌 수 지	10		
		기 타	23		
계	69	계	1,187	계	5,547

※ 작성기준 : 연도별 1만 \$ 이상 품목

(3) 승인·통관비교

반출입 승인과 통관실적을 비교해보면 우선 반입통관율이 65%, 반출통관율은 22%로 반입이 반출보다 통관실적이 훨씬 높다.

'88년 10월이후 '91년까지의 품목구조별 통관율을 보면 반입은 철강·금속이 91.9%로 대부분 통관되고 있으며 섬유류와 기타 품목이 75%를 웃도는 통관율을 보인데 반하여, 나머지 품목들은 대체로 절반이하밖에 통관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북한은 일부 철강·금속, 생사 등을 제외하고는 물품 공급능력이 극히 제한적이고, 외화획득을 위해 반출에는 적극적이지만 남한의 상품을 받아들이는 데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V-20〉 연도별 반입 승인·통관 대비

[단위 : 천 \$, 통관/승인, ( )은 비율]

구 분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 강· 금 속	섬유류	화 학 제 품	기 타	계
'88		/233		/660			/144	/1,037
'89	414/ 510 (81.2)	174/ 357 (48.7)	1,094/ 3,596 (30.4)	15,073/ 15,945 (94.5)	1,311/ 1,479 (88.6)		589/ 348 (169.3)	18,655/ 22,235 (83.9)
'90	4,931/ 6,843 (72.1)	392/ 2,080 (18.8)	1,599/ 3,257 (49.1)	4,529/ 6,625 (68.4)	204/ 249 (81.9)	/ 89	623/ 1,211 (51.4)	12,278/ 20,354 (60.3)
'91	5,054/ 17,505 (28.9)	3,052/ 25,821 (11.8)	6,173/ 23,152 (26.7)	86,044/ 91,720 (93.8)	1,588/ 2,342 (67.8)	1,672/ 3,141 (53.2)	2,139/ 2,315 (92.4)	105,722/ 165,996 (63.7)
계	10,399/ 24,858 (41.8)	3,618/ 28,491 (12.7)	8,866/ 30,005 (29.5)	105,646/ 114,950 (91.9)	3,103/ 4,070 (76.2)	1,672/ 3,230 (51.8)	3,351/ 4,018 (83.4)	136,655/ 209,622 (65.2)

〈표 IV-21〉

연도별 반출 승인·통관 대비

[단위 : 천 \$, 통관/승인, ( )은 비율]

구 분	광산물	섬유류	전기·전자 제 품	기계류	화 학 제 품	기 타	계
'89		69/69 (100)					69/69 (100)
'90		/ 2,450		1,094/ 2,188 (50)	83/ 83 (100)	10/ 10 (100)	1,187/ 4,731 (25.1)
'91	1,607/ 1,750 (91.8)	18/ 7,196 (0.3)	447/ 1,560 (28.7)		3,475/ 13,530 (25.7)	/ 2,140	5,547/ 26,176 (21.2)
계	1,607/ 1,750 (91.8)	87/ 9,715 (0.9)	447/ 1,560 (28.7)	1,094/ 2,188 (50)	3,558/ 13,613 (26.1)	10/ 2,150 (0.5)	6,803/ 30,976 (22.0)

마. 교역업체

'88년 10월 이후 남북교역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90년부터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91년에는 중소기업만 103개 업체로 급격히 늘어났다.

대기업의 반출입 승인액 비율은 '89년 90.9%, '90년 59.0%, '91년 54.3%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반출입 승인액 비율은 '89년 9.0%, '90년 28.2%, '91년 43.8%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IV-22>

기업규모별 반출입승인 현황

[금액 : 천 \$, ( )안은 총액대비]

구분	대 기 업		중 소 기 업		기 타	
	업 체 수	금 액	업 체 수	금 액	업 체 수	금 액
'88	4	1,037				
'89	9	20,262 (90.9)	11	2,012 (9.0)	1	30 (0.1)
'90	11	14,797 (59.0)	25	7,080 (28.2)	1	3,208 (12.8)
'91	21	104,304 (54.3)	103	84,256 (43.8)	4	3,612 (1.9)

<표 IV-23>

주요 기업별 반입승인 현황

(단위 : 천 \$)

구 분	'88		'89		'90		'91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력 키 금 성 상 사			6	4,575	6	1,965	34	26,359	46	32,899
삼 성 물 산	1	232	6	2,585	4	2,254	31	17,052	42	22,123
서 린 금 속							9	20,360	9	20,360
효 성 물 산	1	660	4	2,273	1	512	13	6,977	19	10,422
현 대 총 합 상 사	1	39	6	1,016	9	1,518	1	4,926	21	7,499
선 경			5	3,852	3	1,107	5	2,365	13	7,324
효 원 물 산							10	6,550	10	6,550
쌍 용			9	4,313	1	232	2	589	12	5,404
글 든 벨 상 사					2	1,625	3	3,601	5	5,226
대 창 공 업							10	1,638	10	1,638
고 려 무 역					2	185	8	1,256	10	1,441
코 오 통			3	161	5	97	3	104	11	362

※ 작성기준 : 1) 10건이상 업체  
2) 5건이상 업체중 5백만 \$ 이상인 업체

〈표 IV-24〉

주요 기업별 반출승인 현황

(단위 : 천\$)

구 분	'89		'90		'91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럭키금성상사	1	2,450			25	7,322	26	9,722
한중경제교역					2	8,853	2	8,853
삼 성 물 산					2	5,175	2	5,175
코 오 룡			1	2,188			1	2,188
천 지 무 역					1	1,750	1	1,750

※ 작성기준 : 1백만\$ 이상 업체

바. 교역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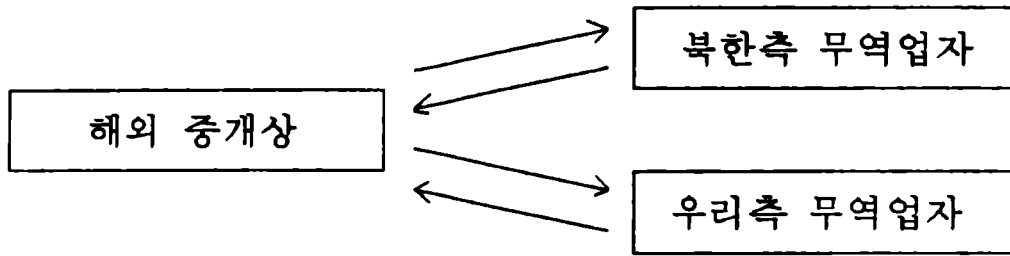
초창기 남북교역은 해외 중개상을 사이에 둔 순수한 간접교역형태였지만 차츰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서류상회사(Paper Company)를 통한 간접교역도 행해지고 있다.

'91년 9월 남북한 UN가입 이후에는 북한의 합영회사와 직교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실제로 3건의 직교역이 성사되어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역은 간접교역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남북한의 업체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보지 못함에 따라 직교역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이후에는 직교역을 위한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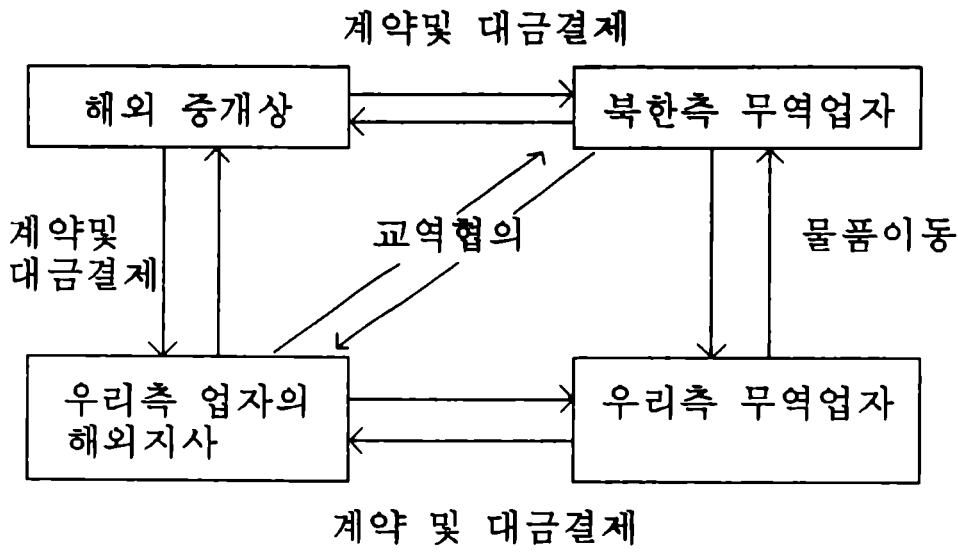
물품운송은 선박확보가 어렵고 북한항에서의 선적기일 지연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1회 거래량이 1선복이상인 경우에는 제3국적선을 이용한 직수송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림 IV-2〉 초창기 교역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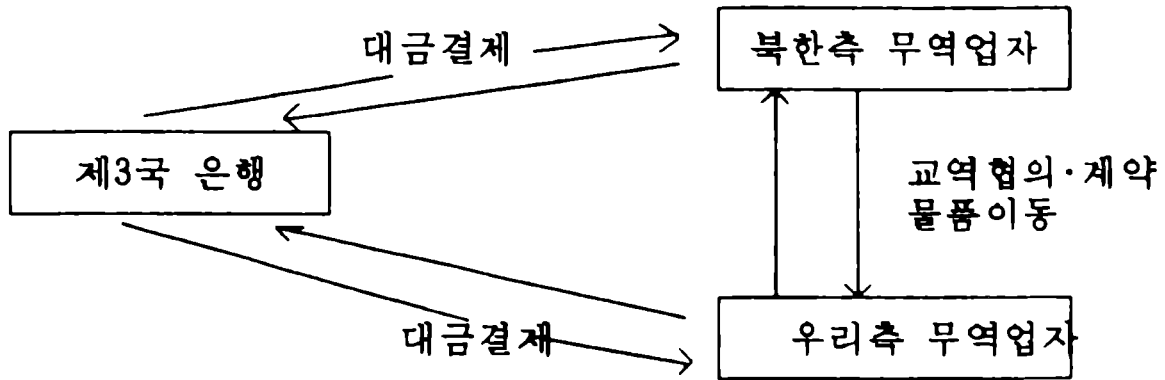


※ 계약, 물품이동, 대금지불 경로 동일

〈그림 IV-3〉 '91년 상반기 이후 나타난 교역방식



〈그림 IV-4〉 '91년 하반기 이후 나타난 직교역 방식



※ 대금결제가 아닌 구상교역인 경우에는 직접 상계됨.

#### 사. 교역중개지

'88년 10월 이후 '91년까지 반출·입 모두 홍콩이 남북교역 중개의 핵심역할을 하였던 바, 이는 홍콩이 무관세지역이며, 우리와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행해지기전 활약했던 홍콩의 중개상들이 이제는 남북교역의 중개를 많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상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홍콩외에도 교역 초기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중요 중개지 역할을 하였으며 싱가포르는 그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91년 들어 중국이 주요 중개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개지별 주요 취급품목은 홍콩이 전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91년 들어 철강·금속, 생사의 중개가 활발해졌고 싱가폴은 철강·금속, 중국은 농수산물 및 광산물을 주로 취급하였다.

〈표 IV-25〉 반입 중개지

년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	북한*	미국	기타	계
'88	3	1									4
'89	25	15	14		3						57
'90	63	3	7		1					1	75
'91	22	59	9	26		2	2	3	1	6	328
계	311	78	30	26	4	2	2	3	1	7	464

※ 1) 작성기준 : 반입승인서상 최종 송화인

2) \*는 직교역

〈표 IV-26〉 반출 중개지

년	홍콩	일본	북한*	계
'89		1		1
'90	3	1		4
'91	32	6	2	40
계	35	8	2	45

※ 1) 작성기준 : 반출승인서상 최종 송화인

2) \*는 직교역

## 아. 평가 및 전망

'88년 10월 정부의 대북경제개방조치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91년 들어 교역규모, 품목, 참여업체, 교역형태등 여러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91년 교역규모는 약 2억불에 달하여 북한의 4대 교역상대가 되었다.

반출입 품목은 140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반입은 1차산품과 중간원자재, 반출은 화학 및 섬유제품이 대부분이었고, 대기업외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하여 대북교역의 저변이 확대되었으며, 교역형태도 작년 하반기 이후 직교역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91년말 현재 남북교역은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바, 이처럼 교역분위기가 급속히 성숙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우리 업계의 능동적인 대북교역자세와 북한의 경제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즉 정부는 남북경제인접촉의 장려와 제한승인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반출입 허용으로 우리 업계의 대북교역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업계 역시 관세 비과세, 미래의 시장개척 등 경제적 동기 이외에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사명감으로 북한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렸다.

북한으로서도 자체 무역액의 절반을 차지하던 대소무역이 격감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어 우리와의 교역필요성이 증대하였는바, 이는 '91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교역상담에 응한 데서도 알수 있다.

그러나 간접교역 및 북한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교역상의 애로점도 많았다.

즉 북한은 생산성 저하로 인해 계약물품의 적시공급이 어렵고, 외화부족으로 인해 남한상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으며, 북한의 상사와 취급품목, 산업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획득이 어려워 우리업체의 교역에 따른 위험부담이 컸으며, 교역규모 과소에 따른 선박확보 곤란, 북한의 교역관행 후진성, 간접교역으로 인한 고율의 중개수수료 부담도 교역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앞으로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 남북교역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이들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보다 활발한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V. 북한의 무역상사 및 취급품목

### 1. 무역상사 및 취급품목

#### 1. 조선 건재 무역회사

Korea Building Materials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GONJAE" Pyongyang

Telex : 5467 GJ·KP

Tel : 33460, 32740, 33990

① 샹데리아(chandelier)

② 위생기(Sanitary ware)

종류 : 세면대, 수세식변기(Water closet), 싱크, 욕조, 물탱크,  
earthenware pipe.

③ 4-jaw chucks(물림쇠)

④ Seam welder(이음매 : 접합선 용접봉)

⑤ 고성능 착암기 : "D-23"

⑥ 금속용구(부속품 등)

○ 수도꼭지 : 세면기용, 화장실용, 욕탕용, 싱크대용, 샤워용으로 등  
합금 또는 동, 니켈, 크롬도금처리

○ 수도관밸브, 자물쇠, 문손잡이, 빗장, 외투걸이 등



⑦ 석판암(Slate)

이것은 변성암의 일종인 phyllite로부터 만들어진다. phyllite는 황해 북도 연탄군, 평산군, 평양시 강동군과 기타 여러지역에서 풍부하게 산출되고 있다.

수출용 석판암의 색깔은 밝은 회색이며,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워서 기와(tile)로 뿐만 아니라, 건축용으로 공원과 정원용 바닥타일로 교실흑판용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⑧ 유리제품 : 컵류, 식기류, 꽃병, 동물형상

⑨ 대리석 : 흰색, 회색, 푸른색, 검은색, 장미빛 핑크색, 옅은 핑크색

⑩ 벽내장용 타일(interior wall ceramic tiles)

⑪ 시멘트

⑫ 시멘트 공장용 설비·부속품 수입

## 2. 조선 공작기계 무역회사

Korea Machine Tools Trading Corp.



소재 : 평양 동대원구역

Cable add. : "KONGZAKGIGYE" Pyongyang

Telex : 5975 MT KP

Tel : 33452

이 회사는 공작기계와 도구류, 베어링을 수출하고, 공작기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특수공작기계와 몇몇 재료 및 원소(elements)를 수입한다.

외국회사와 합작도 한다.

공작기계는 이 회사의 가장 큰 수출상품이다.

평양, 함흥, 청진 기타 등지에서 회천 공작기계 연합기업소와 4월3일 공장, 기타 근대적인 공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CNC와 특수공작기계를 포함한 고성능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선반, drilling machines, boring machines, milling machines, grinding machines를 수출하고 있다.

공구류도 이 회사의 주요 수출품목중의 하나이다. 6월13일공장을 포함하여 많은 공구류공장들이 있다. 운산(Unsan)표 송곳=천공기(drill), milling cutters, 절단기, sliding callipers, 測微計(micrometers), 計器, 집게(뺨지)=pliers, 드라이버, 못뽑기(pincers), 기타 손공구를 수출한다. 대부분의 절단기(cutters)는 국제무역박람회에서 금상을 받은 제품이라 한다.

또 이회사는 목공연장, 마무리도구, 측정기를 취급하고 있다. 오래전 부터 베어링을 수출해왔는데, 9월18일공장과 다른 공장이 수출베어링상품의 생산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

소형베어링뿐만 아니라 차량용의 차축베어링과 같은 대형베어링도 생산하고 있다.

① C.N.C선반 “구성-104”(4월3일공장)

밀링 머신 F1-250(회천 공작기계 공장)

② 드라이버(Screwdri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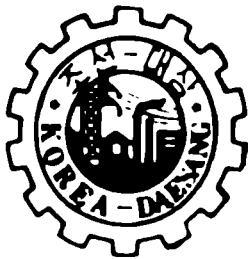
○ 권총형 드라이버(7 blades)

- 가정용 드라이버(6가지 종류)
- 정밀 드라이버(6가지 종류)
- ③ 정밀 고속 선반 “Sonl-120”
- ④ 범용선반(New universal lathe) “KS 430×1000”
- ⑤ 고속정밀 선반(High-speed precision lathe)  
“S10-150” 청진 5호
- ⑥ 수치제어공작기계(Machining center)  
“중심-800”
- ⑦ 선반 “회천 5호”(천리마 회천 공작기계공장)
- ⑧ Vertical drilling machine “B1-32KA”
- ⑨ 베어링(ball bearings, roller bearings) : 모델 “42726”(Comcal roller bearings)
- ⑩ 電氣技士용 연장세트(tool set)  
내용물은 드라이버, 송곳, **뿔**찌(Plier), 망치, 핀센트(족집게), 긁는 칼(Scraper knife), 낚땀인두, Combination plier 등이다
- ⑪ 범용 고속선반(Universal high-speed center lathe) “청진-5”  
청진공작기계공장産
- ⑫ 剪枝가위(Pruning shears)
- ⑬ 목수용 장비세트 : 톱, 대패, 끌, 손도끼, 장도리, 드라이버, 뿔찌
- ⑭ 방사성의 드릴링 머신 “B2-40A”
- ⑮ Vertical milling machine “F2-250”
- ⑯ 다측면 선반(Multi-profile lathe) “회천 425” : 다각형 제품 가공용

- ⑰ 범용중심선반 “구성-3”-구성공작기계
- ⑱ 4-M Vertical turning & boring mill
- ⑲ 휴대용 수동식 천공기 : “B9-8”
- ⑳ 운산 세공 집게 (flat nose plier)
- ㉑ Universal milling machine “F1-300”
- ㉒ Bench drilling machine “B9-12A”
- ㉓ 절단기구 (드릴용 송곳등)
- ㉔ Universal gear hobbing machine “BA10-1250×10”

### 3. 조선 기계설비 수출입회사

Korea Machinery & Equipment Export and Import Corp.



소재 : 평양 동대원구역

Cable add. : “DAESANG” Pyongyang

Telex : 5936 DS KP

Tel : 33449

「4월3일공장」은 최신 자동공작기계와 거대한 규모의 N.C.공작기계를 생산소에 설치함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10월5일자동화공장과 기타 공장들이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요소와 수많은 통제기구를 생산하여 이 상사들 통해 수출된다.

주요 수출품목은 공작기계, 공구, 전기설비, 전선, 애자, 농기계, 수송기계등이며, 수입품으로는 공장기계, 수송기계, 측정계기, 규소강판등이 있다.

- ① 순간용접공 “침종비-63”(Spot Welder)
- ② 착암기 “D-23”
- ③ 변압기(3-phase Oil-immersed distribution transformer)
- ④ 물림쇠(three-jaw chuck) : 선반용
- ⑤ 휴대용 발전기(travelling engine generator) 모델 : “발전 230/1.5-Oil”
- ⑥ Enamel Copper Wire “Koete”
- ⑦ Diagonal flow pump : “70 pital-40”
- ⑧ 트랙터, “웅년”(Ungnyon), “천리마-80” 케터필러형
- ⑨ 50,000KVA 수력발전기 : “동수세(Tongsuse) 11-50m/24”
- ⑩ 모뽏기 “5.20 벼모두기(pyomoddugi)”  
건조한 모판이나 논에 있는 모를 뽑는 기계
- ⑪ 편물기(Manual flat knitting machine)
- ⑫ 수압버팀대(Hydraulic Supports), 평양채탄기계공장산
- ⑬ 초고압 수압기(Superhigh pressure hydraulic press)  
이 프레스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초경도 물질의 합성과 초고합하 여러가지 물질의 작용에 대한 조사, 주조금속을 plate forging, stamp forging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기타 오랫동안 고압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인 공정들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최고 200MPa까지의 초고압을 낼 수 있다고 말한다.
- ⑭ plastic band tighter & clumper(꺽쇠), 판지상자 포장기구
- ⑮ 원심력 응용식 이중 빨펌프
- ⑯ 수평의 수입잭(Hydraulic jack)

⑰ 측정계기(Measuring instruments)

압력계 (pressure gauge) - 평양측정계기공장

⑱ 수평식 汚水펌프(Horizontal sewage pump)

⑲ 교차결합된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Insulated power Cables)

⑳ 전압안정기(Voltage stabilizer), "AS-600"

㉑ 대형톱니바퀴(Large-size gears)

레미콘의 회전로, 대형감속기 제분공장, 분쇄기용 대형 톱니바퀴등

㉒ 소형전동기(Motor) "비단-180", 세탁기용 전동기

㉓ 변압기(Three-phase Oil-immersed transformer)

㉔ 이앙기 : 대동강-6KA

물이 5~20cm가 차 있는 논에 15~40cm 모를 심을 수 있다.

4마력 휘발유 엔진장착, 3인승

㉕ Drum coal cutter : "WONTAN-20"

㉖ 트랙터용 원판형 씨레

㉗ 정밀수압식 다연장 선반 "S23-220"

㉘ 벼수확기 "모란봉호"(콤바인)

㉙ 원심력용용식펌프(Centrifugal pump), "50 Matwonsim-16"

㉚ Universal center lathe, "용성-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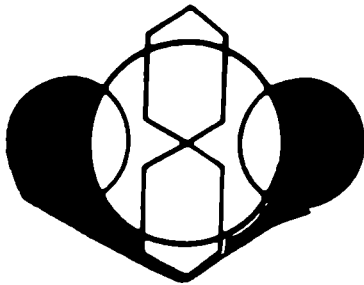
㉛ Shackle Insulators

㉜ Electric mechanical brushes

㉝ Special electrode

#### 4. 조선 연합 무역회사

Korea Ryonhap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RYONHAP" Pyongyang

Telex : 36009 RH KP

Tel : 36874, 46784

이 회사는 수산물, 농산물, 철강재, 비철금속, 운모, 인상흑연등을 수출하고, 대신 각종 원료, 기계·설비, 화학품, 경공업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① 1500X 현미경 "BM-3"

② 공민왕능에 있는 戰士像

Telex : 36009 RH KP

Tel : 46784.36874

갑옷과 투구를 쓰고 칼을 잡고 서 있는 상으로 고려말기 조형미술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③ 호형용접전극(Arc Welding electrodes) "남포-5"

④ 부영이표 쌍망원경

⑤ 방적돌기(Spinnerets), 재료는 Ta임

⑥ 스테인레스강 밸브, 재료 : Fe-Mn-Al-Si-Cu system

⑦ 자동 과전압 차단기(Automatic overvoltage breakers)

"CHON-200", "3298"

⑧ 바지주름기(Trousers creaser), 모델 : 와우도(WAUDO)표

⑨ 「봉화」표 손마이크(transistor megaphone)

⑩ 사냥총 “CAL-2“

⑪ 고성능 발동기(Actuating motors)

type : ACM-3436

ACM-3749

ACM 05-32

ACM-4849

⑫ 진료 및 치료기구(Diagnostic & therapeutic apparatus)

침술을 사용함으로써 국부마취로 수술한다.

⑬ 와우도(WAUDO)표 전기선풍기

⑭ Piezoelectric Ceramic membrane material(압전기 효과의 도기 막물질)

'90. 3. 31부터 4.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회 국제 발명품, 신기술 전시회에서 이 물질은 금메달을 수상하였다고 하는데, 주요물질은 고도의 결합성질, 내적 유도성질을 가지고 있는 PZT이다.

최근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전자 컴퓨터를 포함한 현대적인 전자기구의 감지기(Sensor)로서, 전자장난감, 확성기 quartz, 수화기의 전자적 요소로서 PCMM을 생산, 수출하고 있다.

⑮ 어린이 피아노 : “백두산”

⑯ 자동차놀이(Moving toy trucks)

⑰ 모터(Motor)

⑱ 정류기(Rectifier)



## 5. 조선 흑색금속 수출입상사

Korea Ferrous Metals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HUKSAEK" Pyongyang

Telex : 36021 KIGYE KP

Tel : 36274, 34567

- ① 냉연강판(Cold-rolled steel plate)
- ② 열연강(Hot-rolled steel sheet)
- ③ Structural alloy steel
- ④ Drawn Pipe
- ⑤ Seamless강관

## 6. 조선 금속 무역회사

Korea Metals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KUMSOK" Pyongyang

Telex : 5509 KS KP

Tel : 42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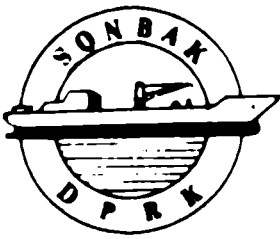
- ① High-speed tool steel "고속 9"; 절단기와 베어링의 원료로 쓰인다.
- ② 크롬강(Chromium steel)

③ Carbon tool steel

④ 강관

## 7. 조선 선박 무역회사

Korea Sonbak Trading Corp.



소재 : 평양 대동강구역

Cable add. : "SONBAK" Pyongyang

Telex : 5904 SB KP

Tel : 22517

① 트롤어선

○ 147DWT급

○ 450DWT급

○ 3,750DWT급

② 냉동선

○ 2,750DWT급

○ 5,000DWT급

③ 화물선

○ 10,000DWT급

○ 14,000DWT급

④ 여객선

○ 7,000DWT급

- ⑤ 특수선
  - 315마력 예인선
  - 250DWT급 기중기선
  - 상자형 계선부교
- ⑥ 선박용품, 부속품

#### 8. 조선 용악산 기계설비 수출회사

Korea Lyongaksan Machinery & Equipment Export Corp.

소 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LYONGAKSAN SUCHUL" Pyongyang

Telex : 36053 LS KP, 5943 NS KP

Tel : 44091, 45529

- ① 질산은
- ② 황산마그네슘
- ③ 탄산바리움
- ④ 탄산칼슘
- ⑤ 산화철
- ⑥ 고순도 표백분
- ⑦ 폭 죽
- ⑧ 불꽃놀이용 화약
- ⑨ 신호탄

- ⑩ 수치제어 고속선반
- ⑪ 고속정밀 선반
- ⑫ NC 고속방전 가공기
- ⑬ 연마숫돌
- ⑭ 연마기
- ⑮ 천공기
- ⑯ 플라이어
- ⑰ 작업등
- ⑱ 전 선
- ⑲ 저항기
- ⑳ 반도체부품
- ㉑ 마그네슘
- ㉒ 증금속
- ㉓ 체 인
  - 자전거용, 자동차용
- ㉔ 전구장식구슬선
- ㉕ 인공수정

## 9. 조선 경공업제품 수출입회사

Korea Light Industry Products Export & Import Corp.



소재 : 평양 동대원구역

Cable add. : "KYONGGONGOP" Pyongyang

Telex : 5353 KGE KP

Tel : 37661

이 상사는 섬유류제품, 생사, 누에고치, 연사(撚糸), 부잠사, 야잠사, 식료품, 담배, 산나물, 일용품, 금속, 비철금속제품, 馬毛부스러기를 수출하고, 경공업기계 및 부속품, 식용유, 염료, 사탕, 紙, 펄프를 수입한다.

- ① 자기류(식탁세트, 차와 커피세트, 접시, 쟁반, 큰컵)
- ② 수예품(Embroidery)
- ③ 법랑그릇(Enamelware), 손잡이 달린 컵(mugs), 접시, 주발(bolws), 세면기, 대야(basins), 주전자
- ④ 등유곤로(Kerosene Cooking stove)
- ⑤ 인삼크림, 개성 고려인삼치약
- ⑥ 금패개성 고려인삼술  
알콜 : 32%, 40%  
용량 : 600ml
- ⑦ 옥수수껍질(옥피) 가방(Husk bags)
- ⑧ 식탁용 식기류(table ware)

종류 : 포크, 나이프, 차숫가락, 스푼

⑨ 만연필

모델 : “만경대-85”

“만경대-84”

“만경대-78”

⑩ 블로술(Pulrosul liquor = adder liquor)

평양대평공장

이 술은 약초와 독사의 추출물로 만들어졌고, 10년이상 익혔다고 한다.

⑪ 오이통조림

⑫ 치술

⑬ 강계 포도술, 인풍술 브랜드... 천리마 강계포도술 공장

⑭ 평양술-평양용성공장

⑮ 손수건, 수건

⑯ 장미향수(Rose perfume), 장미화장향수(toiler water), 장미물크림 -  
평양 화장품 공장

⑰ 인삼 립스틱

⑱ 축구화

⑲ 흰장미분크림(rose foundation cream)

⑳ 엮음질 세공품(plaited products)... 가방, 방석, 슬리퍼, 모장, 양탄자,  
꽃장식 방석

㉑ 백로술, 브랜드

## 10. 조선 시멘트 수출입회사

Korea Cement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HWAHAK" Pyongyang

Telex : 5358 HK KP

Tel : 37087

이 상사는 시멘트, 원목, 판유리, 타일, 화강암, 슬레이트, 내화벽돌등을 수출하는 한편, 시멘트공장설비 부속품, 크라프트지, 석고, 광산기계 부속품을 수입하고 있다.

시멘트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Portland Cement
- Low-heat cement : 댐건설용
- Sulfate(황산) resisting Cement : 해수에 강함
- Oil Well Cement, "MD-C-85-02"(유정 시멘트)
- White cement
- Coloured Cement

상원 시멘트 연합공장, 순천 시멘트연합소에서 수백만톤씩 생산하며, 여러가지 종류의 특수한 시멘트를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한 시멘트로 「서해 대갑문」, 「태천 발전소」를 지었다고 한다.

## 11. 조선 창광 무역회사

Korea Changkwang Trading Corp.



소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CHANGKWANG" Pyongyang

Telex : 5500 CHK KP

Tel : 42888,45882(42695)

음료제품, 주류, 화장품, 도자기, 유리제품, 의복, 일용품, 가구류, 오리털, 닭털 및 그 가공품, 가발, 석재등을 수출입한다.

### ① 오리털(duck down & feathers)

포장 :綿주머니에 35kg씩

## 12. 조선 만년 보건총회사

Korea Mannyon General Health Corp.



소재 : 평양 대동강구역

Cable add. : "MANNYONBOGON" Pyongyang

Telex : 5929 BN KP

Tel : 31265,31225

### ① 고려원형꿀삼(강장제 : tonics)

### ② 강장제(tonics)



- 종류－불로산삼보약, 경옥고, 록미고, 만삼고, 단너삼차
  - 재료－개성고려인삼, 강계산삼, Radix Astragali
- ③ 안궁우황환
  - ④ 건강음료, 돌외차(toloe tea)  
(gymnostemma, pentaphyllum)  
수세미(gourd)계 식물인 돌외는 사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질병예방과 치료에 쓰인다고 한다.
  - ⑤ 개성고려인삼차
  - ⑥ 인삼오미자 차, 은행나무잎차
  - ⑦ 모생수 로션(탈모증 방지약)
  - ⑧ 고려인삼 부인보약(women's tonic)
  - ⑨ 구기자차
  - ⑩ 홍삼... 개성고려원형홍삼

### 13. 조선 대성 무역상사

Korea Daeso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DAESONG" Pyongyang

Telex : 5473, 5474 DAESONG KP

Tel : 45994

이 회사는 각종 기계 및 설비, 금속·비금속광물, 철·비철금속제품, 금

은세공, 화학제품, 섬유제품, 고려인삼제품, 수산물 가공품, 일용품, 식품, 각종 농수산물류 등을 취급한다.

산하에 중공업제품, 경공업제품, 농산물, 수산물을 취급하는 부문별 상사가 있고 주요 항만 및 철도역에 지사, 출장소를 두고 있다.

### 13-1. 조선 대성 제 1 무역상사

Korea Daesong Jeil Trading Corp.

Cable add. : "DAESONG A" Pyongyang

Telex : 5473, 5474 DAESONG A KP

Tel : 43962

금속, 비철금속광물과 그 가공품, 공작기계를 포함한 중공업상품을 수출한다. 전해질의 아연, 납, 동은 해외에서 수요가 많고, 철물(hardware)도 취급한다.

### 13-2. 조선 대성 제 2 무역상사

Korea Daesong Jei Trading Corp.

Cable add. : "DAESONG B" Pyongyang

Telex : 5473, 5474 DAESONG B KP

Tel : 43963

대성 제 4 무역상사(Daesong S)와 함께 경공업제품을 취급한다. 의류를 취급하며, 여러종류의 자연 및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니트류를 수출한다.

제품의 종류는 100% cashmere, 100% 아마, 100% 면, 100% 모스웨터, 100%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터 스포츠의류, 면혼방, 100% 면바지, T셔츠, 편물의류, 면-tetoron 혼방셔츠, 면셔츠, 체크무늬셔츠, 폴리에스터 잠바, 고급바지, 면수건, 면손수건을 생산한다.

### 13-3. 조선 대성 제 3 무역상사

Korea Daesong Jesam Trading Corp.

Cable add. : "DAESONG C" Pyong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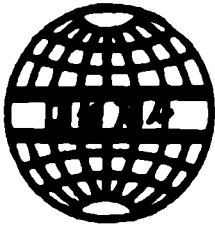
Telex : 5473,5474 DAESONG C KP

Tel : 43964

이 회사는 해산물을 수출하고, 낚시도구 및 재료를 수입한다. 외국의 Fishing Company와 합작으로 협력하거나, 항구에서의 구상무역으로 혹은 다른 거래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13-4. 조선 대성 제 4 무역상사

Korea Daesong Jesa Trading Corp.



Cable add. : "DAESONG S" Pyongyang

Telex : 5473, 5474 DAESONG S KP

Tel : 43084, 43997

모피와 오리털, 그리고 그 가공품을 수출한다. 들개모피, 토끼모피, 옅은 검은색의 여우모피, 밍크모피, 털모자, 모피잠바, 모피코트, 모피장갑, 모피목도리를 수출하며, duck down과 오리깃, 오리털 이불, 베개, 침낭, 오리털 상의(파카)를 수출한다.

버섯, *Lentinus edodes*, 양고추냉이, 야생채소, 약초를 수출하며, 토산물은 공해없는 산에서 채취한다.

① 들개모피(wild dog fur) : 털이 길고 부드럽다

○ 색      갈 : 노란색, 회색, Yellowish grey, 흰색, 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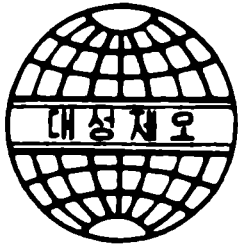
○ 가공제품 : 코트, 모자, 장갑, 신발

② 설치동물모피(*Nutria fur*)

③ 송이버섯(*Armillaria edodes*)

13-5. 조선 대성 제5무역상사

Korea Daesong Jeo Trading Corp.



Cable add. : "DAESONG MS" Pyongyang

Telex : 5473, 5474 DAESONG MS KP

Tel : 44253

이 회사는 보석류, 예술제품을 취급한다. 9K, 14K, 18K 금가락지와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브로우치, 은가락지, 은목걸이, 은브로우치, 은팔찌, 상데리아용 유리구슬, 유리제품, 자수정, 수정, 흑요석, 벽옥과 연옥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기계제작하거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수예품, 깃털작품, 비취(옥)조각품, 조개껍질작품, 목공예품, 한국동양화, 유화, 고려자기, 백자, 청자등을 수출한다.

흑요석, 우유빛 수정, amazonite, 연옥, 마노, 루비, 사파이어, 에머랄드, 오팔, 자수정 기타 다른 보석들이 박혀있는 금, 은제품(목걸이, 귀걸이, 브로우치, 넥타이핀, 팔찌)이 있다. 흑요석으로 만든 찻잔, 커피세트, 술세트, 식기제품, 양념병이 있다. 이중 찻잔세트에는 주전자와 열은 다갈색의 흑요석의 꽃형상으로 만들어진 찻잔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색이 감도는 다갈색의 흑요석의 주전자, 컵등을 포함한 술잔세트(wine set)와 재털이도 있다.

軟玉으로 만든 것은 형상이나 동물, 새, 경치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금붕어, 강아지, 곰, 사슴, 노루등이 그것이다. 또 3층으로 된

은촛대, 석사자가 얹아 있는 귀중금속으로 장식된 용기, 은으로 만든 벽장식품, 자수정 브로우치, 스노우형의 은꽃병도 있는데, 금·은·보석 세공품은 평양 8월7일공장에서 생산된다.

### 13-6. 조선 대성 제6무역상사

Korea Daesong Jeyuk Trading Corp.

Cable add. : "DAESONG K" Pyong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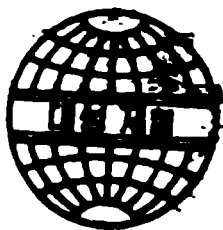
Telex : 5473, 5474 DAESONG K KP

Tel : 45994

이 회사는 폴란드와 특수기자재의 수입을 담당한다.

### 13-7. 조선 대성 제7무역상사

Korea Daesong Jechil Trading Corp.



Cable add. : "DAESONG G" Pyongyang

Telex : 5473, 5474 DAESONG G KP

Tel : 45383

① 홍삼(red Insam), 개성고려인삼과 그 가공제품을 수출한다.

② 개성고려인삼정액

③ 개성고려인삼술

알콜 : 30%

용량 : 300cc, 650cc

- ④ 개성고려인삼크림 : 피부질병을 예방하는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한다.

### 13-8. 조선 대성 제8무역상사

Korea Daesong Jelpal Trading Corp.

Cable add. : "DAESONG M" Pyongyang

### 13-9. 조선 대성 제9무역상사

Korea Daesong Jegu Trading Corp.

Cable add. : "DAESONG T" Pyongyang

Telex : 5474 DAESONG T KP

Tel : 45824

구소련,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리비아, 알제리, 자이레에 지사를 갖고 있으며, 운송회사는 합작陸海운송(water-railway transport)을 조직하여 홍콩, 싱가포르, 인도, 일본 사이의 배의 용선과 할당, 무역품의 운송이 이루어진다.

이 회사는 청진, 김책, 흥남, 원산, 남포, 해주시에 지소를 두고 있고, 상품소유자와 선박소유자가 있는 장소에서 활동하면서 선적, 검사, 계산을 행한다. 화물의 연계수송(combined transport)을 위하여 신의주, 남양, 새별, 두만강역, 국경역에 지소를 두고 있다. 또 이 회사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태국, 서독에 대리인(Agent)을 두고 있다.

#### 14. 조선 경제협력 총회사

Korea General Company for Economic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CHONGHYOPJO" Pyongyang

Telex : 5224 DGS KP, 5973 ZS KP

Tel : 33654, 33656, 37124

해외에서 공공건물, 공장, 주택, 수력발전소, 관개설비, 도로, 항만, 교량, 철도, 공항등의 건설을 행한다.

#### 15. 조선 평천 무역상사

Korea Pyongchon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PYONGCHON" Pyongyang

Telex : 5714 PC KP

Tel : 34993

#### ① 화물차용 차축(axles)

길이 : 2140mm

최대직경 : 150mm

무게 : 360kg



- ② 완전 강철제품의 화물輛(waggons)
- ③ 철도화물차량용 바퀴
- ④ 철로용 볼트와 너트
- ⑤ 레일균열 탐지기

### 16. 조선 유색금속 수출입상사

Korea Nonferrous Metals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YUSAEK" Pyongyang

Telex : 5352 YUSAEK KP

Tel : 37351, 34431

- ① 전기아연(99.96%)
- ② 전기연(99.95%)
- ③ 조연(97%)
- ④ 카드뮴(99.9~99.95%)
- ⑤ 질산은(99.99%)
- ⑥ 전기동(99.95%)
- ⑦ 황동괴
- ⑧ lead wire(99.99%)
- ⑨ 연 판
- ⑩ 연 봉

- ⑪ 연 관
- ⑫ 연축전지(12V, 32-150Ah)
- ⑬ 비철금속 생산재료

**17. 조선 백송 무역회사**  
**Korea Beakso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서성구역  
 Cable add. : "BAEKSONG" Pyongyang  
 Telex : 5354 KP  
 Tel : 52722, 51024

- ① 각종 현악기줄
  - 바이올린, 기타, 첼로, 콘트라베이스
- ② 내산펌프(acid-proof pumps)
- ③ 소규모 발전소용 발전기(brushless generator)

**18. 조선 민예사**  
**Korea Minye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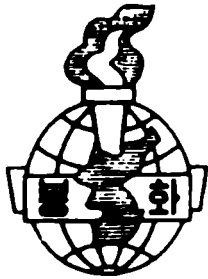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MINYE" Pyongyang  
 Telex : 36028 MN KP  
 Tel : 37201, 33101, 36130

- ① 조선화
- ② 자기 꽃병,고려청자병(Koryo celadon vases)
- ③ 금조개틀 상감한(nacre-inlaid) 공업예술품(민예품)
- ④ 도립질 세공에 의한 새그림이 있는 꽃병(openworked vase)
- ⑤ 자수품
- ⑥ 漆器(lacquer ware)
- ⑦ 유리제품 : 꽃병, 연필꽂이, 원통형 그릇(pots)
- ⑧ 사슴 모습의 목공품(wood carving)
- ⑨ 각종 민속악기
- ⑩ 레코드
- ⑪ 테이프

### 19. 조선 봉화 무역총회사

Korea Pongwha General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PONGHWA" Pyongyang

Telex : 5462, 5610 PONGHWA KP

5356 POREN KP

Tel : 34304

이 회사는 산하에 전문별 무역회사를 두고, 각 분야의 기업활동, 수출입업무를 행한다.

---

또 수십개의 수출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 지사와 대표부도 두고 있다.

Lentinus edodes와 앙고라 토끼털을 포함한 pumilar oil, thuja oil, calamus oil 등의 essential oils 등의 농·토산물이 주요한 수출품목이다.

Essential oils(정유=휘발성 식물유)는 그 천연의 성분이 열분해되지 않은채 남아 있다.

말려서 염장된 Lentinus edodes는 영양가가 높고 풍미가 있으며 몸에 좋은 약의 요소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 회사는 접탁자, 접의자, 접을 수 있는 울타리, 장난감, 바닥깔기용 판자, 양복걸이(hangers), 차양, plaited baskets를 수출한다.

스펀지코트, 원피스, 모자, 바지, 여성블라우스, 남자셔츠, 체육복을 수출한다.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석탄, 요소비료, polyethylene, 면섬유, 알루미늄조각(편), 전자장치, 컴퓨터, 생활용품을 거래해 왔다.

예술작품과 공업예술품도 수출하고 있다. 조선동양화, 만년화, 깃털작품, 목각공예품, 면을 박아 넣은 장식 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초상화는 특별주문에 응할 수 있으며, 원재료와 악세사리를 수입하고 있다. 주요 수출입품목은 기계, 광물, 금속제품, 비료, 화학제품, 의약품, 목재, 합판, 시멘트, 建具, 사탕, 곡물, 수산물, 섬유제품, 일용품, 학용품, 양모 등이다.

이 회사는 one-side trade, 구상무역, improvement trade, re-export trade를 하고, 외국기업과 경제협력 및 기술교환을 권장하고 있다.

#### ① 전자시계 “모란봉”

② 앙고라 토끼털

③ Pumila Oil

이 기름은 위생적인 향료, 살균제, 화장품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된다.

④ Lentinus Edodes

신선한 향기와 독특한 맛이 있는 이 버섯은 높은 식용과 약용가치를 가지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말려서 염장된 것이 수출된다

⑤ 어린이용 뜨개질 옷(knit wear), 100% Acryl

⑥ 솔잎기름(pine-needle oil)

비누, 세제, 소독제, 향료, 화장품,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  
180kg들이 함석통에 포장되어 있다.

⑦ 봉화표 셔츠

## 20. 조선 룡라도 무역총회사

Korea Rungrado General Trading Corp.



소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RUNGRADO" Pyongyang

Telex : 5497 RR KP

36018 RRD KP

5500 CHK KP

Tel : 43990

이 회사는 대동강표 밧데리(전지), 쇠밧줄(wire), 베어링, 주조물

(castings), 자동차 수리·가사·목공용 연장, 차바퀴(wagon wheels), 기성복, 체육복, 내의, 장갑, 식칼, 식탁용 세트(table settings), 부엌세간, 도자기류, 전기등(electric torches), 불펜, 오리털, 오리내장, 오리간, 거위간, 닭털, 향료(향수), 고치, 고사리류, 고비식물(osmund), 복숭아, 배, 달걀, 도토리, 밤, 약초, 해초, 해파리, 말린 대합조개살, top-shell meat, 갯지렁이, 작은뱀장어, 신덕샘물, 토끼 등 모피, 무연탄, 장식, 비취(옥)등을 수출한다.

특히 갯지렁이, 작은 뱀장어, 신덕 샘물, 오리털, 오리간, 누에고치, 의류, 플라스틱 tuberculated walled 파이프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살편 오리에서 추출한 오리간 (개당 250-900 g)은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오리털은 down과 soft feathers의 비율은 7 : 3, 6 : 4, 5 : 5, 4 : 6, 3 : 7, 2 : 8, 1 : 9으로 하여 수출하고 있다. 줄자(쇠도래자 : steel tape), 색연필도 있다.

이 회사는 해외에 5개의 지사와 13개의 대리점(Agency)을 갖고 있다.

① 오리간

② 신덕 샘물

평남 온천군 오석산 기슭에서 1년내내 솟아난다.

Fe, Cu, Mo, Zn, Co, Al, Mg, F, Mn, Cr 등 20가지 이상의 미세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위 현대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③ 범용 목공기계(universal wood-working machine)

모델 : “만목-3”

④ 熱電池(thermocouples), “T-17”

21. 조선 만수 무역회사  
Korea Mansu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MANSU” Pyongyang

Telex : 36027 MANSU KP

Tel : 44682, 43075

① Jisi-HBs

tast kit for detection of HBsAq

② polysaccharide Antigen Injection “sp-s”(동해공장)

③ puerariae 뿌리

이 뿌리에는 전분(녹말), daidzin, daidzein, puerarin과 기타 유용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감기와 열이 나는 질병, 홍역, 발진성의 열병(발진티푸스 등), 타는 듯한 갈증에 좋은 해열제로 쓰여진다고 한다.

④ “와우드”표 체온계

⑤ 수술장갑(operating gloves), 치과의료기구

⑥ 간염예방약 “보간-1”(保肝)

22. 조선 마그네샤 크링크아 수출입상사  
Korea Magnesia Clinker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KRINKA" Pyongyang

Telex : 36019 IB KP

Tel : 33218, 36674

마그네샤크링크아를 수출하는 대신, 내화물관련의 각종기계 및 부속품, 코우코스 등을 수입한다.

① 마그네샤 벽돌

건물 아궁이(爐)로 사용되며, 크기는 다양하다

② 분쇄된 마그네사이트(pulverized magnesite)

③ 마그네샤 내화물질(Magnesia refractory)…마그네샤 벽돌, 크롬-마그네샤벽돌, 마그네샤-크롬벽돌, 마그네샤-알루미나벽돌, 마그네샤크링크아(지구표), 내화벽돌

23. 조선 원양 어업회사  
Korea Wonyang Fishery Company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WONYANG" Pyongyang

Telex : 5504 WY KP

Tel : 33635



① 금강약돌

북한 “홀동”지방에서 산출되며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식품을 가공하는데 또 풍토병을 방지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한방에 관한 古典기록을 보면, 솥으로 열을 가한 뒤 식초에 담근 것인데 이 신비의 돌가루로 만들어진 연고가 등에 난 종기를 치유했다고 한다.

이런 종류의 돌이 Maifansi라 불려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장수돌, 건강돌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이 돌은 주요성분이 potassium feldspar와 plagioclase인 quartz monzonite이다. 이 돌이 담그어진 물은 광수(mineral water)로 알려져 있다.

② 금강약돌로 만들어진 컵 및 프라이팬

24. 조선 광명 무역상사

Korea Kwangmyo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KWANGMYONG”Pyongyang

Telex : 36022 KW KP

Tel : 35520, 32522

이 회사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10개 이상의 지방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통일된 방식으로 이들 지방회사의 교역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이 지방회사들에 의해 생산된 非鐵(nonferrous), 非金屬(nonmetallic) 광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토산물, 수산물, 철물세공품과 기타 다른 상품 즉, 기계류, 공업예술품(industrial arts)를 수출하는 한편, 지방 산업 공장에 소요되는 몇몇 원재료와 주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직물, 식용유, 설탕 등 필수품과 건설자재, 나일론사, 기계류, 수송기계, 체육기재를 수입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한 국경무역, 구상무역(barter trade), 경제협력, 합작투자 와 해외서비스도 맡고 있다. 자체의 수출품 생산센터도 갖고 있다.

아래에 열거한 지방 무역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은 모두 조선광명 무역회사를 통하여 수출된다. 풍부한 수출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 무역회사는 중·소 크기의 많은 비철, 비금속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풍부한 鑛床, 뛰어난 채광조건, 고품질의 원광을 고려할 때 수출품 생산센터의 생산능력은 크다. 지방무역회사는 각자 자체의 도마도, 박하유, 누에고치, 약초, 수산물등의 생산센터를 가지고 있다.

#### ① 화강암 원석 및 가공판석(granite and dressed granite)

붉은색, 검은색, 흰색, 짙은 청색이 있다.

평남 온천, 용강, 개성시, 함남 금야, 함북 나진이 주산지이다.

바닥재(floor), 面板(veneer), 벽(wall), 계단, border용 판석이 있다.

건축용 원석크기는 보통 2m<sup>3</sup>이고, 기념용 화강석의 크기는 60×60×120cm 와 120×120×120cm가 있다.

#### ② 들버섯(agaric)

**24-1. 조선 대동강 무역회사**

**Korea Taedonggang Trading Corp.**

소 재 : 평안남도 평성시

Cable add. : "TAEDONGGANG" Pyongyang

Tel : 728

철물, 錦을 박아 넣은 장식, 깃털작품, 고추, 박하유, 의류, 도자기등을 생산하고, 수산물을 수출한다.

**24-2. 조선 압록강 무역회사**

**Korea Amrokgang Trading Corp.**

소 재 : 평안북도 신의주시

Cable add. : "AMROKGANG" Sinyijoo

기계부속품들, 연장, 남정석, 화강암, 白雲石, 갈대이영차양 (reedblinds), 공업예술품, aralia뿌리, osmund, 염장미나리, 두릅나무싹, 박하유, 박하뇌, 향료등 농토산물과 모시조개등 냉동·건조패류, 인상흑연등 비철금속을 수출하고 있다.

### 24-3. 조선 송도원 무역회사

Korea Songdowon Trading Corp.

소 재 : 강원도 원산시

Cable add. : "SONGDOWON" Wonsan

Telex : 24042 SDW KP

Tel : 4836

아연, 자동차축전지, 드라이버, 편찌, 망치, 밸브, 重晶石(barite), 正長石(orthoclase), 滑石(talc)분말, 도자기, 수산물, 도라지, platycoden 등을 수출한다.

수입하는 것으로는 잡화, 식용유, 자두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의 관광명승지인 금강산과 총석정을 놀러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 24-4. 조선 두만강 무역회사

Korea Tumangang Trading Corp.

소 재 : 함경북도 청진시

Cable add. : "TUMANGANG" Chungjin

Telex : 5922 TPG KP

Tel : 21404, 21448

삼, 곡괭이, 도끼, 가정용 및 재단용 가위, 부엌칼, bench lathes, vices,

platycodon, 고사리(bracken), aralia 새순, 고비(osmund), 미나리류 (parsley)를 취급하는데, 특히 어구, 잡화등을 수입한다.

#### 24-5. 조선 백무 무역회사

Korea Paekmu Trading Corp.

소 재 : 량강도 혜산시

Cable add. : "PAEKMU" Haesan

목재, 면을 박아 넣은 장식품, 깃털작품, 목공예품, abies기름, Rhizoma et Radix Rhei, Radix Ligustici, Fructus shizandrae, Rhizoma Atractylodis, Radix Angelicae dahuricae, 보석단추, 양파를 취급하는데, 산나물, 호프, 낙엽송목재를 수출한다.

#### 24-6. 조선 성천강 무역회사

Korea Songchongang Trading Corp.

소 재 : 함경남도 함흥시

Cable add. : "SONGCHONGANG" Hamheung

Telex : 5927 SONG KP

Tel : 2994, 3070

점토 대리석, 활석분말, 흑연, 수지꽃, 수지벽종이, 박제(stuffings),

세공품, 해초 등 수산물을 수출하고 잡화를 수입한다.

**24-7. 조선 인풍 무역회사**

**Korea Inpung Trading Corp.**

소 재 : 자강도 강계시

Cable add. : "INPUNG" Kanggye

송곳(hand drill), 자동차 수리도구, 쇠톱, 강철 절단기, 망치, 땀찌, 장난감, 烙畫(pyrographs)를 수출한다.

**24-8. 조선 경암 무역회사**

**Korea Kyongam Trading Corp.**

소 재 : 황해북도 사리원시

Cable add. : "KYONGAM" Sariwon

아연정선광, 산화납정선광, 기타 다른 비철원광과 그 가공품, 흑연, 점판암(slate), 박하유, 양파, 도마도, 당근, 과실통조림, 채소, 살무사, 강남콩, 자두, 도라지를 수출한다.

**24-9. 조선 수양산 무역회사**

**Korea Suyangsan Trading Corp.**

소 재 : 황해남도 해주시

Cable add. : "SUYANGSAN" Haeju

세공품, 농산물, 토산물, 미역을 포함한 수산물, 자수품, 감람석 (olivine), milk crystal, 석영(quartz), 자수정(amethyst), 중정석(barite) 을 취급하고 있다. 대체로 대마종자등 농산물과 수산물을 수출하고, 잡 화류를 수입한다.

**24-10. 조선 송악산 무역회사**

**Korea Songaksan Trading Corp.**

소 재 : 개성시

Cable add. : "SONGAKSAN" Kaesong

자수품, 깃털작품, 옥조각품(jade carvings), 목조각품, 밀짚작품, 인삼 뿌리 파이프, 도자기, 중정석, 활석분말, 운모(mica) melaconite, amphibote, 산화티타늄, 수건을 취급한다. 수산물, 인삼술, 인삼꽃과 잎, 홍삼, 도라지, 자두, 향초를 수출하고, 잡화를 수입한다.

24-11. 조선 남산 무역회사

Korea Namsan Trading Corp.

소재 : 남포시

Cable add. : "NAMSAN" Nampo

Telex : 5924 NP NAMSAN KP

납, 아연 및 그 가공제품과 아비산, 화강암, 수산물을 수출하고, 어구, 잡화를 수입한다.

25. 조선 양각 상사

Korea Ryanggak Corp.

소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RYANGGAK" Pyongyang

Telex : 5714 PC KP

Tel : 35494

① 기억장치(Memory devices)

EC-시리즈 전자컴퓨터의 기억용량을 확대시키기 위해 새로이 개발된 것으로 集積수준과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

기억장치는 256×4k bit, 1M bit 등 대규모 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26. 조선 공업기술 회사

Korea Industrial Technology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KONGOBKISUL" Pyongyang

Telex : 5972 TECH KP

Tel : 33773

공업, 농업등을 포함한 각 분야의 선진과학기술의 교류, 선진과학기술서류의 수출입, 각종형태의 기술협력, 과학기술의 공동연구, 개발, 전람회개최, 선진기계설비의 수입 및 시찰단 연수, 묘목, 종자의 교환등을 수행한다.

### ① Pb-Cd system tin-free babbitt metal(배빗합금)

주석이 함유되지 않은 배빗합금으로 기존의 tin-base 배빗합금보다 열등하지 않다. 이 합금은 커다란 충격을 받는 기계에 "BA-83"(주석함유량 83%)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유색금속(비금속)용 땀납(solder)

### ③ curved track roller reducer

### ④ 칠감(titanium denaturation resin paint)

북한의 과학자들이 연구·개발한 이 도료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산화물과 무기물로 만들어진 무기물-유기물의 합성물질로 강한 내열성과 내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용광로, 전기로, 핵원자로와 같은 고온장치에 사용된다.

이 칠감은 특허되어 있으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수상하였고 스위스 제네바의 제17회 국제발명 및 신기술전시회에서 수상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회사는 이 발명에 관한 기술정보를 팔거나 생산완제품을 팔기를 원하며, 이 기술을 기초로 한 합작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7. 조선 남흥 무역회사

Korea Namheu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동대원구역

Cable add. : "NAMHEUNG" Pyongyang

Telex : 5419 NH KP

Tel : 33049

이 회사는 요소등 비료를 포함한 화학제품을 수출하고 대신 화학원료 및 제품과 화학설비 및 부속품을 수입하고 있다.

### ① Vinalon

이것은 polyvinyl alcohol series에 속하는 섬유이다.

공장으로는 2월 8일 비날론 복합기업소가 있으며, 비날론은 북한에서 풍부한 무연탄과 석회석에서 추출한 탄화물(carbide)로 만들어진다.

이 섬유는 綿(cotton)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예로서 석면(abestos)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합성섬유인 것이다. 이 회사는 일반 옷, 오버코트, 작업복을 위한

두터운 섬유, 와이셔츠, 안감, 침대천을 위한 플란빌과 두터운 섬유를 수출할 예정이다.

순수 비날론-면 인조견사(6:4), 비날론-모 인조견사를 짜기도 한다. 자켓과 스웨터, 바지, 양말같은 뜨게질 옷 襪布, 텐트, 방수천, 운동화용 천을 선보일 것이다. 비날론과 견사(silk yarn)로 만들어진 타이어, 벨트, 어망을 수출하고 있다.

② Polyvinyl Alcohol(PVA) 비날론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③ Acetylene black

④ 고강도 Vinalon

석면의 훌륭한 대체물이며, 물리화학적 성질면에서 석면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한다. 이것은 내구성이 높고, 시멘트와 잘 고착되기 때문에 인공 슬레이트의 강화제등 공업적인 이용목적의 원재료로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고강도 Vinalon으로 만들어진 종이는 그 high medicine, 내알카리성, 내열성으로 알칼리-망간 축전지의 분리기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한다.

⑤ High-pressure polyethylene

28. 조선 신발 무역총회사

Korea Sinbal General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동대원구역

Cable add. : "SINBAL" Pyongyang

Telex : 5220 SB KP

Tel : 22322

① 여성용 샌들(injection-moulded)

② 어린이용 샌들

29. 조선 유광 무역회사

Korea Yukwang Trading Cor.

소 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YUKWANG" Pyongyang

Telex : 5352 YUKWANG KP

Tel : 45865, 45036

① 백운암(Dolomite)

이것은 마그네슘(Mg), flux, 내화성물질, 충전재 도자기 원료로 사용된다.

② 滑石분말(talc powder)

③ KM표 전해된 아연

- ④ 비결정의 흑연
- ⑤ 정장석
- ⑥ 중정석
- ⑦ 사우나용 Heating stone
- ⑧ Diatomite
- ⑨ 진주암

### 30. 조선 우표사

Korea Stamp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UPYO" Pyongyang

Telex : 5505 UP KP

5619 UPYO KP

Tel : 36296

우표, 그림엽서를 수출하고, 해외에서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 31. 조선 비단 수출입총회사

Korea Silk Export & Import General Corp.

소 재 : 평양 동대원구역

Cable add. : "PIDAN" Pyongyang

Telex : 5962 PIDAN KP

5627 KSG KP

Tel : 22127, 22288

- ① 약산단
- ② 다색단
- ③ 양 단
- ④ 모본단
- ⑤ 법 단
- ⑥ 구룡단
- ⑦ 공 단
- ⑧ 생 사

### 32. 조선 협동 무역회사

Korea Hyopdo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HYOPDONG" Pyongyang

Telex : 5970 HYOPDONG KP

Tel : 34495, 37368

조선협동무역상사는 1958년 설립된 이래 초기에는 주로 중·소와 국경무역을 했으나, 현재는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널리 교역하고 있다.

이 회사는 주로 소비제품을 취급하며, 생활필수품, 가사용 연장류, 도자기류, 밀짚엮음질 세공(plaited articles), 섬유제품들, 향료(spices), 농산물 및 토산물, 과일과 채소, 냉장고 등 전자제품, 화학비료를 수출하고 있다.

한편 옷감, 의류, 세탁비누, 인쇄종이, 필름, 희석제(thinner), 도료(lacquer), 물감(dyestuff)를 수입한다.

〈수 출〉

① 공 구

- 플라이어, 망치, 스패너, 드라이버, 줄, 각종 바이스, 펀처, 낚퍼, 강판전단기, 전선, 마이크로미터, 測經機, 끌, 픽커, 파이프렌치, 전기드릴, 쇠틱, 整技機

② 일용품·공산품

- 조화, 가위, 손톱깎이, 칼, 오프너, 자물쇠, 시계줄, 알루미늄 그릇, 범랑그릇, 휴대용 저울, 옷솔, 작업용 장갑, 밀짚공예(바구니, 돛자리, 방석, 모자, 슬리퍼), 자기(냄비, 접시, 컵, 화병), 건재(타일, 수도꼭지)

③ 섬 유

- 원피스, 타월, 수예제품

④식품·향료

- 사과, 배, 오얏, 복숭아, 살구, 오이, 토마토, 당근, 양파, 박하유, 박하, Abies油, 푸밀라油, 솔잎油, 창포油, 주니퍼油

⑤ 기 타

- 닭털, 누에고치, 호도, 젤라틴, 아교, 비료, 가죽

⑥ 가전제품(제3국 생산품)

- 카세트, 가스라이터, 녹음기, VTR, TV, 냉장고

〈수 입〉

① 섬 유

- 양복지, 원피스, 오버코트, 마직, 날염면, 편직물
- 스웨터, 자켓, 머플러, 운동복, 목욕타월

② 일용품

- 세탁비누, 가루비누, 손목시계, 인쇄용지, 필름, 신너, 락카, 염료
- ③ 기 타
- 식용유, 면, 비료, 농약

### 33. 조선 수산물 수출입회사

Korea Marine Products Export & Import Co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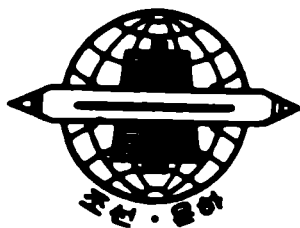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SUSAN" Pyongyang  
 Telex : 37043 SUSAN KP  
 Tel : 43459

각종-활, 냉동, 염장, 건어·수산물을 수출하고, 어망, 漁具자재, 선박의장품, 선박부속품을 수입한다.

- ① 각종 생선 및 가공품
  - 북어, 동태, 염장 청어알, 생선통조림
- ② 해조류
  - 다시마

### 34. 조선 은하 무역상사

Korea Unha General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대동강구역  
 Cable add. : "UNHA" Pyongyang  
 Telex : 5492 UH KP  
 Tel : 34173(37168)  
 FAX : 850-2-814506



〈수 출〉

① 각종의류

○ 기성복, 셔츠, 원피스, 점퍼, 오버코트, 작업복, 타월

〈수 입〉

① 의복재료

○ 縲綿, 綿絲, 면직물

② 섬유기계 및 부품

③ 연료

※ 외국상사와 의류부문 합영·합작생산 수출업무 수행

### 35. 조선 동흥 무역상사

Korea Tongheu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서성구역

Cable add. : "TONGHEUNG" Pyongyang

Telex : 5238 TH KP

Tel : 33478

UAE두바이에 支社를 開設하였다.

산하에 7개 광산기업소, 5개 채석장, 2개 건설회사, 2개 건축설계사무소, 7개 수산회사, 5개 양잠사업소, 12개 경공업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 출〉

① 광물·수산물

○ 비금속광물, 수산물, 수산가공품

② 화공약품, 철물

○ 아비산, 철물, 전선, 플라스틱 일용품

③ 건 설

○ 건축설계, 건설

④ 기 타

○ 편직물, 전기의료기, 전자침

〈수 입〉

① 기계·장비

○ 광산장비, 전자기계, 통신장비, 철도차량, 강판, Drawn Pipe, 쇠뿔  
줄, 선로, 컨베이어 벨트, 타이어

② 화공약품, 화학제품

○ 試藥, 시안화나트륨, 樹脂

③ 기타 원자재

○ 고무, 화장품 기름, 인쇄잉크, 인쇄용지, 縲綿

36. 평양 담배 수출입상사

Pyongyang Tobacco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 룡성구역

Cable add. : "DAMBAE" Pyongyang

Telex : 5342 DB KP

Tel : 52934,52117

① 각종 담배

② 담배잎

### 37. 조선 국제 여행사

Korea International Tourist Bureau

Cable add. : "RYOHAENGSA" Pyongyang

Tel : 34436

#### ① 경흥거리의 서비스 센터(Service facilities)

경흥거리는 국영 서비스기관으로 꼭 차 있는데,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일상 필수품과 원산지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다.

Nutria로 만든 외투, 목도리, 모자뻬지, 들개, 밍크, 토끼, 수달피모피, 수예품, 모피제품, 진주층(금조개)작품들, 만년화(nacre works), 석공예품, 면 장식품(cotton applique), artistic glasses 등이 있다.

② 수려한 산으로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이 있고, 주요 여행휴양지로는 평양, 백두산, 회령, 온성, 금강산, 묘향산, 원산, 남포, 개성등이 있으며 관광지로는 묘향산의 표현사, 원산의 송도원, 금강산의 구룡폭포, 서해변, 공민왕능이 있고 여행계절로는 4월에서 11월까지이다

### 38. 조선 고려 무역상사

Korea Koryo Trading Corp.



소재 : 평양시 평천구역

Cable add. : "KORYOMUYOK" Pyongyang

Telex : 36044 DMC KP

Tel : 45742,45137

FAX : 850-2-814410

이 무역상사는 북한의 중요한 예술작품창작 중심지인 만수대 예술작업소에서 제작된 여러가지 형태의 예술작품을 수출한다.

이 작업소는 북한내에 산재해있는 여러가지 상징적인 조각, 기념건축물 제작에 참여하여 왔다. 회화도 그리는데 특히 조선화를 그리고 있다. 朝鮮朝 그림의 기법을 계승, 개발하여 여러 예술분야에 단순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고 섬세함이 있는 기법을 활용한다.

병풍(Panoramic Oil Paintings)을 포함한 유화도 그린다. 벽화를 그리는 일단의 화가도 있다. 최근 불변색 보석분말 그림(만년화)도 그리기 시작하였다.

현대적인 변형을 가미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생산하며, 예술도기 및 도기상품과 석조상, 붉은 질그릇(terra-cotta)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형상물, 자수품, 공업예술품, 배지를 제작한다.

이 상사는 외국전시장에서 예술작품을 판매하고, 외국손님을 위하여 예술품 판매소를 운영한다. 북한 미술품과 관련하여 '89년도에 조총련주최

북한미술전이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고, '90년도에 미국 L.A에서도 북한 미술품 전시기회가 개최된 바 있어 많이 소개되어 있는 편이다.

① 석조각 예술(stone sculptures)

만수대 예술작업소는 북한의 중요한 예술작품 창작 중심지이다.

이곳에서는 석조각예술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민”예술인, “공훈”예술인을 포함한 일단의 실력있는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 상사는 만수대 예술작업소에서, 생산된 석조각품에 대한 외국의 주문을 받고 있으며, 또한 외국에서 전시회도 개최한다.

② 불변색 보석분말그림(만년화)(fast-color powdered jewel pictures)

조선화의 그림기법과 색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예술적 가치나 색상의 불변에서 차원이 높다고 평가되는 그림(만년화)을 그려내고 있다. 인물, 풍경, 꽃과 새, 벽화등 어떤 주제이든 그릴 수 있다.

39. 조선 평양 청류민예사

Korea Pyongyang Chonglyu Nat'l ART Co.



소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CHOSUNCHONGLYU” Pyongyang

Telex : 5963 CHLY KP

Tel : 32034

① 금·은 세공품, 은장도, 연옥·烏石·활석조각, 목각

② 병풍, 그림, 古畫복제, 유물모사

③ 도자기(고려청자, 백자, 식기), 자개옷칠그릇, 조개장식품

④ 옥수수대공예, 깃털장식

#### 40. 조선 은덕 무역회사

Korea Undok Trading Co, Ltd.

소 재 : 평양시 대동강구역

Cable add. : "UNDOK" Pyongyang

Telex : 5717 UP KP

Tel : 23480, 22064

북한 국영무역회사인 이 업체는 금속, 기계류, 상품재수출, 외국회사  
합작 및 협력사업을 취급하고 있다. 이 상사는 선반, 드릴링머신, 밀링  
머신, 그라인딩머신등을 수출하고, 트럭, 트랙터를 포함한 차량도 수출  
하고 있다. 이 회사가 관리하는 산하회사는 다음과 같다.

##### 40-1. 은덕 금속 수출입상사

Undok Metals Export & Import Corp.

선철, 강판, 강관, 고탄소크롬 강철, 실리콘 강철등을 수출하고, 몇종  
류의 표준강철, 합금요소를 수입한다.

#### 40-2. 은덕 유색금속 및 광물 수출입 상사

Undok Nonferrous metals & Minerals Export & Import Corp.

아연, 납, 카드뮴원광과 그 제품, 비철, 비금속 광물을 포함한 유색금속을 수출하고, 몇종류의 비철금속과 마무리용 시약(dressing reagent)를 수입한다.

#### 40-3. 은덕 일용품 및 기계류 수출입상사

Undok Daily Necessities & Machinery Export & Import Corp.

공작기구, 밸브, 펌프, 플랜지(Flange), 전자상품, 의류를 수출하고, 다수의 중공업업체용 장비, 부속품, 원료, 물질과 실험, 계측장비, 면 테트론 섬유를 수입한다.

#### 40-4. 은덕 재수출상사

Undok Reexport Corp.

독점적으로 차량, 기계류, 금속제품, 광물, 일용필수품, 의류를 재판매한다.

#### 40-5. 은덕 합영회사

Undok Joint Venture co.

합영과 협력사업을 조직하고, 북한의 합영법하에 외국회사 및 사업가와 상점을 연다

#### 40-6. 은덕 합영수출상사

Undok Joint Venture Export Corp.

은덕합영회사에서 만들어진 1차 가공품 및 완제품의 수출을 전담한다.

#### 40-7. 은덕 어업회사

Undok Shipping Co.

본 업체인 조선 은덕 무역사상에 의해 취급되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일단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계약에 의하여 외국의 용선에 응한다.

#### 41. 조선 룡라 888 무역회사

Korea Rungra 888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RUNGRA 888" Pyongyang

Telex : 5235 RN8 KP

Tel : 43139

이 회사는 여행가방, 여성용 Suitcase, 서류가방, 작은가방, 학교가방, 운동가방, 시장가방, Castor 트렁크, 접는 트렁크, 여성용 메는 가방, 동가방, 손가방, 지퍼달린 가방, 룡색을 생산한다.



가방의 재료는 나일론 천, PVC foamed leather, 인조가죽(synthetic leather), 금속부속품과 장식들이다. 또 비철금속류를 수출하고, 기계설비도 수입한다.

#### 42. 조선 농산물 무역총회사

Korea Agricultural Products General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NONGSANMUL" Pyongyang

Telex : 5945 NSM KP

Tel : 37404, 37540, 35295

〈수 출〉

① 각종야채, 과일 및 가공품

② 약초, 박하류

〈수 입〉

① 농업용 각종기계, 포장용지

#### 43. 조선 제일설비 수출입상사

Korea First Equipment Export & Import Co.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ILSOLBI" Pyongyang

Telex : 5466 DGS KP

Tel : 33653, 34825

이 상사는 철강 및 비철금속공업, 건재공업, 지질탐사, 탄광, 광산업, 수력 및 화력발전소,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기계공업, 자동차, 조선, 철도, 채신등 각 부문의 총체적인 플랜트를 수입하고 금속, 기계, 에너지 부문 플랜트를 수출하며, 제분야 합영사업을 행한다.

#### 44. 조선 제이설비 수출입 상사

Korea Second Equipment Export & Import Co.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DULSOLBI" Pyongyang

Telex : 5907 DGE KP

Tel : 32633

이 상사는 석탄, 화학, 내화물, 직물, 식품, 조선등과 관련한 기술문헌 및 설비 수출입을 행하고, 유망분야의 합영을 추진하고 있다.

#### 45. 조선 기계 수입회사

Korea Machinery Import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KIGYE" Pyongyang

Telex : 5493 SKS KP

Tel : 34186, 36379, 37177

① 자동차, 기계

-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비행기, 내연기관, 광산용설비, 석유굴착정제설비, 베어링

② 기 타

- 전자제품(TV, 컴퓨터), 의료기기

**46. 조선 화학제품 수출입회사**

**Korea Chemicals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HWAHAK" Pyongyang

Telex : 36020 HK KP

Tel : 32759

화학공업원료 및 제품을 수출하고, 원유 및 제품과 타이어, 고무제품, 염료, 가소제(可塑劑) 동위원소를 취급한다.

**47. 조선 일반제품 수출입회사**

**Korea General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ILBAN" Pyongyang

Telex : 36019 IB KP

Tel : 33218, 36784

비철금속, 아연등을 수출하고, 식품, 가축, 묘목, 의류, 운동용품, 악기 등을 수입한다.

#### 48. 조선 곡물 수출입회사

Korea Cereals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SSAL" Pyongyang

Telex : 5234 SSAL KP

Tel : 35355

쌀이나 각종 곡물류를 수출하고, 마대나 아연도금판, 소맥등 다른 곡물류를 수입한다.

#### 49. 조선 과일·남새 수출입회사

Korea Fruits & Vegetables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KMAIL" Pyongyang

Telex : 5946 KMAIL KP

Tel : 35117

배, 온실야채, 박하유, 조미료등 농산물을 수출하고 각종 농업기계를 수입한다.

## 50. 조선 용악산 수입상사

Korea Lyongaksan Import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LYONGAKSANSUIP" Pyongyang

Telex : 36053 LS KP

Tel : 36728, 36081

이 회사는 조선·용악산 상사그룹에 속한 기업으로서 아래의 물품을 취급한다.

- ① 금 속 : 강재, 비철제품, 합금원소
- ② 化成品 : 글리세린, 無水크롬산, 可塑劑, 시약, 수지류, 폴리에스텔
- ③ 기 기 : 弱電設備 및 부속품
- ④ 잡 화 : 대두유, 사탕, 직물등 소비물질

## 51. 조선 남새 수출상사

Korea Vegetables Export Corp.

Cable add. : "NAMSAE" Pyongyang

야채 및 그 가공품, 과일 및 그 가공품 기타 식품을 수출한다.

52. 조선 대동 무역회사  
Korea Daidong Trading Corp.

Cable add. : "DAIDONG" Pyongyang

Telex : 5237 DD KP

Tel : 34788, 52034, 33118, 52872

무연탄 등 광산물과 비철금속, 철강, 농수산물, 토산물을 수출하고,  
각종 기자재를 수입한다.

53. 조선 기술상사  
Korea Technology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KISUL" Pyongyang

Telex : 5466 DGS KP

Tel : 36693

- ① 공업, 농업, 건축, 어업, 교육등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 기술자,  
교류
- ② 전문적 기술 서비스제공 및 선진기술 성과 교환
- ③ 합영사업 추진

**54. 조선 종합설비 수입회사**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ZONGHAB" Pyongyang

Telex : 5466 LS KP

이 회사도 조선 용약산 상사그룹에 속한 기업으로서 공장설비, 공작기계, 공구, 측정기 및 부속품류를 수입한다.

**55. 조선 매봉 무역회사**

**Korea Maibo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MAIBONG" Pyongyang

Telex : 36037 MB KP

Tel : 34304

비철금속, 금·은·세공품, 보석제품, 선철, 강판, 비금속광물,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한다.

**56. 조선 만경 무역회사**

**Korea Mangyo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MANGYONG" Pyongyang

Telex : 5236 MAN KP

Tel : 32319, 34153

건설용 기자재의 수입을 행한다.

**57. 조선 옥류 무역회사**

**Korea Okryu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OKRYU" Pyongyang

Telex : 5499 OR KP

Tel : 35347

한약재와 기타농산물, 냉동, 염장 명태, 넙치, 가자미, 송어, 성게, 전복, 오징어, 해삼, 그외 수산물, 각종 주류 및 차류, 과일, 각종조미료, 직물 및 기성복, 일용잡화류, 가정용품, 전기제품, 자동차부품, 건재류, 화학제품, 경공업제품을 취급한다.

청진, 함흥, 원산, 해주에 지사를 두고 있다.



**58. 조선 신흥 무역회사**

**Korea Shinhu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보통강구역

Cable add. : "SHINHUNG" Pyongyang

Telex : 5984 SH KP

Tel : 36501

무연탄을 수출하고, 잡화를 수입한다.

**59. 조선 인흥 무역회사**

**Korea Inhu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Cable add. : "INHEUNG" Pyongyang

Telex : 5620 IH KP

Tel : 32330

잡화류를 수출입하고 있다.

**60. 조선 만년 무역회사**

**Korea Mannyon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MANNYON" Pyongyang

Telex : 5719 MANNYON KP

의약품, 한약재를 수출하고, 의료기기, 의약품을 수입한다.

**61. 조선 청류 무역회사**

**Korea Chongryu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CHONGRYU" Pyongyang

Telex : 5963 CHLY KP

Tel : 32034

농수산물, 토산품(은장도)을 수출하고, 일용잡화, 전기용품, 의류, 조리기구, 전자재를 수입한다.

의류제조 및 식당업 분야에 외국상사와 합영 및 제휴업무를 취급한다

**62. 조선 묘향 무역회사**

**Korea Myohya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MYOHYANG" Pyongyang

Telex : 5236 MAN KP

건설자재를 수입한다.

**63. 조선 해금강 무역회사**

**Korea Haegumga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HAEGUMGANG" Pyongyang

Telex : 5507 HKG KP

Tel : 38070

아연괴, 수산물등을 수출하고, 漁具, 잠화등을 수입한다.

**64. 조선 검덕 무역회사**

**Korea Komdok Trading Corp.**

Cable add. : "KOMDOK" Pyongyang

Telex : 5346 KD KP

Tel : 37426

광산물, 비철금속, 함북 검덕, 서천지구산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비철 금속, 광산물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공장관련 기자재(플랜트)를 수입하고, 외국과 합영도 하고 있다.

**65. 조선 연광 무역회사**

**Korea Lyongwa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시

Cable add. : "LYONGWANG" Pyongyang

Telex : 36054 ZS KP

비철금속류를 수출한다.

**66. 조선 남산 기계 수입회사**

**Korea Namsan Machinery Import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NAMSANGIGYE" Pyongyang

Telex : 5728 NS KP

Tel : 35914

강재, 제철기계, 기타 기계류를 수입한다.

**67. 조선 출판물 수출입회사**

**Korea Publications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CHULPANMUL" Pyongyang

Tel : 33251

도서, 정기간행물, 화첩, 사진등을 수출입한다.

**68. 조선 영화 수출입회사**

**Korea Film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시 중구역

Cable add. : "KORFILM" Pyongyang

Telex : 5956 SEK KP

Tel : 34263

극영화, 기록영화, 만화영화, 과학영화의 수출입 및 외국과의 영화공동제작을 행한다.

**69. 조선 미술 상사**

**Korea Misul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평천구역

Cable add. : "MISUL" Pyongyang

Tel : 33745

조선화, 자수화, 공예도자기, 칠기공예품, 목조공예품, 금속공예품, 조각품, 벽화와 각종 건축장식이나 도안의 수출, 해외출장하여 대형 全景畫, 半景畫, 기념비조각등 미술품을 현지 창작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 70. 조선 백금산 무역회사

Korea Paekgumsan Trading Co.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PAEKGUMSAN" Pyongyang

Telex : 5346 PS KP

Tel : 32457

〈수 출〉

- ① 전기아연
- ② 마그네샤크링커

〈수 입〉

- ① 광산기계·설비, 부품
- ② 시약
- ③ 전자재, 내화벽돌

**71. 조선 검은금 무역회사**

**Korea Komungum Trading Co.**

소 재 : 평양

Cable add. : "KOMUNGUM" Pyongyang

Telex : 37009 KG KP

Tel : 42725

① 토상흑연

② 무연탄

**72. 조선 석탄 수출입회사**

**Korea Coals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SOKTAN" Pyongyang

Telex : 5725 SOKTAN KP

Tel : 42772, 33229

무연탄, 토상흑연, 인상흑연을 수출하고 코우크스탄, 탄광설비 및 부속품을 수입한다.

73. 조선 목재·목제품 무역회사

Korea Lumber & Wood Products Trading Co.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MOKJAE" Pyongyang

Telex : 5990 MJ KP

Tel : 35208

〈수 출〉

- ① 목재
- ② 목제품

〈수 입〉

- ① 목재가공용 설비
- ② 일용품
- ③ 직물
- ④ 냉동기
- ⑤ TV
- ⑥ 재봉틀



74. 조선 보물 무역상사

Korea Bomul Trading Co.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BOMUL" Pyongyang

Telex : 37057 BM KP

Tel : 31090, 34686

〈수 출〉

- ① 금, 은, 보석등 귀금속
- ② 아연
- ③ 연
- ④ 화강암
- ⑤ 대리석
- ⑥ 장식
- ⑦ Wollastonite

〈수 입〉

- ① 원유
- ② 광물탐사장비 및 부품

75. 조선 채굴광산장비 무역회사

Korea Chaegul Mining Equipment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CHAEGUL" Pyongyang

Telex : 5464 CK KP

Tel : 43560

〈수 출〉

- ① 수압철주
- ② 드럼식 채탄기
- ③ 착암기
- ④ 이동형 벨트콘베이어
- ⑤ 펌프
- ⑥ 분쇄기
- ⑦ 권양기
- ⑧ 선광설비
- ⑨ Plasma Cutter

〈수 입〉

- ① 각종 광산용 장비

**76. 조선 평양 무역회사**

**Korea Pyongya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 ① 철
- ② 비철금속
- ③ 마그네샤크림카

**77. 조선 해양 무역회사**

**Korea Haeya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Moranbong구역

Cable add. : "HAEYANG" Pyongyang

Telex : 5621 HY KP

Tel : 53028

- ① 각종 항만기계·장비
- ② 선장품 및 선박소모품

78. 조선 장수 무역회사

Korea Changsu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CHANGSU" Pyongyang

Telex : 5713 CH KP

Tel : 36139

- ① 개성고려인삼
- ② 인삼엑기스
- ③ 인삼주사액
- ④ 인삼캡슐
- ⑤ 의약품
- ⑥ 의료기기

79. 조선 오륜 무역회사

Korea Oryun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동대원구역

Cable add. : "ORYUN" Pyongyang

Tel : 33777

- ① 태권도복

80. 조선 유성 무역회사  
Korea Yuso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대동강구역  
Cable add. : "YUSONG" Pyongyang  
Telex : 5717 YS KP  
Tel : 23079, 23926

〈수 출〉

- ① 광산물
- ② 농·수산물
- ③ 토산품

〈수 입〉

- ① 불도저
- ② 굴삭기
- ③ 보링설비·자재

81. 조선 삼지연 무역회사  
Korea Samjiyon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 ① 수출기지 조성
- ② 자재, 가공원료 수입

**82. 조선 금통 수출입상사**

**Korea Kumrung Export & Import Corp.**

소 재 : 평양 모란봉구역

Cable add. : "KUMRUNG" Pyongyang

Telex : 37022 KREI KP

Tel : 54947, 32253

① 고혈압치료기

**83. 조선 서광 무역회사**

**Korea Sogwa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SOGWANG" Pyongyang

Telex : 5619 UP KP

Tel : 34128

① 자석

**84. 조선 모란 무역회사**

**Korea Moran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MORAN" Pyongyang

Telex : 5724 MR KP

Tel : 34870

- ① 각종기계·설비
- ② 무연탄

**85. 조선 남양 무역회사**

**Korea Namya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Telex : 36024 KNY KP

Tel : 33622, 33837

- ① 압연강재
- ② 비철금속
- ③ 곡물
- ④ 사료
- ⑤ 화학제품
- ⑥ 잡화

**86. 조선 락원 무역회사**

**Korea Ragwon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RAGWON" Pyongyang

Telex : 5354 KP

① 활석공예식기

② 각종 잡화

**87. 평양 출판 무역연합회**

**Pyongyang Publishing Trade Association**

소 재 :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CHULPAN" Pyongyang

Telex : 5725 CHP KP

Tel : 44888

〈수 출〉

① 카탈로그

② 달력

③ 포스터

④ 레이블



- ⑤ 그림엽서
- ⑥ 우표
- ⑦ 연하장
- ⑧ 잡지
- ⑨ 교과서
- ⑩ 포장지
- 〈수 입〉
- ① 종이
- ② 인쇄잉크
- ③ 필름
- ④ 인쇄장비

**88. 조선 변강 무역회사**  
**Korea Byongang Trad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Telex : 36022 KW KP  
 Tel : 36439

- ① 금속제품
- ② 경공업제품
- ③ 화학품
- ④ 목재
- ⑤ 수산물
- ⑥ 과일, 야채

**89. 조선 고말산 무역회사**

**Korea Komalsan Trading Corp.**

소 재 : 함경북도 청진시

Cable add. : "KOMALSAN" Chungjin

Tel : 527

수산물, 산나물 등을 수출하고, 이구, 잡화류를 수입한다.

**90. 조선 남포 무역회사**

**Korea Nampo Trading Corp.**

소 재 : 남포

Cable add. : "NAMPOMUYOK" Nampo

Tel : 527

농수산물, 비철금속을 수출하고 잡화류를 수입한다.

## 2. 관련단체

###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of the D.P.R.K.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KOMT" Pyongyang

Telex : 36044 DMC KP

Tel : 33216, 32136

국가간 통상관계가 없는 국가들과의 무역관계 촉진업무를 수행한다.

### 2. 조선 대외 과학기술 교류협회

Korea Society for Scientific & Technical Interchange with Foreign  
Countries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TAEOKISUL" Pyongyang

Telex : 5466 DCG KP

대외적인 과학기술교류의 촉진업무를 수행한다.

### 3. 조선 대외 상품검사 위원회

Korea Foreign Community Inspection Committee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KFCIC" Pyongyang

수출입상품의 검사, 감정업무를 취급하며 남포, 흥남, 청진, 나진, 해주, 송림, 원산등 주요항에 지국을 두고 있다.

###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출입 검사국

The Export & Import of Tally Bureau of the D.P.R.K.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GEMSU" Pyongyang

수출입화물의 검수업무를 취급하며 남포, 흥남, 청진, 나진, 해주, 송림, 원산등 주요항에 지국을 두고 있다.

각 지국의 Cable add. 은 GEMSU에 소재 도시명을 붙인다.

### 5. 조선 대외 운수회사

Korea Foreign Transportation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OONSOO" Pyongyang

Telex : 36042 OS KP

Tel : 32569

외국선박에 대한 입항허가, 수출입 화물의 수송조직, 통과화물의 수송조직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래의 항구에 지사를 두고 있다.(괄호안은 cable add.)

남포(OONSOO NAMPO)

홍남(OONSOO HEUNGNAM)

청진(OONSOO CHUNGJIN)

해주(OONSOO HAIJOO—HWANHAI)

원산(OONSOO WONSAN)

## 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선박 사업회사

Ocean Shipping Agency of the D.P.R.K.

소재 : 평양 모란봉구역

Cable add. : "KOSA" Pyongyang

Telex : 5470 KOSA KP

Tel : 52984, 52987, 52472

외국선박대리업무, 운임대리징수, 창고수배, 선박용품공급등 제반 서비스업무를 수행한다.

아래의 항구에 지사를 두고 있다.

지사	Cable add.	Telex	전화
남포	KOSA NAMPO	7305 NP KOSA KP	138
홍남	KOSA HEUNGNAM	6202 HN KOSA KP	2656
청진	KOSA CHUNGJIN	6201 CHJ KOSA KP	1303
해주	KOSA HAIJOO-HWANHAI	7306 HJ KOSA KP	383
송림	KOSA SONGRIM	7307 SL KOSA KP	1100
원산	KOSA WONSAN	6203 WS KOSA KP	1074

### 7. 조선 국제보험 회사

Korea Foreign Insurance Co.

소 재 : 평양 평천구역

Cable add. : "CHOSUNBOHOM" Pyongyang

Telex : 5464 BOHOM KP

Tel : 45501

원양 및 연안항행선박의 보험, 수출입화물의 보험, 외국보험기관과의 재보험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사가 청진, 홍남, 남포, 해주, 나진등 주요 항구에 설치되어 있다.

## 8. 조선 동해 해운회사

Korea Tonghae shipping Co.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HAEWUN" Pyongyang

Telex : 5461 HAEWUN KP

Tel : 43987

수출입화물의 수송 및 여객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해운부 직속의 해운실무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 9. 조선 대흥 선박회사

Korea Daehung Shipping Co.

소 재 : 평양 모란봉구역

Cable add. : "DAEHUNGSENBAG" Pyongyang

Telex : 5476 DHSB KP

Tel : 36710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련된 하주 및 용선자, 선박대리인 업무를 수행한다.

**10. 조선 룡라도 선박회사**

**Korea Rungrado Shipping Co.**

소 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RUNGRADOSONBAK" Pyongyang

Telex : 5497 RRD KP

월 1회에 400톤급의 정기선이 홍콩과의 무역에 종사하고, 그외 북한과 싱가포르, 일본간 해상운수 업무를 수행한다.

**11. 조선 대성 운수회사**

**Korea Daesong Transportation Co.**

소 재 : 평양 보통강구역

Cable add. : "DAESONGOONSU" Pyongyang

Telex : 5473, 5474 DAESONG KP

Tel : 45994

조선 대성무역상사 그룹 소속 기관으로 조선 대성 무역상사의 揚積貨物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스, 독일등에 대리점을 두고 있어, 자사선을 홍콩, 싱가포르, 인도, 일본등의 항로에 취항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외국선의 용선도 한다.

남포, 홍남, 청진, 해주, 원산, 김책등 주요항에 지사들 두고 있다.



## 12. 조선 용선회사

Korea Chartering Corp.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YONGSON" Pyongyang

Telex : 36042 OS KP

Tel : 42756, 44088

해상수송과 관련한 용선 및 창고계약, 선주 하주로부터의 화물수송위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 13. 조선 민항

Chosun Minhang "Korea Air ways"

소 재 : 평양 중구역

평양과 북경, 베를린, 모스크바, 소피아, 하바롭스크간의 정기운항을 맡고있다.

#### 14. 조선 국제 전람사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orp.

소 재 : 평양 서성구역

Cable add. : "ZENRAM" Pyongyang

Telex : 5952 ZR KP

Tel : 51854, 51782

국제전본시장 내지 외국에서의 북한상품전람회 조직 및 외국기업의 북한내 상품전람회 협조를 담당한다.

#### 1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역은행

Foreign Trade Bank of the D.P.R.K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MOOYOKBANK" Pyongyang

Telex : 5460, 5465, 5477 MUYOKBANK KP

Tel : 32588, 34531

무역에 따르는 결제업무와 지불 및 보증업무, 무역기관에서의 외화회득과 지불에 대한 신용업무 등을 취급한다. 정부간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는 물론 쌍무지불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서방제국이나 개발도상국가들과의 무역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들 나라의 각종 은행들과 코레스(Correspondent, 환거래)계약을 맺고 있다.

이밖에 중요한 기능으로 북한원화와 외환의 교환비율 결정·공표 그리고 북한내에서 외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외화태환권(외화와 바꾼 돈표)의 발행업무를 수행한다. 또 무역기관·기업소의 대외지불에 대한 재정적 통제업무도 시행한다.

## 16. 금강 은행

**Kumgang Bank**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KUMGANG BANK" Pyongyang

Telex : 5355 KGBK KP

Tel : 32029, 32797, 33052

1970년대 후반 무역이 급증하면서 이에따른 결제업무가 증대되자 이를 전담하기 위해 1978년 9월에 설립된 은행으로, 기계제품, 금속제품, 광물, 화학제품 등의 수출입을 하고 있는 조선봉화무역상사 등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7. 조선 대성은행

**Korea Daesong Bank**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DAESONG BANK" Pyongyang

Telex : 5478, 5479 KDB KP

Tel : 35081, 43002

금강은행과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1978년 11월에 설립되어, 주로 조선 대성무역상사, 조선동해해운회사, 조선만경무역상사 등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대외결제업무와 귀금속거래를 취급하고 있으며, 일반 외국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동 은행은 해외자회사로 오스트리아의 빈에 금성은행(the Gold Star Bank)을 두고 있다.

### 3. 합영회사

#### 1. 조선 국제 합영총회사

The Korea International General Joint Company

소 재 : 평 양

조총련계열 상공인들에 대한 대북한 투자알선, 정보교환, 계약체결등 합영에 따르는 업무를 총괄하며, 최고결정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1년에 한번씩 평양과 동경에서 번갈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조선 월명산 합영회사

Korea Wolmyongsan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 평천구역

Cable add : "WOLMYONGSAN" Pyongyang

Telex : 46218

#### ① 탈모증 방지약

- 모생틴크(Mosaengtinc) - 8811(로선)

Radix Angelicae Dahuricae, Folium Biotae와 기타 다른 약초로 만든다

- 모생고(Mosaengo) - 8817(로선)

Radix Asiasari, Radix Cynachi, wilfordi 와 기타 다른 약초로 생산한다.

② 비만증치료제

③ 위염치료제

④ 한방진통제

### 3. 조선 삼방연합 합영회사

Korea Sambang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 만경대구역

Cable add : "SAMBANG" Pyongyang

Tel : 74251,74252

① 생선가공

### 4. 조선 만풍 합영회사

Korea Manpung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중구역

Cable add : "MANPUNG" Pyongyang

Telex : 5974 NSM KP

Tel : 31217

① 다다미

5. 조선 금별 합영회사

Korea Kumbyol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 낙랑구역

Tel : 28261

① 각종 수도꼭지

6. 조선 무지개 합영회사

Korea Mujigae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 모란봉구역

Telex : 5967 KIGJVC KP

Tel : 31408

① 장식용 조화

7. 청천강 합영회사

Chongchongang Joint Venture Co.

소 재 : 자강도 회천시

Cable add : "CHONGCHONGANG" Huichon

Telex : 5923 IN KP

Tel : 249, 645

① 견사

② floss silk

③ 누에고치

④ 날염

⑤ 견직물

⑥ 편직물

### 8. 만장 합영회사

Man-Zang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 중구역

Cable add : "MANZANG" Pyongyang

Telex : 5959 MAN-ZANG KP

Tel : 43040

① Radix Paeoniae

가을에 뿌리를 캐서 말린 것이다.

### 9. 평양 포장 합영회사

Pyongyang Packing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 선교구역

Tel : 23868, 66312

① 각종 포장재 취급



10. 광포 합영회사

Kwangpo Joint Venture Co.

소 재 : 함경남도 청평군

Telex : 59677 KIGJVC KP

Tel : 39385

① 오리털, 오리간 수출

② 배합사료 수입

11. 명전 합영회사

Myongjon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 중구역

Telex : 38027 GORYO KP

Tel : 31392, 39686

① 심전계

② 자동소화기

12. 모란봉 합영회사

Moranbong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 동대원구역

Telex : 5496 MJVC KP

Tel : 63877, 23326

- ① 양복
- ② 바지
- ③ 셔츠
- ④ 점퍼
- ⑤ 블라우스

### 13. 선봉 합영회사

Sonbong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 평천구역

Tel : 44229, 45022

- ① 소형변압기
- ② DIP 스위치
  - Piano형, I.C형

### 14. 전진 합영회사

Chonjin Joint Venture Co.

소 재 : 평양 평천구역

Cable add : "CHONJIN" Pyongyang

Telex : 5344 PC KP

Tel : 45854, 46688

- ① 셔츠
- ② 바지
- ③ 블라우스
- ④ 신사복
- ⑤ 아동복

#### 15. 2월 6일 합영회사

소 재 : 평양시

- ① 벗짚 가공

#### 16. 운산광산개발 합영회사

- ① 운산금광 개발

#### 17. 강서 제사 합영공장

소 재 : 남포시

- ① 년 70톤의 생사 생산

#### 18. 낙원 의류 합영회사

- ① 각종의류생산, 수출
  - 년간 30만벌 생산능력

**19. 서산 합영회사**

소 재 : 평양시

- ① 꿀 생산, 판매

**20. 원산 애국 편직물 유한회사**

소 재 : 강원도 원산시

- ① 편직물류 생산

**21. 흥덕 합영회사**

소 재 : 함남 함흥시

- ① 타이어 생산, 판매

**22. 남산 합영회사**

소 재 : 평양시

- ① 전기·전자제품 생산

### 23. 룡라 합영회사

소 재 : 평양시

- ① 의류 판매

### 24. 노아나 미용연구회

소 재 : 평북 신의주시

- ① 인삼크림 제조

### 25. 평양 비단 합영회사

- ① 산하에 평양, 박천 두개의 공장을 두고 비단제품 생산, 수출
  - 연간 수백톤의 비단실과 20여만m의 비단 생산능력 보유

### 26. 성계알 생산 합영회사

- ① 함북 근해에서 성계를 잡아 양질의 성계알을 가공·생산하여 수출

### 27. 칠보산 수산물 합영회사

소 재 : 함북 청진시

- ① 수산물 가공, 판매

**28. 송몽 합영회사**

소 재 : 평양시

- ① 소형 변압기 생산

**29. 청유 합영회사**

소 재 : 평양시

- ① TV, 타자기 부속품 생산

**30. 고려 합영회사**

소 재 : 평양시

- ① 무역업무

**31. 평양 양어 합영회사**

- ① 각종 물고기 양식, 국내 소비 및 수출

**32. 신흥 합영회사**

소 재 : 평양시

- ① 자전거(년 1만대), 오토바이류, 전자계산기, 칼라TV, 녹음기, VTR, 통신기기, 축전기 등 생산

### 33. 덕산 건설기계 합영회사

소재 : 평양시 만경대구역

- ① 불도저, 굴착기, 대형 화물차 등 건설용 중장비의 수리, 정비 수출 및 기타 국내 건설기계 정비
- 연간 정비 능력 : 300대

### 34. 동성 수산물 생산 판매회사

- ① 동해안 경제수역내에서 어로 및 어획물 판매

### 35. 이영삼 단밤 연구소

소재 : 평남 성천군 협동농장

- ① 북한 자생 야생밤을 과학적으로 인공관리하여 종자 개량
- 개량밤 생산 및 수출

### 36. 진달래 합영회사

소재 : 평양시

- ① 각종 의류 생산
- 주로 부인 기성복(양장) 취급

**37. 조선 은동 합영회사**

소 재 : 평양시

- ① 기념메달 제작

**38. 평양 피아노 합영회사**

소 재 : 평양시 만경대 구역

- ① 피아노 생산(년간 5천대)

**39. 밀림 단일 합영회사**

소 재 : 함남 함흥시

- ① 위생젓가락 (년 120만개) 등 주민생활용품 생산

**40. 함흥 화화 합영회사**

소 재 : 함 흥

- ① 북한에서 채굴한 희귀 원소류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의 정련 및 수출



#### 41. 희천-고리끼 합영회사

소 재 : 자강도 희천시

- ① 후레이즈(fraise) 반 년간 5,000대 생산

#### 42. 이바노브-희천 합영공장

소 재 : 자강도 희천시

- ① 수치제어공작기계 생산

#### 43. 연진 합영 해산물 주식회사

소 재 : 함경북도 청진시

- ① 년간 4,500톤 규모의 수산물 생산, 가공 판매

#### 44. 인쇄회로기계 설비공사

- ① 인쇄회로 기계설비 생산

#### 45. 금강산 국제무역 개발회사

- ① 금강산호텔 건설 및 부대시설 공사
- ② 해외수출입 교역

#### 46. 금강산 국제관광회사

- ① 해외교포들의 북한 방문과 금강산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 상담 및 주선 업무를 수행한다.

#### 47. 조선 낙원 금융 합영회사

소 재 : 평 양

- ① 북한의 합영회사 및 무역상사와 외국기업 등에 대한 투자, 대부등 국제금융 업무를 전담한다.

#### 48. 조선 합영은행

소 재 : 평양시

Telex : 36001 KJB KP

Tel : 33052

- ① 북한의 합영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합영회사들의 청산거래, 과실송금 등 대내외 결제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등 국제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 49. 고려 상업은행

- ① “민족통일 FUND”라는 공채를 발행하여 재미교포들의 대북한 자본 투자를 유치한다.

#### 50. 조선·폴란드 해운 유한회사

Korea-Polish Shipping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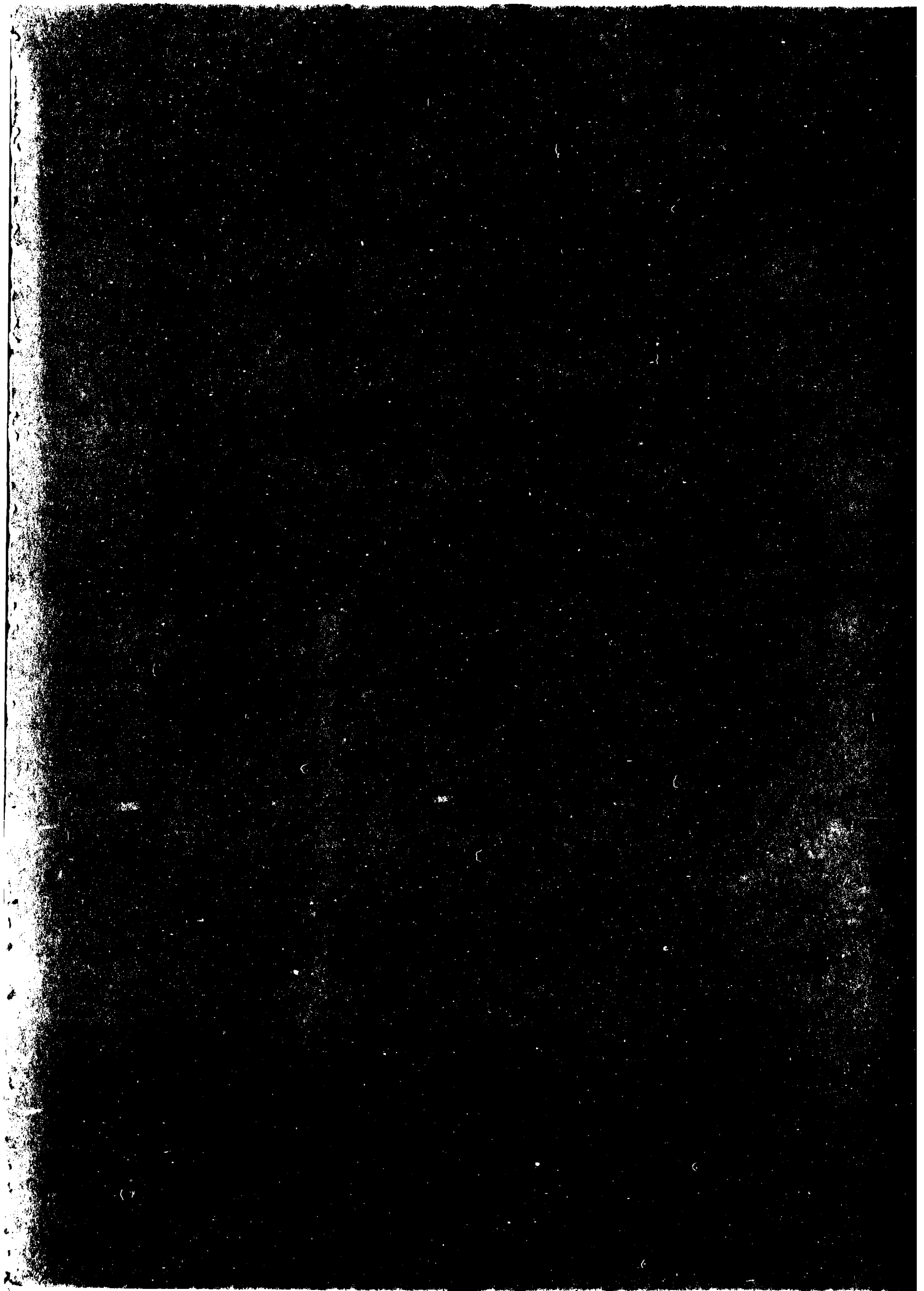
소재 : 평양 모란봉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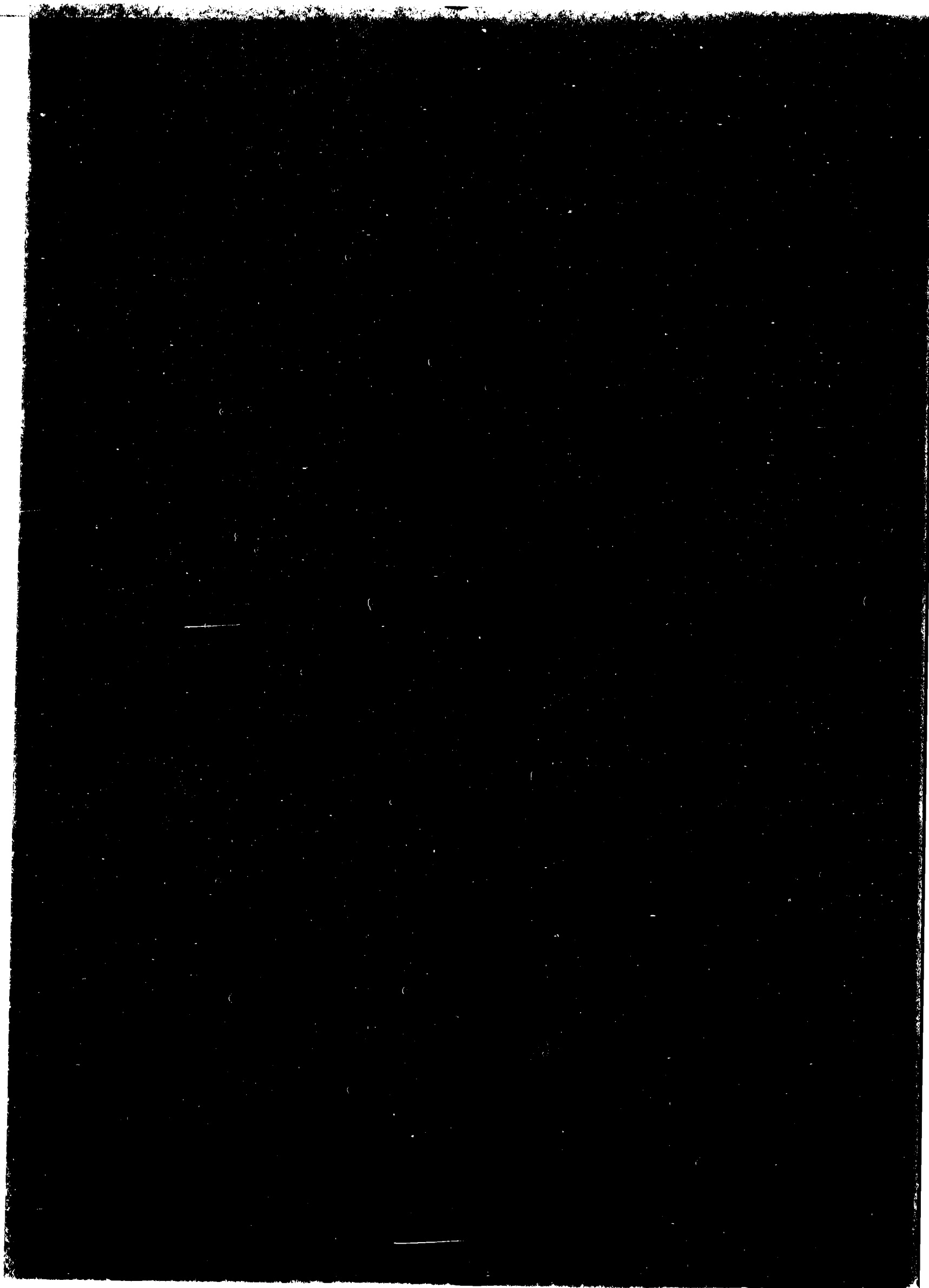
Cable add : “CHOPOLSHIP” Pyongyang

Telex : 5480 CHOPOL KP

Tel : 32532, 52533

- ① 북한과 폴란드 간의 수출입 화물의 해상수송업무와 제3국화물의 아시아·유럽간 수송업무를 수행한다.





## I.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및 後續法令



#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制定 1990. 8. 1 法律 第4239號

改正 1990. 12. 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이하“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北韓”이라 한다)間의 相互交流와 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出入場所”라 함은 北韓으로 가거나 北韓으로부터 들어 올 수 있는 南韓의 港口·飛行場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交易”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한다.
3. “搬出·搬入”이라 함은 賣買·交換·賃貸借·使用貸借·贈與등을 원인으로 하는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移動(단순히 第3國을 경유하는 物品의 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의 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이 共同으로 행하는 文化·體育·學術·經濟등에 관한 諸般活動을 말한다.

第3條(다른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등 南北交流와 協力을 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第4條(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間의 相互交流 및 協力(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 協議·調整 하고,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統一院에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이하“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5條(協議會의 구성)** ①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統一院長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③委員은 次官 및 次官級 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 指名하는 者가 된다.

④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⑤協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統一院 所屬 公務員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

**第6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政策의 協議·調整 및 基本原則의 수립
2.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各種 許可·승인등에 관한 重要사항의 協議·調整
3. 交易對象品目の 범위 決定
4. 協力事業에 대한 總括·調整
5.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한 지원
6. 南北交流·協력과 관련된 重要사항에 대한 關係部處間의 協調推進

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第7條(協議會의 議事) ①協議會의 會議은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協議會의 會議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協議會의 운영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8條(實務委員會) ①協議會에 上程할 議案을 준비하고, 協議會의 委任을 받은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協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들 수 있다.

②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9條(南·北韓 往來) ①南韓과 北韓의 住民이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統一院長官이 發給한 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在外國民이 外國에서 北韓을 往來하는 때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南韓의 住民이 北韓의 住民등과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接觸하고자 할 때에는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의 發給節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外國民의 범위와 申告節次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條(海外同胞 등의 出入保障) 外國國籍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 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行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第11條(南·北韓 往來에 대한 審査) 出入場所에서 南韓과 北韓을 直接 往來하는 南韓과 北韓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12條(交易當事者) 交易(北韓과 第3國間에 物品의 中繼貿易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交易當事者”라 한다)로 하되, 統一院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者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搬出·搬入의 승인) 交易當事者가 物品의 搬出·搬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物品 또는 去來形態·代金決濟方法에 관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4條(交易對象物品의 公告) 統一院長官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自動承認品目·制限承認品目 또는 禁止品目的 구분
2. 制限承認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

第15條(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院長官은 交易에 관한 協定の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②統一院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協力事業者) ①協力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承認取消事由 및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協力事業의 승인) ①第16條 規定에 의하여 協力事業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協力事業者”라 한다)가 協力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매 事業마다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事業의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事業의 승인요건과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院長官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力事業者에게 協力事業의 施行內容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19條(決濟業務의 取扱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決濟業務를 취

급할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濟業務取扱機關이 행하는 決濟의 범위·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輸送裝備의 運行) ①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輸送裝備등의 出入管理)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法第65條 내지 第7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2條(通信役務의 제공) ①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하여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를 提供할 수 있다.

②南韓과 北韓間에 제공되는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의 提供者·종류·料金·取扱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檢疫등) ①北韓으로부터 來港하는 船舶·航空機·荷物は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에는 檢疫法第6條 내지 第28條 및 第33條 내지 第35條의 2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檢疫法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 傳染病菌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는 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4條(南北交流·協力の 지원)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 따라 행하는 南北交流·協력을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補助金を 支給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5條(協調要請) 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고 관련 政策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專門家 및 南北交流·協力の 經驗이 있는 者에게 의견의 陳述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은 者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6條(다른 法律의 準用) ①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 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②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 賦課·徵收·減免 및 還給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다만, 物品의 搬入에 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防衛稅法第4條第1號의 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 輸入賦課金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③南韓과 北韓間의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 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 準用한다.

1. 外國換管理法
2. 外資導入法
3. 韓國輸出入銀行法
4. 輸出保險法
5. 對外經濟協力基金法
6. 法人稅法
7. 所得稅法
8. 租稅減免規制法
9. 輸出用原材料에 대한關稅等還給에 관한特例法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그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

第2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發給받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北韓의 住民과 接觸한 者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品을 搬出 또는 搬入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力事業을 施行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發給받거나 第9條第3項, 第13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  
인을 얻은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  
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北韓을 往來한  
在外國民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5  
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8  
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  
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第29條(刑의 減輕) 第27條第1項 및 第2項第1號의 罪를 범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30條(北韓住民擬制) 이 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適用에 있어서 北韓의 路線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이를 北韓의 住民으로 본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3 條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4.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附 則(90. 12. 27)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省略>

第 2 條 내지 第10條 省略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장소) ①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항지정의건 제 1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통일원장관은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등)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의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준용규정등) ①제 3 조 내지 제 5 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장 남북한 왕래등

제 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원”을 표기한다.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8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8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다만, 해당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 1 항제 3 호 및 제 6 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항제 4 호·제 6 호 및

제 2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인 이상의 단체 왕래
2. 정치적 목적의 왕래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

**제13조(편의제공)**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발급 신청서
2. 제10조제 1 항제 3 호의 사진 2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등)** ①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 1 항제 4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된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 1 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이를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북한방문결과보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법 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법 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 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 2 항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법 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 부터 승인

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원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회회의 외접이 있는 때에는 제 9 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등은 통일원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원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 4 장 교 역

제25조(교역당사자의 지정) 통일원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전에 미리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27조(변경 승인사항등)**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미화 5천달러 상당액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②통일원장관은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교역대상물품에 관하여 협의회 의결에 앞서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

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조정을 명하거나 교역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원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2 항제 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 1 항의 규

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 1 항 각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원장관은 제3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30일이내에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 1 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일원장관이 법 제1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6 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는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무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등을 운행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등)** ①통일원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통일원장관은 선박등의 정기운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원장관은 법 제2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유선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우편물운송법·임시우편단속법·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

의 제공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 2 항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26조제 3 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 4 조제 1 항제 2 호·제 3 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 2 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⑤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세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준용한다.

**제52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 2 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

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

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 칙(91. 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영 제10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호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영 제16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북한방문신고서등) ①영 제18조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 3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출입신고서등) ①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영 제10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 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91. 3. 27>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 략

양식 [별표]

[별지제 1 호서식] ~ [별지제11호서식]

[ 별 표 ]

심 사 확 인 인

출입장소 :

일 자 :                    년            월            일

출입심사관 :

15 mm

75 mm



필부서류 : 1. 신원전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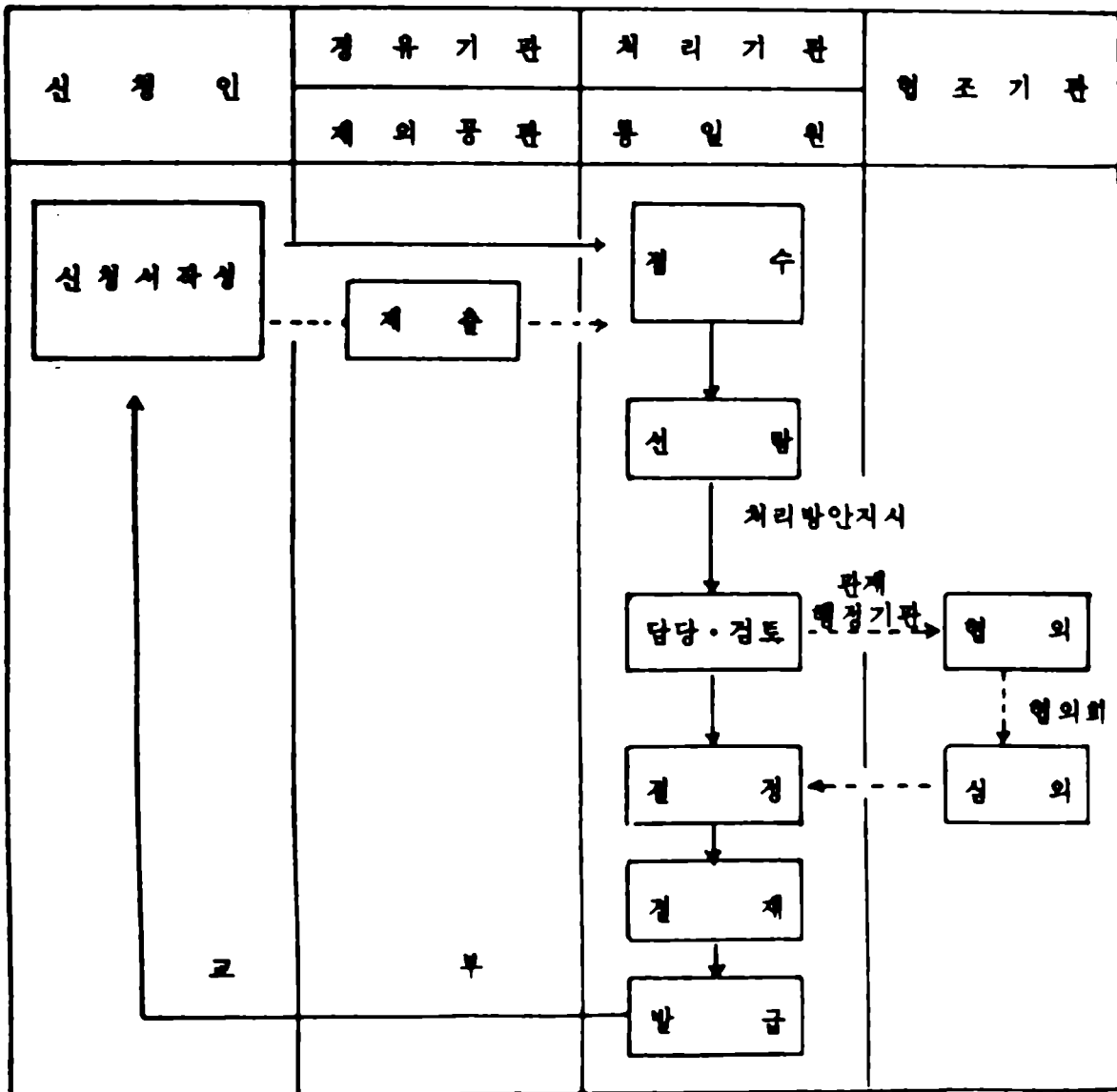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3. 형법 제 62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해당자에 한함)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원장관이 경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 2호서식]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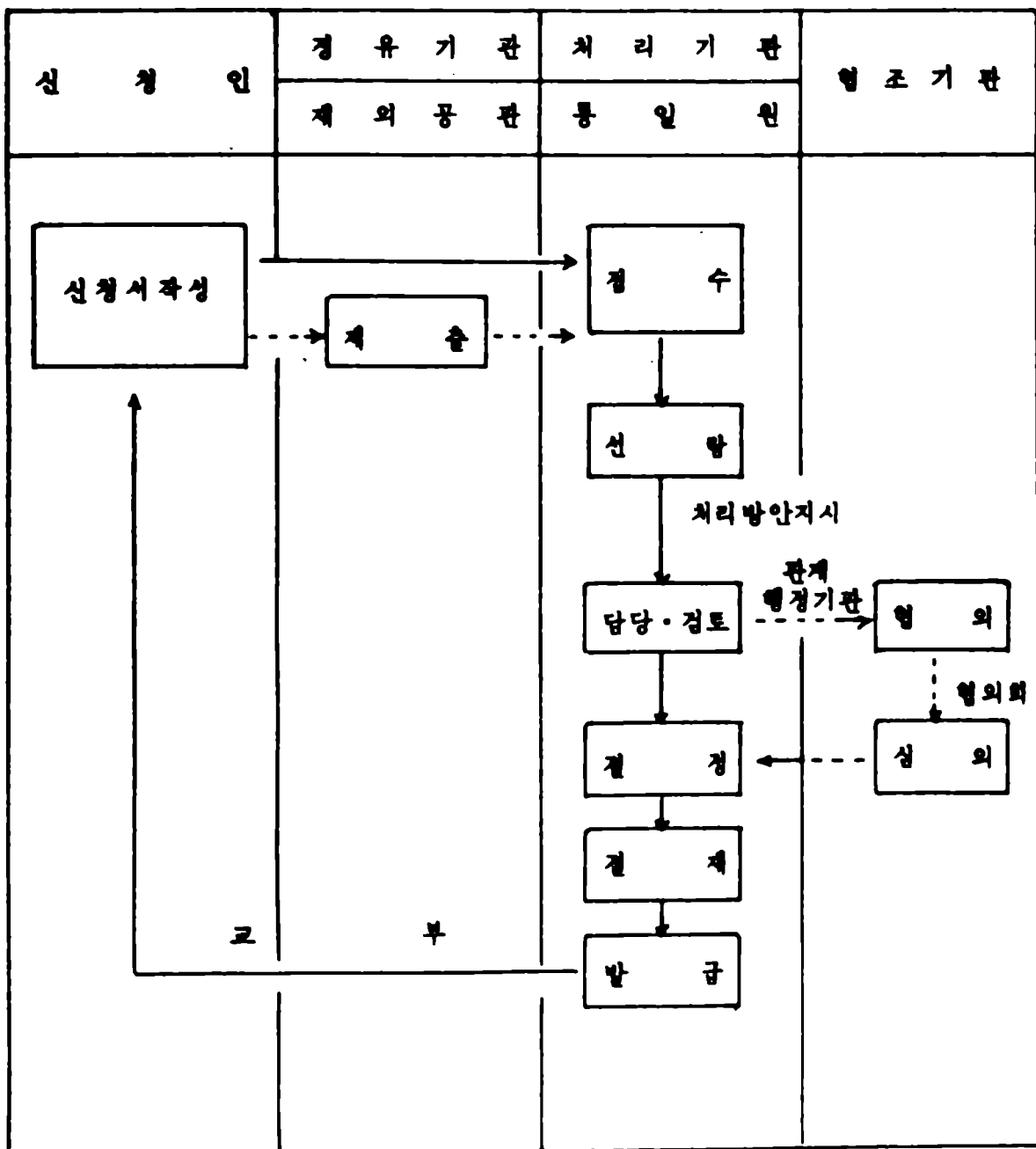
						처리기간	30 일
①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성별	남 · 여	사 전 3.5cm x 4.5cm	
	생년월일		출생지	신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					
	직업소속		직위	(전화: )			
②동반자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사 전	사 전	
				cm	2.5cm x 3cm	2.5cm x 3cm	
				cm			
③방문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관 계		거 주 지		
④방문목적							
⑤방문경위 (초청장, 방문합선 및 중개인 포함)							
⑥방문예정 일정(일시, 방문지역)							
⑦방문 및 귀환 예정 경로							
⑧방문경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고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남한지역의 법질서와 안내에 따를 것이며 남측의 관계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뒷면</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①</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수수료	
						없음	

11022-00411 민  
90. 10. 12 승인

210mm x 297mm  
인쇄용지(국금) 80g

- 첨부서류 : 1.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2. 통일원장관이 경하는 서류 또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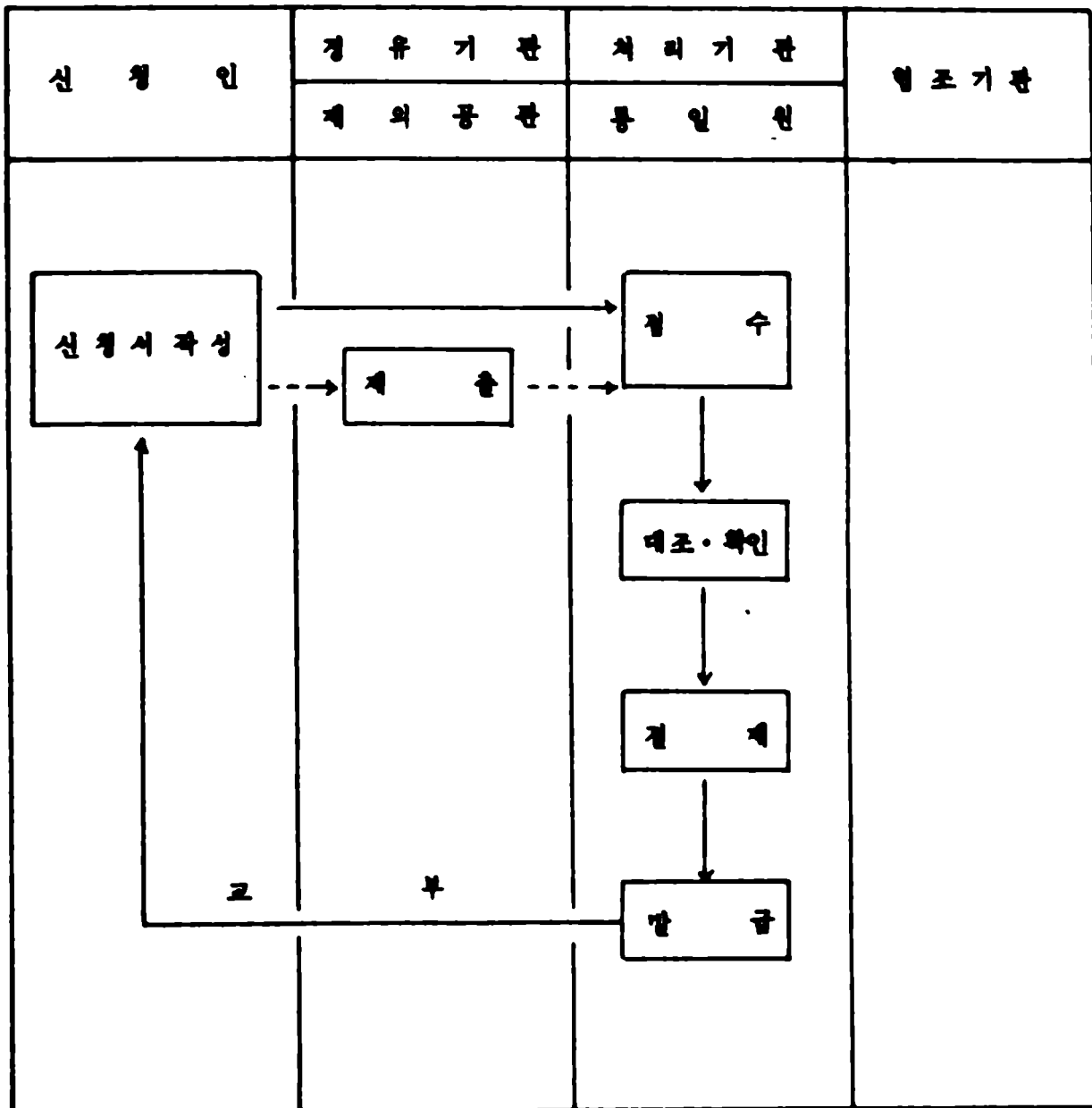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첨부서류: 1. 증명서 제달금융 사진 2매  
 2. 통일원장관이 결하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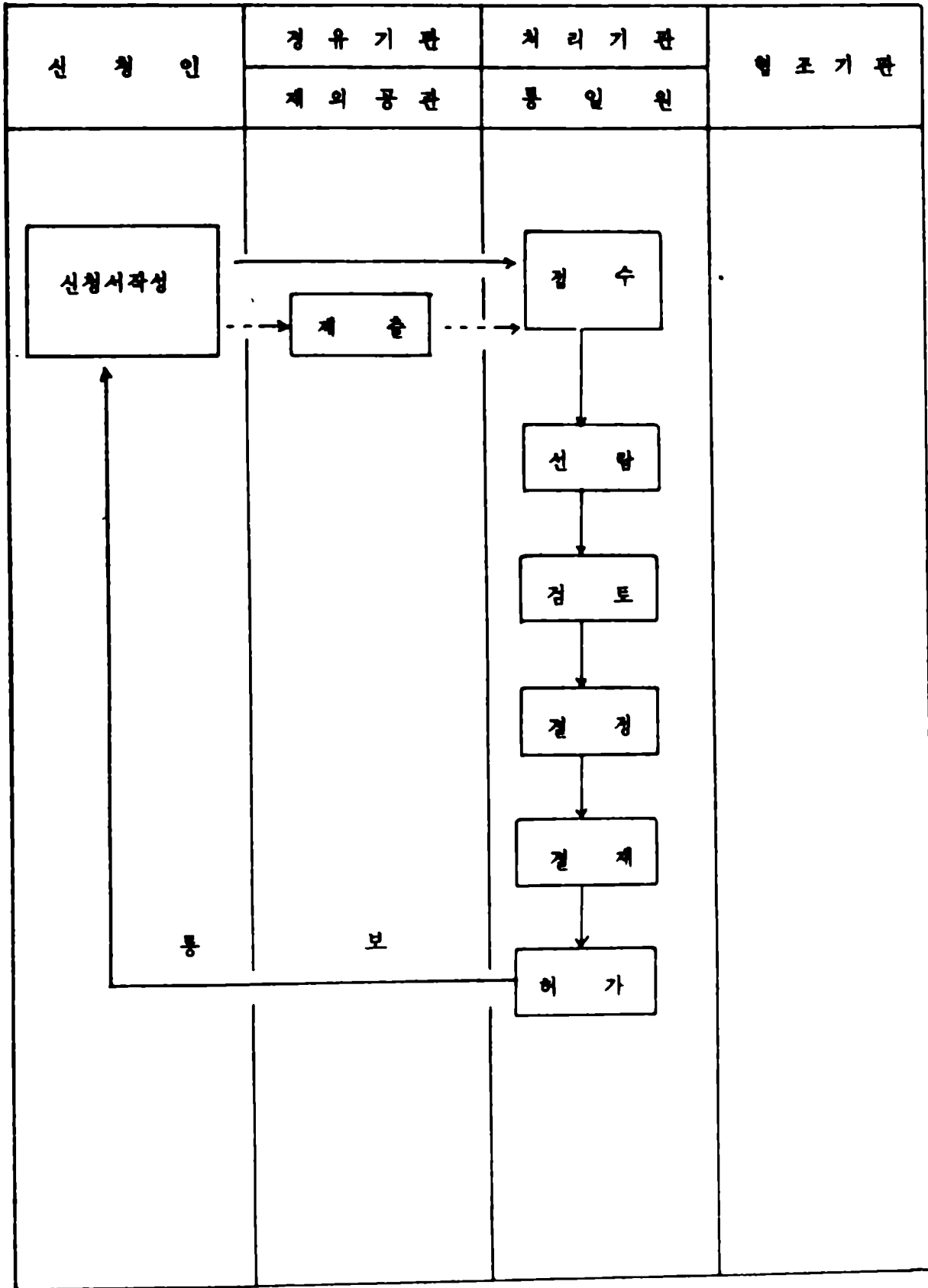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면 >





[별지 제6호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보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3cm x 4cm	
	주소·연락처	(전화: )				
	직 업	(전화: )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①방문대상자 (방문기관) (3인부터는 별지작성)	성 명	소 속 및 직 위	기 타			
③방문목적						
④출발일			⑤귀환일			
⑥방북신고미필사유						
⑦방문 및 귀환경로						
⑧ 방 문 일 정						
년 월 일	방 문 지 역	활동내용 및 연담자				
※ 세부활동내용 및 참고사항은 별지작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 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년 월 일						
작성 자:				Ⓢ (또는 서명)		
대사(총영사) 귀하						

11022-00811 민  
90.10.12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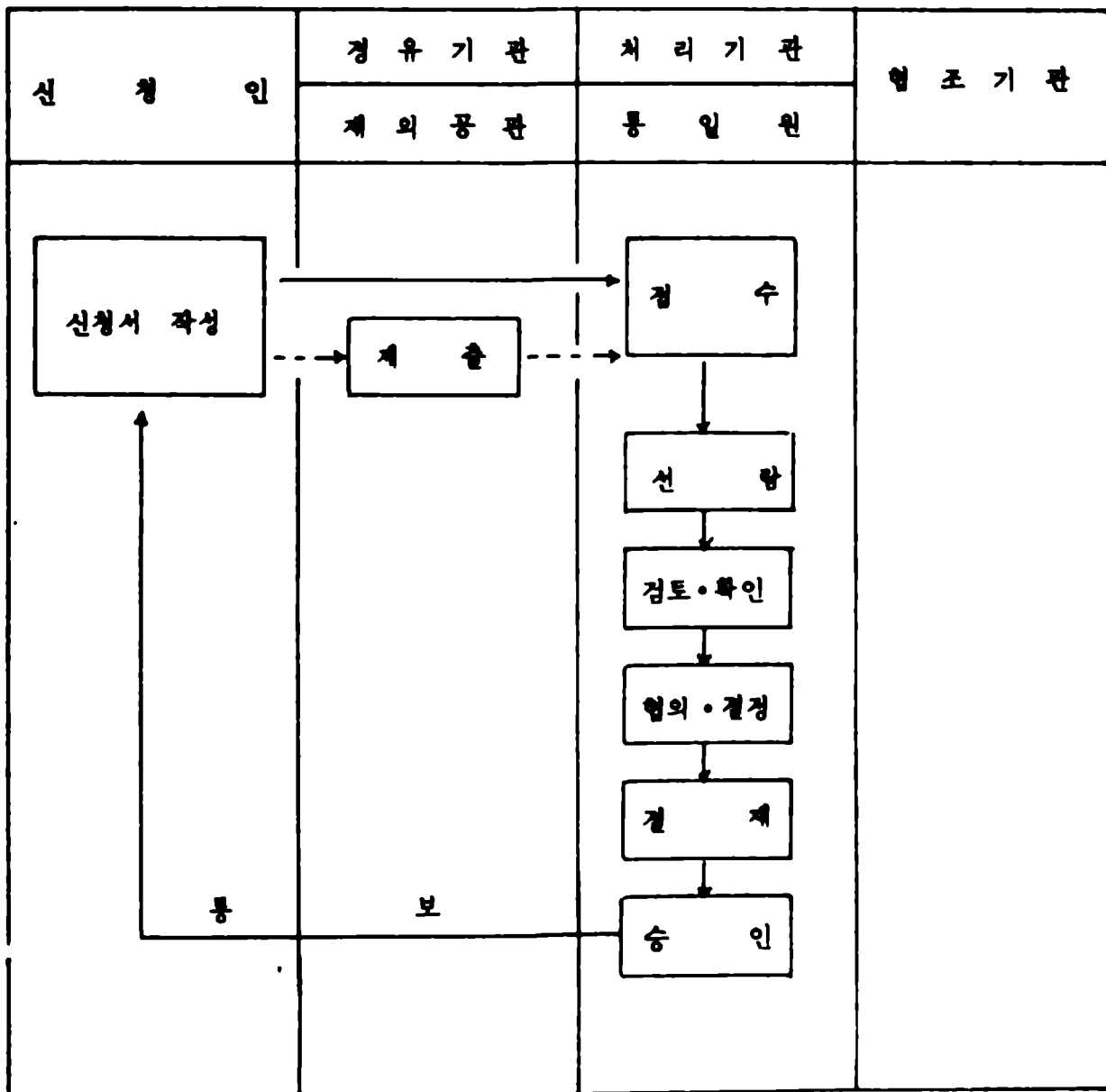
210mm x 297mm  
인쇄유지(특급) 80g/㎡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출 입 신 고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li> <li>● □속은 적지 마십시오.</li> <li>●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li> </ul>			
이름	한자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후단 	성별 남·여	
방문증명서번호	직장 및 직위 직장명 : 직 위 :		
거주지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방문지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	
방문목적	방문예정기간		
공용란			

11022-01111 민  
90.10.12 승인

84 mm x 144 mm  
NCR 888 / ml



[별지 제 10 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구분

주 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6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력사업자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원 장 관

인

11022-01411 일  
90.10.12 승인

190 mm x 268 mm  
인쇄용지 (특급) 120 원 / 개

[별지 제 11 호서식]

###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상호(명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의 종 류			수송장비명칭	
운행노선				
운행승인 유효기간				
운행승인구분	정 기	회	부정기	회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인</span></p>				

11022-01511 일  
99.10.12 승인

190 mm X 268 mm  
인쇄용지 (특급) 120 g/㎡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	------

( 용 )

① 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허가번호	⑤ 송화인			
( ④ )	⑥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신용장( ), 수심어음( ) 송금환( ) 기 타( )			
	금 액			
③ 원산지	결제기간			
④ 선적항	⑦ 가격조건			
⑧ HS 부호	⑨ 품 명 및 규 격	⑩ 단위및수량	⑪ 단 가	⑫ 금 액
⑬ 승인 조건				
⑭ 승인유효기간				
⑮ 승인 번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19				
통 일 원 장 관				

210mm x 297mm  
인쇄용지(복합) 70g/m<sup>2</sup>

## 대 북 한 반 출 승 인 신 청 서

	( 용 )		처리기간	30 일
① 반 출 자 ( 상호 · 주소 · 성명 · 전화 )	부 역 업 허가번호		④ 수 화 인	
( ⑩ )			⑦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            ) , 추심어음 (            )	
			송금환 (            ) 기 타 (            )	
② 위탁자 ( 상호 · 주소 · 성명 · 전화 )			금 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원 산 지			결제기간	
④ 선 적 항			⑧ 가격조건	
⑤ 도 착 항				
⑨ HS 부 호	⑪ 품 명 및 규 격	⑬ 단위 및 수 량	⑭ 단 가	⑮ 금 액
⑯ 승 인 조 건				
⑰ 승 인 유효 기 간				
⑱ 승 인 번 호				
<p>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19 . . . . .</p> <p style="margin-left: 150px;">통 일 원 장 관</p>				

210mm × 297mm  
인쇄용지(무량) 70g/㎡



##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	------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허가번호	② 변경전 승인일자
		③ 변경전 승인번호
		④ 승인사후관리은행명
⑤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⑥ 승 인 조 건		
⑦ 승 인 유효 기 간		
⑧ 승 인 번 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조, 동법 시행령 제 26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19		
통 일 원 장 관		

210mm x 297mm  
인쇄용지(1종) 70g/㎡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  
(반출)

1. 반입내역

구 분	내 역	비 고
COMMODITY (상 품 명)		
생 산 자		○ 북한상사 표시
중·개 인 (송 화 인)		
반 입 자 (신 청 인)		
위 탁 자		
신 청 수 량		
단 가		
신 청 금 액		
반 입 원 가		CIF +세비용포함
DELIVERY		
반 입 경 로		○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MARKET 형태 (관 매)		
PACKING		
연 락 처 (담 당)		

사후관리은행 :



2. 반입경로 및 대금결제효율(화살표로 표시)

북한  
(생산자)

(북측 중개인)

(반입자)

(남측 중개인)

(위탁자국내실수요자)

3. 반입원가·국내가격·판매가격 비교

구 분	원 / 1kg	비 고
반 입 원 가		○ CIF+계비용 포함
국 내 가 격 (도매가)		
판 매 가 격		○ 예상위탁가격등 기준
예 상 수 익		
예 상 수 익 율		

※ 예상 반입원가 명세 :

4. 국내가격동향

(단위 : 원 / kg)

연도별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 자료출처 및 가격기준 명기

5. 판매방법 (계획)

6. 당사의 대북한 물자반출입실적

7. 신청경위 (통사안이 신청되기 까지의 상세한 상담과정 기술) (이면계속)

8. 신청사유(교역성립시 기대되는 효과종 기술)

9. 기타(북한주민접촉경험, 제3국 중개상들 통한 상담경험등 기술)

※ 첨부서류

1. 무역업 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및 신청품목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3. 회사 소개서(연혁, 임원소개서, 임직원 현황, 조직도등 회사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4. 재무제표
5. 기타 참고자료







# 협력사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0일
------	-----

신	① 단 체 명 ( 상 호 )	② 협 력 사 업 자 승 인 번 호	
청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자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상	⑦ 단 체 명 ( 상 호 )	⑧ 주 요 사 업	
대	⑨ 주 소	⑩ 전 화 번 호	
자	○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사	○ 사 업 명		
업	○ 사 업 목 적		
개	○ 사 업 장 소		
요	○ 사 업 기 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3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_\_\_\_\_ (인)

통 일 원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
1. 협력사업자승인증
  2. 사업계획서 (소요인원·자금계획·추진일정 및 사업결과외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4.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사본) 1부.
  5.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6. 영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7.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1부

210mm x 297mm  
인쇄용지(복합) 70g/m<sup>2</sup>







#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 13 통일원고시 제90-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

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다.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마.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가.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나.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다.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라. COCOM 수출 규제품목

마. 보호문화재등

바. 반출될 경우 국내산업보호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물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 가.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나. 검역대상 물품
  - 다.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용에 공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이 허용된다.
  - 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5. 반출·입 규제대상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7.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는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고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동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50조 내지 52조 및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고시(통일원고시)에 따라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남한 또는 북한주민이 상대방지역을 왕래할 때 휴대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지침을 정하여 왕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①이 요령은 남북한주민이 제 3 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남·북한주민 이외의 자가 남·북한을 직접왕래하거나, 남·북한 주민이 제 3 국을 경유하여 출입경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 제 2 장 휴대품 검사

제 3 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별지 제 1 호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화폐등의 신고)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외국 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 여행자수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등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등록증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휴대품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주민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제 1 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검사방법)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제 3 장 휴대품 반출입

제 7 조(휴대품 반출입 허용의 범위)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방

문목적, 체류기간, 방문자의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휴대품은 반출입을 허용한다.

②세관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반출입 규제물품)** ①다음의 물품은 반출입을 불허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입금지물품

②다음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출입이 허용된다고 고시된 반출입 제한물품
2.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외국화폐등

③세관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제대상물품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등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등의 처리)** ①세관공무원은 제 7 조에 규정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이 규제되어 반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휴대품보관증(별지 제 2 호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반출입이 규제되어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중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 4 장 과 세

제10조(반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이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때 원산지가 제 3 국인 물품도 포함한다.

②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세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 5 장 승무원의 휴대품 처리 등

제11조(승무원의 반출입 휴대품 처리) 남·북한의 주민이 수송장비의 승무원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할 때 휴대하여 반출입되는 물품은 일반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과 같이 처리한다.

제12조(관세법등 관세규정 준용)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

세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대한민국 세관  
왕래주민 휴대품 신고서

199 년 월 일

이 신고서는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를 신속히 하기위한 것이오니 성실하게 기재하신 후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년 월 일	3. 성별 :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4. 주 소 :	
5. 직 업 :	6. 국 적 :
7. 방문목적 :	8. 방문증명서(여권)번호 :
9. 방문기간 :	10. 동반가족수 :           명

**통관안내**

1. 귀하의 방문목적, 방문기간, 직업등을 참작하여 휴대품의 통관 허용범위가 결정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2. 휴대품중 반입이 규제되는 물품(총기류 등)은 귀환할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3. 후면 신고대상 물품은 반드시 서면신고 하여야 합니다.

**서면신고대상물품**

해당란에(O)표

소 지 물 품	있음	소 지 물 품	있음
총포, 도검, 화약등 무기류		국헌, 공안, 풍속을 해할 물품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류		화폐, 증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	
동물, 식물류 등 검역대상 물품		무선통신용 송·수신기	
35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			
신고금액 :			

위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고인 서명 :

검사대 번호 :	검사자 :
----------	-------

[별지 제 2 호서식]

휴대품 보관증

보관증번호 :

화물Tag 번호 :

성 명		생년월일	19 . .					
		국 적						
방문증명서 번호		방문기간						
주 소								
<p>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입 요령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물품을 보관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담 당</td> <td>19 . . . .</td> </tr> <tr> <td></td> <td>서 울 세 관 장</td> </tr> </table>					담 당	19 . . . .		서 울 세 관 장
담 당	19 . . . .							
	서 울 세 관 장							
포장종류	수 량	품 명	중 량	비 고				
계								

보관물품인도내역			
보관증 번호		인도물품	
화물 Tag번호			
출입국 일시		성 및 명 서 및 명	(인)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0. 9. 25 통일원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원고시 제91-2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절차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역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①대의무역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다음 각호의 공고는 이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공고로 본다.

1. 수출입공고
2. 별도공고
3. 통합공고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별도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수출·수입의 제한이 없는 품목은 반출·반입 자동승인품목으로, 기타의 품목은 반출·반입 제한승인품목으로 각각 본다. 다만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수출·수입제한이 없는 품목중 미술품 및 도예·공예작품과 우표, 화폐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본다.(개정 1991. 5. 6 단서신설)

제 2 조(반출·입의 승인) ①제 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 제한승인품목의 반출·반입은 통일원장관이 상공부장관등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 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 자동승인품  
목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 1 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  
1 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류외국  
환은행의 장에게 그 승인권한을 위탁 한다.

제 3 조(반출·입 승인실적의 보고)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  
출·반입을 승인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승인서상에 “남북한교역대상물  
품”임을 표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승인결과를 3일이내에 통일  
·원장관 및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기타 반출·입 승인절차)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하여 법·동법  
시행령 및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91. 5.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북교역물품통관요령

제정 '89. 3. 2 관세청예규 제137-0-0-200호

개정 '90. 9. 4 관세청예규 제137-0-0-219호

남북교역물품통관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물자교류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 함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 함은 내국물품이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물품의 장치)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과 북한으로 운송하고자 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장치장소라 함은 관세법 제66조 규

정에 의한 보세구역등 장치장소와 통관장을 말한다.

제 5 조(반입절차) ①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 규정 제3-1-3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양식 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북한이 원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입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등에 의하여 북한이 원산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 규정 제3-2-1조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를 확인함에 있어 세관장은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한 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운송되기까지의 선하증권 사본
2.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등으로 단순 경유하였음을 제3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6 조(관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7 조(내국세등) ①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방위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

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다만,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물품가격의 결정)** ①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평가시행세칙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원산지 표시 부착)** 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등 수입승인 면제물품을 포함함)중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등이 수입외국간행물통관요령 제 4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 내지 제 6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제10조(반출절차)** ①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동 규정 제4-2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1조(구비조건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대외무역법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남북교역물품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고무인을 반출입 신고시 상단 좌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반출입통계)** ①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 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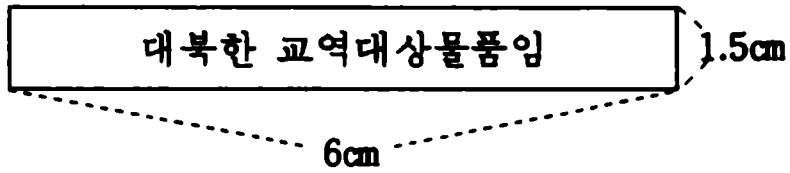
**제14조(보고)** 세관장은 남북교역물품(여행자 휴대품등 수입승인 면제 물품을 포함함)이 입항, 장치장소반입, 수입신고 또는 물품검사시 확인된 때에는 동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요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요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고침

- (1) 동예규 제 7 조의 방위세는 폐지되었으므로 방위세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제11조 구비조건의 확인조항에서 기타 법령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서를 확인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 남북교류협력추진관련사전조정기능강화에관한지침

92. 4. 11

## 1. 목 적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한 정부내 사전조정기능을 보완·강화하여 각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정부의 일관된 지침아래 보다 효율적으로 질서있게 추진함으로써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기본원칙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단계에서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원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의한 승인신청 처리 또는 조정을 함에 앞서 전문적 측면의 타당성을 사전검토하도록 한다.

나. 각 분야의 교류협력은 정치·안보적 측면과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한다.

다. 정부내 교류협력관련 업무추진은 현행법체계와 소관부처별 전문성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 3. 분야별 조정위원회 구성

#### 가.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 구성

- (1)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행하도록 한다.
- (2)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차관이 되며, 위원은 동 위원회에서 검토할 안건과 관련있는 경제관련부처의 실·국장급으로 한다.

#### 나. 「남북일반교류협력조정위원회」 구성

- (1) 학술·문화·예술·종교·체육등 남북일반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일반교류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행하도록 한다.
- (2) 남북일반교류협력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위원은 동 위원회에서 검토할 안건과 관련있는 부처의 실·국장급으로 한다.

### 4. 분야별 조정위원회 운영

가. 분야별 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조정한다.

- (1) 남북경제협력조정위원회는 통일원장관이 법률에 의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사항(투자조사단 파견등 협력기반 조성사업, 투자사업, 자원·기술협력·해외협력등 각종 협력사업 및 교역당사자 지정·조정명령등 교역에 관한 사항등)중 중요사항을 승인처

리함에 있어 전문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검토·조정한다.

(2) 남북일반교류협력조정위원회는 통일원장관이 법률에 의하여 학술, 문화, 예술, 종교, 체육등 일반교류·협력 관련사항중 중요 사항을 승인처리함에 있어 전문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검토·조정한다.

(3) 각 조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주민왕래, 교역,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승인신청내용중 관계부처의 장이 전문적 측면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일원장관에게 요청하여 통일원장관이 부의한 사항을 검토·조정한다.

나. 통일원장관은 법률에 의한 주민왕래, 교역,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신청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후 즉시 타당성 검토내용등 회의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분야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5. 기 타

통일원장관은 북한주민접촉 또는 방북신청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의향서 체결등 협력사

업 추진을 전제로 한 합의를 작성·서명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조치한다.

## 6.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II. 南北協力基金法及後續法令





# 南北協力基金法

制定 1990. 8. 1 法律 第4240號

改正 1990. 12. 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 交流와 協力을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第2條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3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4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債券의 발행으로 造成된 資金
4. 基金의 運用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5條(長期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投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

②統一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6條(債券發行) ①政府는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國內에서 南北協力基金債券(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債券은 統一院長官의 요청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이 발행한다.

③債券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는 國債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7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統一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③統一院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중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重要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

4. 南北交流·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等 代金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력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력을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지원

6. 借入金 및 債券의 元利金 償還

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第9條(基金의 會計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②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

託한 경우에는 統一院長官은 委託받은 銀行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③會計關係職員等の責任에關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10條(一時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11條(보고 및 還收) ①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統一院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한다.

第12條(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第13條(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 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14條(監督 및 命令) 統一院長官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 則(90. 12. 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과그소속기관직제)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자원) 법 제 4 조제 5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채권의 발행)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무부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 7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원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 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 8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 8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 8 조제 3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

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원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 8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 8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 8 조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 8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 통화) 법 제 8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 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원장관은 법 제 9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용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통일원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 4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원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91. 2. 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 8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증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 8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증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 8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 8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증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증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경미한 사항) 영 제 7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 8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

통비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 8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증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 8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증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 8 조제 6 호 및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
5. 영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증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 제 7 조제 2 항·제 3 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내지 [별지 제 4 호서식] 및 [별지 제 7 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 8 호서식], [별지 제 10 호서식] 및 [별지 제 11 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 1 조, 제 3 조 내지 제 14 조, 제 16 조 내지 제 20 조 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 사단법인정관준칙 제 6 장·제 8 장과 [별지 2] 재단법인정관준칙 제 2 장·제 4 장 및 제 6 장 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 17 통일원고시 제91-1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 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영 제15조제 2 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위탁수수료) ①통일원장관은 영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2 조 및 영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경제 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용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제 8 조(채무의 조정)** ①통원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들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 3 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 제 4 장 무상지원

### 제 1 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 9 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 1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

자금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취급) . 통일원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급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지원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신청 변경)**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시기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제20조제 1 항의 신청인은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지원방침 결정후에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감액지급, 지급액의 환수, 지급액의 일시환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25조(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사용결과 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 제 5 장 손실보조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  
에 따라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  
불능 또는 회수지연
  -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 2 호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이내로 한다.

**제29조(손실보조 약정절차)** ①영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30조(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손실보조약정의 내용변경)** ①피약정자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당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때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3부에 당해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1부에 승인하는 뜻을 기재·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서의 교부전에 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

공, 송금의 개시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을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 2 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35조(손실보조신청)**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면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손실보조약정 해지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 1 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피약정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 3 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회수금 통지)** ①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2조(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 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제 1 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44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45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90범위이내로 한다.

**제46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출형식

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당해 관련계약이 원화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이 분할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2.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가. 이자율은 연 5%로 한다.

나.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상환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연체대출금이자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 이자는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자금의 분할집행 등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선취할 수 있다.

3. 대출기간은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4. 원금상환방법

원금은 연1회이상 정기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5. 담 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47조(사전협의) ①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사전협의서 2부를 통일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필요성등에 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48조(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49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빙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원장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대출금 상환) ①제46조제 3 호의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 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46조제 2 호의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51조(대출조건 변경) ①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실행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조건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조건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조건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에 준하여 대출조건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제52조(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거래의 특성, 긴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 등

제53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 8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 47조,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통일원장관은 반출·반입자금대출의 조건등을 재무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 7 장 채무보증

제55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56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57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 제 8 장 금융기관지원업무

###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58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59조(손실보전 신청 등) ①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2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

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60조(보전이자율 등)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 2 절 금융기관용자자금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1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조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2조(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61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2부를, 제61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 2 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63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64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북한원화매매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인수조건 등)**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6조(북한원화의 환전)** 재무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 9 장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제67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 7 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 8 조제 5 호 및 영 제 8 조제 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



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10장 보 칙

제70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의 출연) ①법 제 4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 1 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운영관리사무처리세칙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서류 : 1. 방문자 명단 (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 (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방문자의 주민등록지원자급 신청취임장 (대리인에 한함)  
5.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

[ 별지 제 2 호서식 ]

① 보고인	성명 (단체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TEL) (FAX)		
② 방문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방문기간	방문 증명서번호
			~ (박 일)	
			~ (박 일)	
			~ (박 일)	
③ 자금 수령액	금	자금 수령일자 및 금액 ○ 19 . . . . ○ 19 . . . . ○ 19 . . . .		
④ 자금 사용액	금	자금 사용내역 ○ 교통비: ○ 숙박비: ○ 식비: ○ 기타경비:		
⑤ 자금 불용액	금	불용발생사유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17조제 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16조제 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자금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p> <p>첨부서류 : 1. 방문자 명단 (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주요자금사용증빙서 (개인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3.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고인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1106-022-00211번  
91. 4. 10 승인

210 × 297  
인쇄용지(복합) 80g/㎡









## 손실보조약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b>①신청인</b>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b>②사업 상대자</b>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b>③사업개요</b>	제 약 금 액			
	사 업 내 용			
	결 계 조 건			
	반출, 반입 또는 사업개시일			
<b>④손실보조 약정 신청내용</b>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교 역	<input type="checkbox"/> 경제협력사업	
	약 정 금 액		적 용 환 율	
	손실보조 약정비율		약 정 기 간	
<b>⑤기타사항</b>	남북협력기금의 용자여부			
	특 기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29 조제 1 항의 규 정 에 의하여 손실보조 약정제결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뒷 면</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span style="float: right;">㉠</span></p> <p>통 입 원 장 관 귀 하</p>				
				수 수 료
				없 음

1106-022-00611번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쇄용지(국공) 80g/㎡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4. 손실보조 약정신청액 산출명세표  
5. 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6.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7.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8. 납품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9. 통일현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손실보조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① 신청인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 약정내용	증서번호		증서발행일	
	약정금액		약정기간	
③ 손실보조 대 상	대상기간			
	손실보조 약정비율			
	대상금액			
④ 손 실 보 조 금 신 청	손실보조금 신청액		손실보조금 기수령액	-
	손실보조금신청액 산출명세			
	적용판율	(손실보조약정신청일과 계약서상 대금결제일의 대고객신용대입승용 일자가 같다면 본승입)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손실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손실보조금 신청경위 2. 손실발생 증빙서류 사본 3. 손실보조약정증서 사본 4.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span style="float: right;">㉠</span></p>				
통 일 원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1106-022-00811인  
91. 4. 10 승인

210 mm ×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

경제협력사업  
 반출  
 반입

**자금대출사전협의서**

[ 별지 제9호서식 ]

① 차 주		② 대 표 자	
③ 주 소	(TEL) (FAX)		
④ 사 업 명			
⑤ 사 업 상 대 자			
⑥ 대 출 예 상 금 액			
<p>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47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 경 제 협 력 사 업 · 반 출 · 반 입 ) 자금대출 사전협의서를 제출합니다.</p> <p>첨부서류 : 1. 사업내용                  2. 사업추진경위                  3. 대출신청 예상내용                  4. 추정수지 명세서                  5. 차주의 개요                  6. 제작자의 개요                  7. 사업상대자의 개요                  8. 협의서 ( 입찰안내서 ) 사본                  9.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span style="float: right;">⑩</span></p> <p>통 일 원 장 관 귀 하</p>			
			수 수 료
			없 음

1106-022-00911번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제

경제협력사업  
 반출  
 반입

**자금대출신청서**

[별지 제 10 호서식]

①차주		②대표자	
③주소	(TEL)		
	(FAX)		
④사업명			
⑤사업상대자			
⑥대출신청금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4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 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4. 대출신청내용
  5. 이사회의체결의서 1부
  6.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7.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8.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9.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10.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⑩

통 일 원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경제협력사업  
 반출  
 반입

**자금대출조건변경신청서**

[별지 제 11 호서식]

① 차 주		② 대 표 자			
③ 주 소	(TEL) (FAX)				
④ 사 업 명					
⑤ 대출승인일자		⑥ 대출승인액			
⑦ 대출잔액		⑧ 상환액	⑨ 대출잔액		
⑩ 변경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 자금대출조건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대출조건 변경사유서 2. 대출조건 변경신청 관련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통 일 원 장 관 귀 하			<table border="1"> <tr> <td>수 수 료</td> </tr> <tr> <td>없 음</td> </tr> </table>	수 수 료	없 음
수 수 료					
없 음					

1105-022-01111민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매







###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 별지 제 14 호서식 ]

①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TEL)			
	연락처	(FAX)			
② 지원자금 신청내용	금액		지원대상 구분	<input type="checkbox"/> 용자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62 조제 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용자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용자 취급명세서            2. 자금지원 신청조건            3.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③</span></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p style="margin-left: 20px;">통일원장관 귀하</p>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5px;">수수료</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없음</td> </tr> </table> </div>				수수료
수수료					
없음					

1106-022-01411번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쇄용지(국공) 90g/㎡







### Ⅲ. 북한의 경제관련 법령



# 사회주의헌법(1972년 제정) 중 경제분야

## 제2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영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 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영을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영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역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들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동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만16살  
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  
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  
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  
체제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기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  
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에  
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  
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합 영 법

(1984. 9. 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0호)

## 제 1 장 합영의 기본

제 1 조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영역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 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합영당사자들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공화국 법이 규정한 모든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합영할 수 있다.

## 제 2 장 합영회사의 조직

제 6 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기관에 등록하였을 때 조직된다.

제 7 조 합영회사의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합영당사자들은 화폐대상, 현물재산과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재산,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평가한다.

제 8 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은 출자몫 안에서만 책임진다.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을 제 3 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합영회사는 등록된 자금을 줄일 수 없다.

### 제 3 장 이사회와 경영활동

제 10 조 합영회사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결의기관이다.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지며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한다.

제 11 조 이사회는 합영회사 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충,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 등 합영회사의 중요한 문제들 토의 결정한다.

제 12 조 회사 사장은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 합영회사 규약 및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조직, 진행하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진다.

제 13 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돈자리를 두며 합

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합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14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료, 반제품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서 사낼 때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합영회사가 대외시장에서 물자들 수입할 때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15조 합영회사는 자기의 생산제품을 대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제16조 합영회사가 종업원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과 합영 쌍방의 계약에 따라 노력을 관리하며 이용한다.

제17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자기가 받은 노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노임의 일부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 4 장 결산과 배분

제18조 합영회사는 해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합영활동을 결산하여야 한다.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소득세를 바친 다음 예비기금,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기금을 합영쌍방의 출자몫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의 규모와 해마다 조성하는 비율은 따로 정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에서 결손

된 자금을 보충하는데 쓴다.

제20조 합영회사의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과 이사회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영회사는 순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세의 감면을 청원할 수 있다. 합영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22조 다른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 5 장 합영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3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해당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 합영회사는 계속하여 결손을 내거나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의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합영회사를 해산할 때에는 현행업무를 결속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분배한다.

제26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 3 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1. 1945년 8월 15일  
 2. 1945년 8월 15일  
 3. 1945년 8월 15일  
 4. 1945년 8월 15일  
 5. 1945년 8월 15일  
 6. 1945년 8월 15일  
 7. 1945년 8월 15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1.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위하여 1418년 2월 11일 한글 창제위원회를 조직하시니  
 2. 이 위원회는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28명의 고위 관료로 구성하시니  
 3. 이 위원회는 한글 창제에 관한 일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세종대왕에게 보고하시니  
 4.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 관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니  
 5.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 관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니  
 6.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 관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니  
 7.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 관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니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합의한바 양방의  
합의에 따라 재수 곳인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맡겨줄 수는  
없다

된 자금을 보충하는데 쓴다.

제20조 합영회사의 결산문건은 재정검열원의 검열과 이사회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는 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영회사는 순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세의 감면을 청원할 수 있다. 합영회사는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22조 다른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제 5 장 합영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3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해당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 합영회사는 계속하여 결손을 내거나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합영회사를 해산할 때에는 현행업무를 결속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분배한다.

제26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 3 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 합영법시행세칙

(1985. 3. 20. 정무원 결정 14호)

##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세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 영역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합영은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 건설, 운수, 관광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조직되는 합영회사는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을 늘일 수 있어야 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조직되는 합영회사는 유한 책임회사이다.

제 6 조 국가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7 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합영당사자들 사

이에 맺은 계약, 합영회사 규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 8 조**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 9 조**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세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승합할 수 있다.

## 제 2 장 합영회사의 조직

**제10조**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과 합영회사를 조직하려는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는 대외경제사업부와 합의한 다음 대외교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합영당사자들은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은 다음 대외경제사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 회사의 이름, 회사의 존속기간, 회사의 자금총액과 당사자들의 출자몫, 이사회조직, 회사의 종업원수와 노임기준, 생활보장조건 등 합영회사의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합영회사는 해당 도인민위원회에 회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회사를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회사등록신청서와 함께 합영계약을 승인한 문건, 합영회사의 규약, 출자를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합영회사는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법인으로 된다.

**제14조** 합영회사가 등록된 내용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대외경제사업부와 합의하고 회사등록기관에 고쳐진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합영회사는 회사규약을 가져야 한다.

회사규약에는 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회사의 사업내용, 회사의 자금 총액과 당사자들의 출자몫, 회사의 존속기간 등 회사의 활동원칙과 질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3 장 출 자

제16조 합영회사의 자금총액과 당사자들이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17조 합영당사자들은 화폐, 건물, 원료, 기계설비, 발명권, 기술문헌, 토지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 합영당사자들이 출자하는 화폐는 그들이 합의한 통화로 한다.

제19조 건물, 원료, 기계설비, 발명권, 기술문헌 등으로 출자할 때 그 값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합영당사자들이 평가한다.

제20조 토지를 출자몫으로 넣지 않을 때에는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1조 합영회사는 등록자금을 줄일 수 없다.

제22조 합영당사자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출자몫안에서만 책임진다.

제23조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 4 장 이사회와 관리성원

제24조 합영회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25조 이사회는 필요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둔다. 합영당사자들이 파견하는 이사수와 이사장, 부이사장은 계약에서 정한다.

제26조 이사회는 해마다 한번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부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소집 날짜와 장소, 토의안건을 이사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7조 이사회는 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회사등록자금의 증가, 회사존속기간의 연장, 회사의 해산, 회사의 발전대책과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사장과 부사장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을 비롯하여 회사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28조 이사회에서 토의되는 문제는 회의에 참가한 이사회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29조 합영회사에 회사 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한 필요한 수의 관리성원을 둔다.

제30조 합영회사 사장은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 회사규약 및 이사회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하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진다.



## 제 5 장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제31조 합영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반제품, 설비(이 아래부터는 물자라고 한다)를 우리나라에서 사 쓸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합영회사가 요구하는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합영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사 쓸 수 없는 물자는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다.

제32조 합영회사는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 앞선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다.

제33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사고 파는 것은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이때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합영회사는 일부 경영용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사 쓸 수 있다.

제35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의 수출 또는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직접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기관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제36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37조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물지 않는다.

제38조 합영회사는 정해진 데 따라 회사에서 쓰는 물, 전기, 난방, 전화

등의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39조** 합영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 보험에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제 6 장 노력관리

**제40조** 합영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노동행정기관을 통하여 한다.

**제41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의 노동시간, 휴식, 노동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른다.

**제42조** 합영회사는 다른 나라 사람을 종업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43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필요한 기능공들을 키워내야 한다.

**제44조** 합영회사의 종업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노동보수의 7%, 종업원들은 자기가 받는 노동보수의 1%의 사회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 제 7 장 외화관리

**제45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하 아래부터는 무역은행이라고 한다) 또는 무역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외화돈자리와 조선원 돈자리를 둔다. 합영회사의 모든 외화 수입과 지출은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46조 합영회사는 은행돈자리에 있는 외화잔고에 대하여 무역은행이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

제47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 은행에 돈 자리를 들 수 있다.

제48조 합영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무역기관을 통하여 사고 파는 상품대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외화로 지불하며 상업망을 통하여 구입하는 상품대금과 여러가지 사용료를 조선원으로 지불한다.

제49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서 부족되는 외화를 우리나라 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50조 합영회사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외화로도 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외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환산비율에 따라 한다.

제51조 합영회사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의 이익배당금을 그의 요구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송금해 주어야 한다. 이익배당금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증인할 수 있는 근거문건을 은행에 내야 한다.

제52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노임액의 60%까지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 제 8 장 결산과 분배

제53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대하여 해마다 결산하여야 한다. 합영

회사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54조** 합영회사의 결산은 연간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순소득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 재정검열원은 합영회사의 결산문건을 검열하여야 하며 그 정확성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져야 한다.

**제56조** 재정검열원은 합영회사의 경영활동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회사의 장부, 계약서들 비롯하여 재정검열에 필요한 문건을 열람할 수 있다.

**제57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58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순소득 가운데서 5%씩 적립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의 결손자금을 보충하는데 쓴다. 이사회결정에 따라 예비기금을 회사의 등록자금으로 옮길 수 있다.

**제59조** 합영회사는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등을 가진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조성비율은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60조** 합영당사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순소득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기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출자몫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분배받은 돈을 재투자할 수 있다.

## 제 9 장 합영회사의 해산

제61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영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외경제사업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회사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2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나 기전에 합영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1. 합영회사가 계속하여 5년이상 결손을 냈을 때
2. 한편 합영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여 경영활동에 엄중한 후 과를 가져왔을 때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영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63조 합영회사가 해산될 때 이사회는 청산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사 장은 자기 사업을 청산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4조 청산인은 청산사업을 시작하기전에 회사등록기관에 청산수속 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65조 청산인은 합영회사의 현행업무를 결속하고 남은 재산을 합영 당사자들에게 출자몫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66조 청산인은 자기 사업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진다.

제67조 청산인은 청산수속이 끝나면 이사의 비준을 받은 다음 회사등 록기관에 청산수속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제10장 분쟁해결

제68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무역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한다.

제69조 중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역중재사건심의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원고와 중재피고는 중재원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70조 재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의 합영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 우리나라의 합영당사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71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 3 국의 무역중재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다.

## 합영회사소득세법

(1985. 3. 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2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합영회사는 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2 조 합영회사소득세는 결산기마다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남은 순소득에서 문다.

제 3 조 합영회사가 무는 소득세율은 순소득의 25%로 한다.

제 4 조 합영회사는 기업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 면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순소득이 적을 때에는 합영회사의 청원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 5 조 합영회사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제 6 조 합영회사는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제 7 조 재정기관은 합영회사의 소득세납부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합영회사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제 8 조 재정기관은 합영회사가 이 법을 어기였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1985. 5. 17 정무원 결정 22호)

제 1 조 이 세칙은 우리나라 인민경제부문의 기관,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개인포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영역안에 있는 합영회사들에 적용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이 세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3 조 합영회사소득세는 결산기마다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남은 순소득에서 문다.

1. 합영회사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로 한다. 새로 조직되는 합영회사의 소득세는 기업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연말까지 계산하며 해산되는 합영회사의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해산된 날까지 계산한다.
2.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공업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제품판매수입에서 판매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2) 건설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건설물을 넘겨 주고 받은 수입에서 건설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3) 수송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수송운임수입에서 수송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4) 상업 및 편의봉사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상품판매 및 편의봉사 수입에서 상품 판매 및 편의봉사에 지출된 비용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5) 이밖의 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따로 정하는 데 따라 계산한다.
3. 모든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다음해 1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 4 조 합영회사가 무는 소득세율은 순소득의 25%로 한다.

제 5 조 합영회사가 무는 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영회사의 소득세는 해당 결산기간의 순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합영회사의 소득이 우리 나라안의 여러곳에 있는 지사들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 합한데다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6 조 합영회사는 기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합영회사가 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정부에 소득세면제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정부는 소득세면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순소득이 적을 때에는 합영회사의 청원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 7 조 합영회사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합영회사의 순소득이 외화로 이루어졌을 때의 소득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발표한 결산년도말(해산된 날 포함) 현재 돈환산비율에 따라

조선원으로 환산한다.

**제 8 조** 합병회사는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병회사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1. 합병회사는 소득세를 결산년도 다음해 1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물어야 한다.
2. 합병회사는 소득세를 물 때에 소득세납부서를 만들어 거래은행에 내야 하며 은행은 그것을 검토확인한 다음 1통은 보관하고 합병회사와 해당 기관에 각각 1통씩 보내주어야 한다.
3. 재정기관은 합병회사가 문 소득세액을 검토확인하고 덜바친 소득세는 받아들이고 더 바친 소득세는 도로 내주어야 한다.
4. 합병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득세를 정해진 날자에 물지 못하여 부과된 연체료는 재정기관이 검토하여보고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 9 조** 재정기관은 합병회사의 소득세납부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1. 재정기관은 합병회사들과 그와 연관된 기관, 기업소들 대상으로 하여 합병회사소득세 납부 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2. 합병회사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하며 재정기관의 검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합병회사는 해당 기관들이 소득세를 더 받았을 때에는 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기관은 합영회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이 세칙을 어기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해당 소득세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정상이 입증할 때에는 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 외국인소득세법

(1985. 3. 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2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2 조 외국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제 3 조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월 소득액	세 율(%)
500원부터	면 제
501원부터 2,000원까지	5
2,001원부터 4,000원까지	10
4,001원부터 6,000원까지	15
6,001원부터 8,000원까지	20
8,001원부터 10,000원까지	25
10,001원 이상	30

제 4 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20%로 한다.

제 5 조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외국인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받은 상금, 보조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소득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정하는 그 밖의 소득

제 6 조 외국인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제 7 조 외국인소득세는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할 때 해당기관, 기업소가 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둔다.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소득세를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물어야 한다.

제 8 조 외국인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날부터 물어야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제 9 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납부 정형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줘야 한다.

제10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법을 어긴데 대하여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외국인소득세법세칙

(1985. 5. 17. 정무원 결정 23호)

제 1 조 이 세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과 이 세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 3 조 외국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 1) 생활비(노임), 봉급등에 의한 소득
- 2) 가급금, 상금, 장려금, 이익배당금 등에 의한 소득
- 3) 강의료, 번역료 등에 의한 소득

2.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3.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

※ 외국인이 상품을 팔려고 할 때에는 해당 지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4 조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월 소득액	세 율(%)
500원이하	면 제
501원부터 2,000원까지	5
2,001원부터 4,000원까지	10

4,001원부터 6,000원까지	15
6,001원부터 8,000원까지	20
8,001원부터 10,000원까지	25
10,001원 이상	30

제 5 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과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20%로 한다.

제 6 조 외국인들에게 물리는 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들의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외국인의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과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이 함께 있을 때에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한사람의 노동보수에 의한 월소득이 여러곳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 합한 데다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7 조 외국인의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사람별로 적용하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건별로 적용한다.

제 8 조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외국인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받은 상금, 보조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소득
4. 외국인 유학생, 실습생, 연구생들이 받는 생활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받는 여비, 잡비, 문화비 등과 선물, 기념품 등에 의한 소득,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보내오는 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정하는 그밖의 소득

제 9 조 외국인소득세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국인의 소득이 외화로 이루어졌을 때의 소득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발표한 외국인소득세를 무는 날의 돈환산비율에 따라 조선원으로 환산한다.

제10조 외국인소득세는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할 때 해당 기관, 기업소가 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문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따르는 외국인소득세는 달마다 계산하여 물어야하며,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와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불할 때마다 계산하여 문다.

제11조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소득세를 정해진 날자에 해당 재정기관에 물어야 한다. 외국인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1. 외국인소득세는 소득이 지불된 때로부터 5일안에 물어야 한다.
2. 기관, 기업소는 외국인소득세를 물 때에 외국인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내야 하며 은행은 그것을 검토확인한 다음 1통



은 보관하고 납부자와 해당 기관, 기업소에 각각 1통씩 보내주어야 한다.

3. 재정기관은 외국인이 문 소득세액을 검토확인하고 더 바친 소득세는 도로 내주어야 한다.

제12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납부정형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다.

1. 재정기관은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기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인소득세납부정형을 검열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 기업소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하며 재정기관의 검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인들은 해당기관들이 소득세를 더 받았을 때에는 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법을 어긴데 대하여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과 이 세칙을 어기고 외국인소득세를 물지 않았거나 해당 소득세액보다 적게 물었을 때에는 연체료와 함께 소득액의 10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정상이 입증할 때에는 해당 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 민 법

(1990. 9.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4 호로 채택)

## 제 1 편 일반제도

### 제 1 장 민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제 3 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관리 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 4 조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

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 5 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6 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7 조**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 8 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 9 조**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 또는 중재 절차로 해결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 영역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

## 제 2 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1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1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수 있는 민사관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안에서 민사관리능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8조**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에 국가는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19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제20조**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제21조 16살에 이르지 못한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한다. 그러나 6살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2조 마지막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

### 제 3 장 민사법률행위

제24조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말로나 서면으로 할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민사법률행위를 한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7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28조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30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제32조**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제33조** 대리인은 대리의 도움을 받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본인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앞에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4조**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35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자신이 책임진다.

**제36조**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 제 2 편 소유권제도

### 제 1 장 일반규정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

**제38조**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의 발생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루어진다.

**제39조** 소유권을 가진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자만이 할 수 있다.

**제40조**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들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소유권은 여럿이 몫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가질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하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43조**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가질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뜻은 같은 것으로 본다.

## 제 2 장 국가소유권

제44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 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 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 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45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립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중요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 기관
4.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보전시설

제46조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 재산을 제한없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7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 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 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

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48조** 국가 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협동단체나 국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국가소유권은 그 협동단체나 국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 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 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 관리권만 넘어간다.

**제49조**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트랙또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소유권을 계속 가지고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 재산처럼 리용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1조** 국가 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협동단체나 국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 제 3 장 협동단체소유권

**제53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협동단체소유는 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

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생산물, 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기업,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

**제55조**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다.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할 수 있다.

**제56조**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57조**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 장 개인소유권

**제58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9조**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60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61조**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제62조**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

### 제 3 편 채권채무제도

#### 제 1 장 일반규정

**제64조** 이 법에서 채권이란 일정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65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수도 있다.

제66조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67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

제68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여 생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손해가 커진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제69조 채권채무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정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의식적으로 가격규정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70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수도 있다.

제71조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

할채무자들은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2조 분할채권자들이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들이 지는 의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연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연대채무자들은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4조 채무를 전부 리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연대채권자는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줄 의무를 진다.

제75조 연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서 다른 연대채권자들의 리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연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것은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6조 채권자가 한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었던 몫만큼 다른 연대채무자들의 몫은 적어진다.

제77조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 3 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78조 제 3 자의 허물로 하여 생긴 채무를 채권자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 3 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 3 자에게 위임하여 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제 3 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에 책임진다.

**제80조**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1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한꺼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82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을 넘겨줄 수 있다.

**제83조**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쓸 수 없게 되면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84조** 징표가 같은 물건가운데서 채권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면 그때로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85조**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86조**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곳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소재지에서, 그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87조**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에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자는 해당 물건에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88조**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여러 행위들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89조** 선택권을 가진자가 채무리행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 제 2 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90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

**제91조** 계약당사자들은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92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93조**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94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데서 상업적 형태를 리용할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95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기계, 설비, 원료,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96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자재를 주고받는 방법, 자재의 포장조건,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97조**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주거나 자기 창고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98조** 공급된 자재의 점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 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99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밑에 사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0조**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량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에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제101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에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으면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 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

수 있다.

**제102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윗게 연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03조**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소비품을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04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공장,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공장,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 수 있다.

**제105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06조**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07조**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8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제108조**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9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사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9조** 수매기관이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0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11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 방법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12조**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수매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수매계획에서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13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에 그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114조** 계약당사자들은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5조** 수매기관은 정확히 농산물의 질을 검사하며 량을 계량계측하

여 수매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 수 없다.

**제116조**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곡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8조**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119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들은 건설 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 날자와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맺는다.

**제120조**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 수 있다.

**제121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 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

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2조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주어야 한다.

제123조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하는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었을 때에 한다.

제124조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로부터 1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허물있는자가 부담한다.

제1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6조 화물수송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 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 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127조 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들은 짐의 이름, 나물 수량, 보내는 곳과 닿는곳, 짐을 싣고부리는 방법과 보내고받을자의 이름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28조 짐보내는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29조 짐을 신고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것이 없으면 짐입자가 하여야 한다.

짐을 신고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130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짐입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1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짐입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2조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안에 찾아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관료나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33조 짐받는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34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지지 않



은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규정한 화물 수송계약질서에 따라 한다.

### 제 3 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제135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국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

제136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제137조 국가의 승인밑에서만 가질수 있는 물건이나 회유금속, 그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제138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 대상, 리행기간, 값 같은 본질적인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

제139조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제140조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간, 국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말로 맺을 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면과 같은 증거력이 있는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

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141조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42조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43조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44조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자는 결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을 다른것으로 바꾸어주거나 그 값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제145조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안에 물어야 한다.

제146조 계약대상을 차지하고 있는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47조 계약은 제 3자를 위하여 맺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자와 함께 제 3자에게도 발생한다.

**제148조** 소매상업기업소, 구매기관과 공민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49조**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자는 물건을 사는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자만이 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자가 물건을 판다는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50조** 공장,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에서 파는자로는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보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151조** 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자는 보증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52조**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회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내놓고 농축산물과 농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사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수매품종들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153조**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구매시키는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구매기관에 팔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54조 구매품을 구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구매시키는자가 하며 구매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나르는 일은 구매기관이 한다.

구매품의 나르는 일을 앞항과 다르게 계약한 경우에 운반을 담당하는 해당 운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55조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살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것은 금지한다.

제156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잘 할 수 있게 맺고 리 행하여야 한다.

제157조 작업봉사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 자는 주문받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작업맡긴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맡긴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58조 작업봉사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받은 때에 맺어진다.

제159조 작업맡기는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주면서 기술자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를 뒤로 미룰수 있다.

제160조 작업하는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자재나 부속품

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맡기는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 작업하는자는 그것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61조** 작업하는자는 작업맡기는자가 낸 작업대상물을 소중히 다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써야 한다. 쓰고 남은 자재와 부속품은 작업결과와 함께 작업맡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 작업하는자는 마음대로 작업대상의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작업맡긴자가 낸 작업대상물에서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 쓰지 말아야 한다.

**제163조**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맡긴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작업하는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64조** 작업하는자는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하는자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남의 허물이 아닌 이상 자기가 책임한다.

**제165조** 작업맡긴자는 작업결과를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하는자는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6조** 공민이 물건을 맞기고건사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보관계약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67조**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

다가 보관시킨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자는 그것을 찾고 해당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

공민들 호상간의 보관계약에서는 보관료를 주고 받을 수 없다.

**제168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사이에 말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자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 표식물을 상대방에 내준 때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맺을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을수도 있다.

**제169조** 물건을 보관시키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데서 주의하여야 합점을 보관하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자가 책임진다.

**제170조** 보관하는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1조** 려관, 극장, 회관과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손님이 따로 건사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2조** 보관시킨자는 보관물을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더 높게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3조**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내놓은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제175조** 공민은 법적의무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처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그것을 보관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제176조** 법적의무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받은 값만큼 재산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7조**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78조** 빌리기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자는 빌리는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자가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179조** 공민이 도서, 특허물, 녹음 및 녹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맺는다.

공민들 호상간의 빌리기계약에서는 사용료를 주고 받을 수 없다.

**제180조** 빌려주는자는 물건을 그 본성에 맞게 쓸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에 그 사실을 빌리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자에게 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81조**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리는자가 빌린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 빌려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자가 하며 중수리는 계약에서 정한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리는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자가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히 손상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3조**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자의 동의밑에 제 3자에게 다시 빌려줄수 있다. 이 경우에 빌리는자는 계약의무의 리행에 대하여 빌려준자앞에 책임진다.

**제184조** 보증금을 설정하고 맺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제185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구매나 그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예비와 잠재력을 동원 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6조**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자는 위탁하는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거래행위를 위탁하는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 자는 그 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제187조** 위탁하는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88조** 위탁받은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자가 계약조건외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탁하는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9조**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탁받은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 3 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하는자에게 넘겨주기로 된 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다.

**제190조** 위탁받은자는 위탁하는자가 요구한것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다 위탁하는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1조** 위탁하는자는 위탁받은자로부터 행위결과를 제때에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와 그가 들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92조** 이 법에서 규정한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거래 관계에도 해당하게 적용된다.

**제193조** 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여행은 여행객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여행객수송계약은 인민들의 여행상 안전과 편리를 보장할 수 있게 맺

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94조**  려객수송계약에 의하여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 값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여행목적지까지 태워갈 의무를 진다.

 려객수송계약은 운수기관이 표에 의하여 해당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준 때에 맺어진다.

**제195조**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들에게 의료봉사, 도중 식사를 비롯하여 여행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96조**  운수기관은 손님을 여행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 손님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97조**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정한 기간안에 물리려고 하거나 그를 태워 갈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표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에게 돌려주거나 표의 사용기간을 늘여주어야 한다.

**제198조**  여행하는 손님은 학령전 어린이를 표없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며 정해진 범위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 수 있다.

**제199조**  손님은 여행과정에 운수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여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운수기관은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계약은 늘고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1조**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줄 의무를 가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때에 맺어진다.

**제202조** 저금계약에서 저금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주어야 한다.

**제203조** 저금기관은 공민이 요구하면 어느때든지 저금하는 돈을 맡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4조**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저금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05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놓고있는 돈을 동원리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6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공민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7조**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 관계가 있는 제 3 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내주지 않는다.

**제208조** 제 3 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 3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09조**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과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어지며 보험료를 물면 그때로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210조**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으면 해당한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다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제211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2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제213조** 공민이 재산거래와 그 밖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근거가 없는 이상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

**제214조**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위임하는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임하는자는 위임받는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위임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제215조** 양자관계나 유언과 같이 본인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위임할 수 없다.

**제216조** 위임받은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7조** 위임받은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허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의 허물에도 속하지 않고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한자가 책임진다.

**제218조** 위임받은자는 위임한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9조** 위임한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임받은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들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한자는 자기의 허물로 위임받은자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

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0조** 위임계약의 당사자들은 위임계약을 어느때든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그것으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1조** 공민들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받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

**제222조**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에게 넘겨주면 곧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3조** 기간을 정하고 꾸기계약을 맺은 경우에 꾸어준 공민은 기간이 되어야 꾸어준 돈이나 물건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곧 공민은 기간이 되기전이라도 그것을 갚을 수 있다.

**제224조** 곧 돈이나 물건은 정한 기간안에 갚아야 한다. 같은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갚을 수 있다.

**제225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26조 은행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폐자금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7조 은행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맺는다. 대부를 받으려는자는 물건으로 자기의 대부금반환능력을 은행기관에 담보하여야 한다.

제228조 대부받은자는 대부금을 류용하거나 사장랑비하지 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간전에 회수하거나 다음번 대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9조 대부받은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날부터 더 높은 물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230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31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 작업참가정도에 따라 작업결과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진다.

합동작업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작업대상, 기간, 질서와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작업결과물을 나누는 원칙, 합동작업대표의 권한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233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업대표는 계약당사자들의 대표로서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4조** 합동작업대표는 작업이 끝나면 계약당사자들에게 작업실적에 따라 작업결과물을 나누어 리용할데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 4 장 부당리득행위**

**제235조** 법적근거없이 남의 손실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36조** 부당리득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그 리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7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주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38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자는 그것을 보관관리하고 돌려주는데 들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제239조** 부당리득을 돌려받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당리득자는 그 리득을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 4 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 제도

### 제 1 장 민사책임

제240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

제241조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허물이 있는 경우에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긴자가 자기에겐 허물이 없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것으로 본다.

제242조 민사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반환
2. 원상복구
3. 손해보상
4.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5.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

민사책임은 정상에 따라 병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3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자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동안에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통제할 의무를 진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244조 16살에 이른 부분적행위능력자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자기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2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 민사책임을 진다.

제246조 남의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차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을 현물로 돌려줄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7조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8조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49조 관리하고 있는 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짐승의 임자나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 보상책임은 떨어지거나 면제된다.

제250조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1조 여럿이 공동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자들은 련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2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들 물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을 어긴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53조 계약당사자들이 다같이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하게 민사책임을 진다.

제254조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는 손해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5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6조 공민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또는 자연재해나 비법침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7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것으로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는 해를 입은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8조 민사책임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 2 장 민사시효

제259조 민사상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판, 중재 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민사시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61조**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 채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2. 앞호 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된 보상청구, 국제련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해당 협정에 의한 기간

**제262조** 예산제 국가 기관, 기업소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기간이 되기전이라도 그 채권이 발생한 예산연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것으로 본다.

**제263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64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한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5조**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안에 자연재해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이 법 제261조 제 1 호의 청구권에는 민사시효의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6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면 그때로부터 시효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

**제267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자가 민사시효기간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불가피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효기간을 연장하여줄 수 있다.

**제268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리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69조**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은 때부터 시작된다.

1.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이 된 때
2.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는 그에 대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

하기로 된 때

3. 그밖의 청구권은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때

제270조 민사시효기간은 일간, 월간, 년간으로 정하여 그 계산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당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271조 민사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날이 일요일, 명절일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날로 한다.



## IV. 남북한 주요합의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남북화해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

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틀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

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표 단 수석 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unofficial translation)

To enter into force as of February 19, 1992

The South and the North,

In keeping with the yearning of the entire Korean people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divided land;

Reaffirming the three principles of unification set forth in the July 4(1972) South-North Joint Communiqué;

Determined to remove the state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and achieve national reconciliation;

Also determined to avoid armed aggression and hostilities, reduce tension and ensure peace;

Expressing the desire to realize multi-faceted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advance common national interests and prosperity;

Recognizing that their relations, not being a relationship between states, constitute a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stemming from the process towards unification;

**Pledging to exert joint efforts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Hereby have agreed as follows;**

## **CHAPTER I**

### **SOUTH-NORTH RECONCILIATION**

**Article 1 :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recognize and respect each other's system.**

**Article 2 : The two sides shall not interfer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Article 3 : The two sides shall not slander or vilify each other.**

**Article 4 : The two sides shall not attempt any actions of sabotage or overthrow against each other.**

**Article 5 : The two sides shall endeavor together to transform the present state of armistice into a solid state of peac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shall abide by the present Military Armistice Agreement(of July 27, 1953) until such a state of peace has been realized.**

**Article 6 :The two sides shall cease to compete or confront each other and shall cooperate and endeavor together to promote national prestige and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arena.**



Article 7 : To ensure close consultations and liaison between the two sides, South-North Liaison Offices shall be established at Panmunjom within three(3) months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8 : A South-North Politica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within one(1) month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discussing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observance of the accords on South-North reconciliation

## CHAPTER II

### SOUTH-NORTH NON-AGGRESSION

Article 9 : The two sides shall not use force against each other and shall not undertake armed aggression against each other.

Article 10 : Differences of views and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two sides shall be resolved peacefull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Article 11 : The South-North demarcation line and areas for nonaggression shall be identical with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pecified in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July 27, 1953 and the areas that have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ides until the present time.

Article 12 : To implement and guarantee non-aggression, the two sides shall set up a South-North Joint Military Commission within three(3) month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 the said Commission, the two sides shall discuss and carry out steps to build military confidence and realize arms reduction, including the mutual notification and control of major movements of military units and major military exercises,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exchanges of military personnel and information, phased reductions in armament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ttack capabilities, and verifications thereof.

Article 13 : A telephone hotline shall be installed between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two sides to prevent accidental armed clashes and their escalation.

Article 14 : A South-North Military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within one(1) month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discuss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observance of the accords on non-aggression and to remove military confrontation

### CHAPTER III

####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15 : To promote an intergrated and b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welfare of the entire people, the two sides shall engage i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including the joint development of resources, the trade of goods as domestic commerce and joint ventures.

Article 16 : The two sides shall carry out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literature and the arts, health, sports, environment, and publishing and journalism including newspapers,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and publications.

Article 17 : The two sides shall promote free intra-Korean travel and contacts for the residents of their respective areas.

Article 18 : The two sides shall permit free correspondence, meetings and visits between dispersed family members and other relatives and shall promote the voluntary reunion of divided families and shall take measures to resolve other humanitarian issues.

Article 19 : The two sides shall reconnect railroads and roads that have been cut off and shall open South-North sea and air transport routes.

Article 20 : The two sides shall establish and link facilities needed for South-North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shall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of intra-Korean mail and telecommunications.

Article 21 : The two sides shall cooperate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various other fields in the international arena and carry out joint undertakings abroad.

Article 22 : To implement accords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various other fields, the two sides shall establish joint commissions for specific sectors, including a Joint South-North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Commission, within three (3) month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3 : A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within one(1) month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discussing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observance of the accords on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 CHAPTER IV

#### AMENDMENTS AND EFFECTUATION

Article 24 : The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by concurrence between the two sides.

Article 25 :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y the two sides exchang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December 13, 1991

Chung Won-shik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Chief delegate  
of the Sou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Yon Hyong-muk

Premier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d  
of the Nor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official translation)

To enter into force as of february 19, 1992

The South and the North,

Desiring to eliminate the danger of nuclear war through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to create an environment and conditions favorable for peac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country and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the world,

Declare as follows;

1.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2.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3.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4.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verif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all conduct inspection of the objects selected by the other side and agreed upon between the two sides,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5.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implement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within one(1) month of the effectuation of this joint declaration
6.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y the two sides exchang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January 20,1992

Chung Won-shik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Chief delegate of the  
Sou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Yon Hyong-muk

Premier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d of the  
Nor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 3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에서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들의 성과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 1 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 ①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 ③ 제 8 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2.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3.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4.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5.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 15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6. 각 분과위원회와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의 다음번 회의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 4 차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2일(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② 제 4 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19일(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 ③ 제 4 차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25일(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 ④ 제 4 차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30일(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7. 제 8 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1992년 5월 7일

서 울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들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정	무	원	총	리	연	행	묵



## V. 남북경제회담 관련 일지



## 남북경제회담 제의일지

일 자	한 국	북 한
84. 8. 20	○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 교역·경제협력 제의 및 물자·기술 무상제공 용 의 표명	
84. 9. 8		○ 북한, 「합영법」 발표
84. 9. 29~30	○ 북한적십자사의 수재물자제공 제의에 따라 수재물자 인수 -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 - 쌀 5만석, 옷감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84. 10. 10	○ 신병현 부총리 남북경제 회담 제의 - “수재물자인도, 인수와 북한의 합영법 제정발 표를 계기로 이들 보 다 폭 넓은 교류, 협 력관계로 발전시키고 자”	
84. 10. 16		○ 김환 부총리 수락 서한

## 남북경제회담 추진일지

차 수	일 자	장 소	주요 제의 내용	
			한 국	북 한
1 차	84. 11. 15	관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회담 의제</li> <li>○ 교역품목 및 방안</li> <li>○ 경제협력방안(선교역, 후합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회담 의제</li> <li>○ 교역품목 및 방안</li> <li>○ 경제협력방안(선합작, 후교역)</li> </ul>
2 차	85. 5. 17	관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차회담 공통제안사항 계속토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설치</li> </ul>
3 차	85. 6. 20	관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선포의</li> <li>○ 공동위 구성 수정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위 구성후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토의</li> </ul>
4 차	85. 9. 18	관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경제회담에서 교류 및 협력방안 토의</li> <li>○ 교역품목, 방법, 공동위 설치 등에 관한 합의서 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위 구성후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토의</li> <li>○ 공동위 구성에 관한 합의서 제의</li> </ul>
5 차	85. 11. 20	관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개항 합의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서 명칭</li> <li>- 사업추진원칙</li> <li>- 교류대상품목</li> <li>- 거래방식 및 결제은행</li> <li>- 경제협력대상</li> <li>- 공동위 기능</li> <li>- 분과위 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개항 의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서 명칭</li> <li>- 사업추진원칙</li> <li>- 교류대상품목</li> <li>- 분과위 수</li> </ul> </li> <li>○ 합의서 서명시 최고책임자로부터 권한위임문제, 국호사용여부 합의 촉구</li> </ul>

## 남북고위급회담 일지

1992. 7. 10 현재

일자 및 장소	회 담 내 용	비 고
'89. 2. 8, 평화의 집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3. 2, 통일각	제 2 차 "	
10. 12, 평화의 집	제 3 차 "	
11. 15, 통일각	제 4 차 "	
12. 20, 평화의 집	제 5 차 "	
'90. 1. 31, 통일각	제 6 차 "	
7. 3, 평화의 집	제 7 차 "	
7. 6, 중감위 회의실	제 1 차 합의서 문안정리 관련 실무대표 접촉	
7. 12, 중감위 회의실	제 2 차 "	
7. 26, 통일각	제 8 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 서」 서명 및 교환
9. 4~7, 서울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	
10. 16~19, 평양	제 2 차 "	
12. 11~14, 서울	제 3 차 "	
'91. 10. 22~25, 평양	제 4 차 "	
12. 10~13, 서울	제 5 차 "	「남북사이의 화해 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한 합 의서」 합의 및 남 북총리 서명



일자 및 장소	회 담 내 용	비 고
12. 26, 통일각	「한반도핵문제」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12. 28, 평화의 집	동 제 2 차 대표접촉	
12. 31, 통일각	동 제 3 차 대표접촉	
'92. 1. 13, 중감위원회의실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문건 교환을 위한 제 1 차 대표접촉	
1. 21, 중감위원회의실	동 제 2 차 대표접촉	쌍방 총리가 서명 ('92. 1. 20)한 「비핵화공동선언」문안 교환
1. 23, 평화의 집	분과위 구성·운영방안 협의를 위한 제 1 차 대표접촉	
1. 29, 통일각	동 제 2 차 대표접촉	
2. 7, 평화의 집	동 제 3 차 대표접촉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서명
2. 18~21, 평양	제 6 차 남북고위급 회담	「남북기본합의서」
2. 19, 평양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협의를 위한 제 1 차 대표접촉	「비핵화 공동선언」, 「분과위구성·운영 합의서」의 문본교환 및 발효
2. 27, 통일각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2 차 대표접촉	

일자 및 장소	회 담 내 용	비 고
3. 3, 평화의 집	동 제3차 대표접촉	
3. 4, 통일각	동 제4차 대표접촉	
3. 6, 평화의 집	동 제5차 대표접촉	
3. 9, 평화의 집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3. 10, 통일각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 제 협의를 위한 제6차 대표접촉	
3. 13, 통일각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3. 14, 평화의 집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협의를 위한 제7차 대표접촉	「남북해통제공동 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서명
3. 18, 평화의 집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3. 19, 통일각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해통제공동 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의 문본교 환 및 발효
3. 25, 중감위원회의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위원접촉	
3. 27, 통일각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3. 31, 평화의 집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4. 1, 평화의 집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4. 2, 중감위원회의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위원접촉	

일자 및 장소	회 담 내 용	비 고
4. 10, 중감위원회의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3 차 위원접촉	
4. 18, 통일각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2 차 회의	
4. 21, 통일각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 3 차 회의	
4. 23, 평화의 집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3 차 회의	
4. 27, 평화의 집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3 차 회의	
4. 28, 중감위원회의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4 차 위원접촉	
4. 29, 중감위원회의실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1 차 위원 접촉	
4. 30, 통일각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 3 차 회의	
5. 5~8, 서울	제 7 차 남북고위급 회담	「제 7 차 남북고위급 회담 공동합의문」 「남북군사공동위 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 공 동위원회 구성·운 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채택·발효

일자 및 장소	회 담 내 용	비 고
5. 12, 평화의 집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 4 차 회의	
5. 15, 중감위원회의실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 1 차 위 원접촉	
5. 19, 통일각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4 차 회의	
5. 20, 중감위원회의실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 2 차 위 원접촉	
5. 23, 중감위원회의실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 3 차 위 원접촉	
5. 25, 평화의 집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 4 차 회의	
5. 27, 통일각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 5 차 회의	
5. 30, 통일각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4 차 회의	
6. 5, 중감위원회의실	제 1 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6. 9, 평화의 집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5 차 회의	
6. 12, 중감위원회의실	제 2 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6. 19, 통일각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 5 차 회의	
6. 22, 중감위원회의실	제 3 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6. 26, 평화의 집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5 차 회의	
6. 30, 평화의 집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 6 차 회의	
7. 2, 통일각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6 차 회의	
7. 7,	총리 「대북제의」 서신전달	
7. 8, 중감위원회의실	제 4 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일자 및 장소	회 담 내 용	비 고
7. 10, 평화의 집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1 차 위원 장접촉	
7. 14, 중감위원회의실	제 5 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7. 16, 평화의 집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 6 차 회의	
7. 18, 중감위원회의실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2 차 위원 접촉	
7. 21, 통일각	남북해통제공동위원회 제 7 차 회의	
7. 28, 통일각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6 차 회의	
9. 15~18, 평양	제 8 차 남북고위급회담	

## 〈「남북교류협력 상담실」 개설 안내〉

통일원은 '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증대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2년 6월 12일부터 「남북교류협력 상담실」을 다음과 같이 개설·운영하오니, 민원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실 위치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층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우편번호 110-760)

— 연락전화 : (02) 732-7950~2

○ 처리업무

— 민원안내·상담 및 관련 신청서류의 교부·접수

\* 담당분야 :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왕래, 남북교역, 남북협력사업, 남북협력기금 등

— 남북교류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청취·수렴

○ 운영시간 : 09 : 00~18 : 00(월~금), 09 : 00~12 : 00(토)

\* 동절기는 09 : 00~17 : 00(월~금), 09 : 00~12 : 00(토)